

2017 조세의 이해와 쟁점

⑨ 통계편

2017 조세의 이해와 쟁점

⑨ 통계편



2017 조세의 이해와 쟁점

9 통계편

총괄 | 정문종 조세분석심야관

기획·조정 | 김경신 세제분석과장

집필 | 최천규 경제분석관

신봉진 경제분석관

채은동 경제분석관

심성택 경제분석관

김효경 경제분석관

지원·편집 | 이하영 행정실무원

이은지 자료분석지원

「2017 조세의 이해와 쟁점」시리즈는 국가 재정 운용에 대한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발간되었습니다.

문의: 경제분석실 세제분석과 788-3778 rtsa@assembly.go.kr

이 보고서는 국회예산정책처 홈페이지(www.nabo.go.kr)를 통하여 보실 수 있습니다.

2017 조세의 이해와 쟁점

⑨ 통계편

이 보고서는 「국회법」 제22조의2 및 「국회예산정책처법」 제3조에 따라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발간심의위원회」의 심의(2017. 5. 26)를 거쳐 발간되었습니다.

발 간 사

조세는 국민으로부터 거둔 세금으로서 재정정책을 통해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경제 역량을 제고하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저출산·고령화, 통일문제 등 재정지출 확대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시점에서 조세는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는데도 중요한 원천이 됩니다. 따라서 조세정책은 공평하고 효율적이어야 하며, 경제의 안정과 성장에 기여하면서, 건실한 재정운용의 든든한 뒷받침이 되어야 합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14년도부터 조세정책 연구의 기초가 되는 ‘조세의 이해와 쟁점’시리즈를 출간하고 있습니다. 본 보고서는 조세개요,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총 9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조세의 제도일반, 행정·정책, 통계 그리고 조세현안에 대한 논의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최근 지방주민의 공공 서비스 확대 요구 증가로 지방재정 및 지방세가 중요해 지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지방세편’을 신규 발간하였습니다. 특히 지방세 세수확충논의를 고려하여 해외의 지방세목 사례와 과세체계를 자세히 소개하였습니다. 한편 국제 주요세목 편에서는 2017년도 개정 세법령을 반영하여 주요 지표를 업데이트 하였을 뿐만 아니라 미국의 국경조정세 논의, EU의 부가가치세 실행계획 보고서, OECD 회원국의 BEPS 시행논의 등 해외 동향과 제도변화 추이를 상세히 소개하였으며, 근로·자녀 장려금 제도개선 사항, 법인세 실효세율 개념 및 현황 등 최근 국내에서 논의되고 있는 조세이슈를 추가 하였습니다.

본 보고서가 의원님들의 세제관련 입법 활동에 유용한 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합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다양한 조세정책연구를 통해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면서 바람직한 조세정책이 구현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2017년 6월

국회예산정책처장 김춘순

Contents

I. 개요

(1) 우리나라의 조세체계	3
(2) 국세 세목별 예산: 2015~2017년	4
(3) 지방세 세목별 · 단체별 예산: 2017년	5
(4) 조세수입액 및 조세부담률: 1970~2015년	6
(5) 국민부담률 및 조세부담률(OECD 기준): 1972~2015년	8
(6) 세목별 조세수입액(징수액 기준): 1993~2016년	10
(7) 세목별 국세 대비 조세수입액 비중(징수액 기준): 1993~2016년	12

II. 과세체계 및 현황

1. 소득세	15
(1) 소득세율과 과표구간 변화: 1968~2017년	15
(2) 근로소득공제 제도 변화: 1991~2017년	17
(3) 인적공제 제도 변화: 1996~2017년	19
(4) 특별공제 제도 변화: 1993~2017년	20
(5) 근로소득세액공제 제도 변화: 1983~2017년	21
(6) 특별세액공제 요건: 2014년 이후	22
(7) 이자 · 배당 소득세 원천징수세율: 1991~2017년	23
(8) 종합소득세와 근로소득세 과세인원: 1995~2015년	24
(9) 종합소득세와 근로소득세 부담구조: 2015년	26
(10) 양도소득세 세율 변화: 2004~2017년	27
(11) 장기보유특별공제 제도 변화: 1975~2017년	28
(12) 양도소득세 세수: 1975~2015년	30
(13) 근로장려세제 및 자녀장려세제 수급기준 변화: 2008~2017년	31
(14)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신청 및 지급: 2009~2015년	34

(15) 고소득 자영업자 소득탈루율 추정: 2012년	35
(16) 소득세 징수액 추이: 1990~2016년	35
2. 법인세	36
(1) 법인세율과 과표구간 변화: 1950~2017년	36
(2) 법인세율 변화: 1990년~2014년(소득귀속연도 기준)	38
(3) 법인세율과 소득세율 비교: 1980년~2016년(소득귀속연도 기준)	39
(4) 법인세 평균명목세율과 평균실효세율 비교: 1990~2015년	39
(5) 우리나라 법인수: 1990~2015년	40
(6) 기업규모별 법인수 추이: 2006~2015년	40
(7) 과표구간별 법인수: 2008년과 2015년 비교	41
(8) 중소기업 사업체수 및 종업원수: 1994~2014년	42
(9) 명목 GDP 및 법인세징수액: 1990년~2016년	43
(10) 과세표준 구간별 법인세 현황: 2015년	44
(11) 법인세 과표 200억원 초과구간 세액 추이: 2010~2015년	45
(12) 법인세 부담 관련 기업수 추이: 2007~2015년	45
(13) 과표구간별 평균실효세율 및 감면비율: 2015년	46
(14) 법인세 평균실효세율(대기업과 중소기업 비교): 2006~2015년	47
(15) 법인세 실효세율 및 계산절차: 2015년	47
(16) 법인세 실효세율 추정방식별 추이: 1990~2015년	48
(17) 법인세 비중 추이(세금징수기준): 1970~2016년	49
(18) 국세대비 법인세 및 소득세 비중 추이(세금징수기준): 1990~2016년	49
(19) 법인세의 전년대비 증감분(세금징수기준): 1970~2016년	50
(20) 이월결손금, 비과세소득, 소득공제 금액: 1990년~2015년	52
(21) 최저한세율 변화: 1991~2017년	53
(22) 최저한세 적용기업	54
(23) 법인세 조세지출액과 비중: 1999~2015년	55
(24) 기업규모별 공제감면액 추이: 2007~2015년	55
(25) 법인세 조세감면 내역	56
3. 부가가치세	58
(1) 주요국의 부가가치세 도입연도	58
(2) 주요국의 부가가치세 세율구조	59
(3) 최근 5년간 국세 국세징수액 대비 부가가치세 비중: 2012~2016년	60
(4) 부가가치세 신고인원: 2005~2015년	60
(5) 부가가치세 신고유형별 납부신고세액: 2005~2015년	61
(6) 지방자치단체별 지방소비세 배분내역: 2015년	62

III. 주요 선진국 비교

1. 전체	65
(1) OECD 국가의 국민부담률: 2009~2014년	65
(2) OECD 국가의 조세부담률: 2009~2014년	66
(3) 우리나라와 OECD 평균 국민부담률 비교: 1975~2015년	68
(4) 우리나라와 OECD 평균 조세부담률 비교: 1975~2015년	68
(5) GDP 대비 조세수입 비중(OECD, 세목별): 1975년	69
(6) GDP 대비 조세수입 비중(OECD, 세목별): 2000년	70
(7) GDP 대비 조세수입 비중(OECD, 세목별): 2014년	71
(8) GDP 대비 조세수입 비중(OECD, 세목별): 2015년	72
(9) 한국과 OECD의 조세구조 비교(총 조세 대비 비중)	73
(10) OECD 국가의 지하경제 규모: 2000~2010년	74
2. 세목별 비교: 소득세	75
(1) GDP 대비 소득세 비중(OECD): 1970~2015년	75
(2) 총세수 대비 소득세 비중(OECD): 1970~2015년	76
(3) 중앙정부기준 소득세 명목최고세율(OECD): 1981~2016년	77
(4) 소득세 명목최고세율(OECD): 1981년과 2015년 비교	78
(5) 지방정부 포함 소득세 최고세율 적용소득 수준(OECD): 2003~2016년	79
(6) 무자녀 1인 평균소득가구의 평균유효세율(OECD): 2004~2016년	80
(7) 가구유형별 평균유효세율(OECD): 2016년	81
(8) 중앙정부기준 과표구간 개수(OECD): 1981~2016년	82
(9) 소득세 과표구간 개수(OECD): 1981년과 2015년 비교	83
3. 세목별 비교: 법인세	84
(1) GDP 대비 법인세 비중(OECD): 1965~2015년	84
(2) 총조세 대비 법인세 비중(OECD): 1965~2015년	85
(3) 우리나라와 OECD평균 간 GDP대비 법인세 비중 추이: 1972~2015년	86
(4) 중앙정부 기준 법인세 명목최고세율(OECD): 2000~2016년	87
(5) 지방세부가세 포함 법인세 명목최고세율(OECD): 2000~2016년	88
(6) 법인세율 변화(OECD): 1985년과 2016년 비교	89
(7)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법인세율 인하 정도(OECD): 2007~2016년	90
(8) OECD 국가의 과표구간 개수	90

4. 세목별 비교: 부가가치세	91
(1) GDP 대비 부가가치세 비중(OECD): 1990~2014년	91
(2) 총조세 대비 부가가치세 비중(OECD): 1990~2014년	93
(3) OECD 국가의 부가가치세 도입연도	95
(4) OECD 국가의 부가가치세 세율구조	96
(5) 우리나라와 OECD 국가의 면세대상 비교	97
(6) 우리나라·EU 및 OECD 국가의 면세대상 비교	98
(7) 주요국의 경감세율 현황	99
(8) OECD 국가들의 부가가치세 표준세율 변화추이: 2009~2016년	100

IV. 지방세

(1) 지방세 세목별 징수 현황	105
(2) 지방세 비과세·감면율 현황: 2011~2015년	105
(3) 지방세 세목별 비과세·감면액 현황: 2011~2015년	106
(4) 지방세 근거법률별·세목별 비과세·감면액 현황: 2015년 기준	107
(5) OECD 국가(연방형, 지역형 국가)의 과세주체별 비중 현황	108
(6) OECD 국가(단일형 국가)의 과세주체별 비중 현황	108
(7) OECD 국가(연방형 국가)의 주정부 지방세 세원별 비중 현황: 2014년 기준 ..	109
(8) OECD 국가(연방형 국가)의 지방정부 지방세 세원별 비중 현황: 2014년 기준 ..	110
(9) OECD 국가(단일형 국가)의 지방세 세원별 비중 현황: 2014년 기준	111
(10) OECD 국가의 지방세 세원별 비중 현황: 2014년 기준	112

V. 조세지출

(1) 국세감면액과 지방세감면액 추이: 1980~2017년	117
(2) 총 재정지출 대비 조세지출 비중(최근 기준): 2010~2017년	119
(3) 예산분류기준별 조세지출액 및 재정지출액: 2017년	119
(4) 조세지출 주요항목 현황: 2017년도 조세지출예산서 기준	120
(5) 세목별 조세지출 규모: 2008~2017년	121
(6) 조세지출 주요항목 현황	123
(7) 조세지출 상위 30개 항목의 감면액 규모 추이: 2002~2017년	125
(8) 조세지출 일몰연도별 운용 현황	127
(9) 일몰연도별 조세지출 항목	1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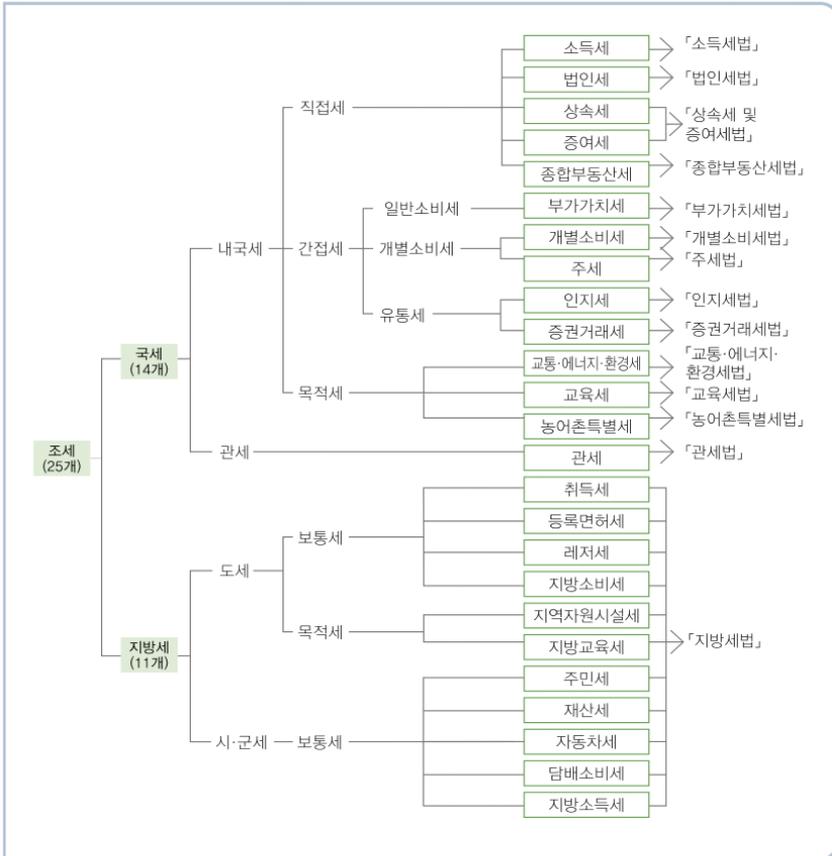


I. 개요



I. 개요

(1) 우리나라의 조세체계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재정통계(<http://stat.nabo.go.kr>)

색인: “조세의 이해와 쟁점 ①: 조세개요”



(2) 국세 세목별 예산: 2015~2017년

(단위: 조원 %)

	2015년 실적	2016년 본예산	2016년 추경예산	2017년 예산	2016년 추경예산대비	
					증감액 ¹⁾	증감률 ²⁾
총 국 세	217.9	222.9	232.7	241.8	9.0	3.9
[일반회계]	210.8	216.0	225.8	229.6	3.7	1.7
○ 내국세 ¹⁾	182.0	186.9	196.4	203.8	7.3	3.7
• 소득세	60.7	60.8	63.3	65.3	2.0	3.1
• 법인세	45.0	46.0	51.4	54.0	2.6	5.1
• 상속증여세	5.0	5.2	5.2	5.3	0.1	2.1
• 부가가치세	54.2	58.1	59.8	61.5	1.8	3.0
• 개별소비세	8.0	8.6	8.6	9.0	0.4	4.2
• 증권거래세	4.7	3.8	3.8	4.0	0.2	5.8
• 인 지 세	1.0	0.8	0.8	0.9	0.1	8.7
• 과년도수입	3.4	3.5	3.5	3.8	0.3	7.1
○ 교통에너지환경세	14.1	14.2	14.8	15.4	0.5	3.6
○ 관 세	8.5	8.7	8.3	9.0	0.7	8.4
○ 교 육 세	4.9	5.0	5.0	- (5.1) ³⁾	△5.0 (0.1)	△100 (2.0)
○ 종합부동산세	1.4	1.3	1.3	1.4	0.1	10.7
[특별회계]	7.1	6.9	6.9	12.2 (7.1)	5.3 (0.2)	76.4 (3.0)
○ 주 세	3.2	3.3	3.3	3.3	0.04	1.3
○ 농 특 세	3.8	3.6	3.6	3.8	0.2	4.5
○ 교 육 세	-	-	-	5.1	5.1	-

주: 1) 지방교부세법 규정에 의하여 해당 세목의 세수가 지방교부 대상이 되는 내국세 세목(세수 사용목적이 일반적인 재정수요에 충당하는 세목)을 말하는 것으로 강화상의 내국세 범위와는 다름

2) 증감액과 증감률은 단위를 조원으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반올림되어 세목별계와 합계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3) ()는 교육세 전액이 특별회계로 전환되기 이전의 금액을 기준으로 한 증감액 또는 증감비율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및 기획재정부 자료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분석

색인: “조세의 이해와 쟁점 ①: 조세개요”

(3) 지방세 세목별·단체별 예산: 2017년

(단위: 억원)

세목별	단체별		특 별 광역시세	특 별 자치시세	도 세	특 별 자치도세	시 세	군 세	자치구 세	구성비 (%)
	계	소								
계	711,891 (721,838)		282,535 (292,482)	5,560	190,525	12,090	149,522	23,129	48,530	100.0
보 통 세	소 계	629,136 (639,083)	245,946 (255,894)	5,069	150,381	10,709	146,278	22,714	48,039	88.4
	취 득 세	196,234	87,482	2,717	101,425	4,609	-	-	-	27.6
	등 록 면 허 세	16,193	316	122	8,481	314	-	-	6,960	2.3
	주 민 세	16,900	5,578	70	-	99	7,457	1,081	2,615	2.4
	재 산 세	98,277 (108,224)	11,717 (21,664)	588	-	1,012	41,147	5,349	38,464	13.8
	자 동 차 세	71,465	29,591	342	-	1,080	33,703	6,750	-	10.0
	레 저 세	10,340	3,040	-	6,670	630	-	-	-	1.5
	담 배 소 비 세	34,064	14,364	146	-	578	15,802	3,175	-	4.8
	지 방 소 비 세	62,961	27,517	515	33,804	1,125	-	-	-	8.8
	지 방 소 득 세	122,700	66,342	568	-	1,262	48,169	6,359	-	17.2
목 적 세	소 계	74,417	32,991	489	39,417	1,285	235	-	-	10.5
	지 역 자 원 시 설 세	14,685	6,307	72	7,944	126	235	-	-	2.1
	지 방 교 육 세	59,733	26,684	417	31,473	1,159	-	-	-	8.4
지 난 연 도 수 입	8,338	3,597	2	727	97	3,010	415	490	1.2	

주: ()는 총계 예산기준 순계와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서울 본청과 자치구 간 재산세 공동과세 중복부분(9,947억원)을 서울 본청에서 공제했기 때문임

자료: 행정자치부, 『2017년도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개요(상)』, 2017

색인: “조세의 이해와 쟁점 ①: 조세개요”

**(4) 조세수입액 및 조세부담률: 1970~2015년**

(단위: 억원)

	국내총생산	기획재정부 발표		OECD 발표	
		조세수입액	조세부담률	조세수입액	조세부담률
1970	27,948	3,980	14.2%	n/a	n/a
1971	34,333	4,929	14.4%	n/a	n/a
1972	42,598	5,229	12.3%	5,243	12.3%
1973	55,135	6,526	11.8%	6,543	11.9%
1974	78,799	10,217	13.0%	10,233	13.0%
1975	105,051	15,498	14.8%	15,514	14.8%
1976	144,132	23,133	16.0%	23,174	16.1%
1977	185,203	29,593	16.0%	29,658	16.0%
1978	250,231	40,956	16.4%	41,042	16.4%
1979	322,189	53,609	16.6%	53,774	16.7%
1980	394,713	65,754	16.7%	66,135	16.8%
1981	493,240	81,723	16.6%	81,899	16.6%
1982	568,586	95,156	16.7%	95,377	16.8%
1983	675,092	114,299	16.9%	114,724	17.0%
1984	778,556	124,081	15.9%	124,281	16.0%
1985	872,396	135,313	15.5%	135,586	15.5%
1986	1,018,402	154,161	15.1%	154,377	15.2%
1987	1,202,049	185,360	15.4%	185,195	15.4%
1988	1,440,734	225,842	15.7%	215,806	15.0%
1989	1,635,180	261,949	16.0%	256,089	15.7%
1990	1,977,123	332,148	16.8%	335,017	16.9%
1991	2,388,772	383,549	16.1%	396,742	16.6%
1992	2,732,674	446,806	16.4%	447,966	16.4%
1993	3,100,737	502,867	16.2%	504,142	16.3%
1994	3,660,542	604,926	16.5%	605,602	16.5%
1995	4,289,271	720,905	16.8%	720,903	16.8%

(단위: 억원)

	국내총생산	기획재정부 발표		OECD 발표	
		조세수입액	조세부담률	조세수입액	조세부담률
1996	4,811,408	823,549	17.1%	823,541	17.1%
1997	5,303,471	883,334	16.7%	883,326	16.7%
1998	5,244,768	849,474	16.2%	849,471	16.2%
1999	5,768,728	942,442	16.3%	942,440	16.3%
2000	6,351,846	1,135,353	17.9%	1,135,360	17.9%
2001	6,881,649	1,224,577	17.8%	1,224,580	17.8%
2002	7,619,389	1,354,935	17.8%	1,354,940	17.8%
2003	8,109,153	1,477,971	18.2%	1,477,970	18.2%
2004	8,760,331	1,519,974	17.4%	1,519,980	17.4%
2005	9,197,973	1,634,431	17.8%	1,634,430	17.8%
2006	9,660,546	1,793,380	18.6%	1,793,370	18.6%
2007	10,432,578	2,049,834	19.6%	2,049,830	19.6%
2008	11,044,922	2,127,857	19.3%	2,127,860	19.3%
2009	11,517,078	2,097,094	18.2%	2,097,080	18.2%
2010	12,653,080	2,268,782	17.9%	2,268,780	17.9%
2011	13,326,810	2,446,814	18.4%	2,446,810	18.4%
2012	13,774,567	2,569,530	18.7%	2,569,560	18.7%
2013	14,294,454	2,557,360	17.9%	2,557,360	17.9%
2014	14,850,780	2,672,448	18.0%	2,672,440	18.0%
2015	15,641,239	2,888,629	18.5%	2,888,650	18.5%
2016잠정	16,374,000	3,181,000	19.4%	n/a	n/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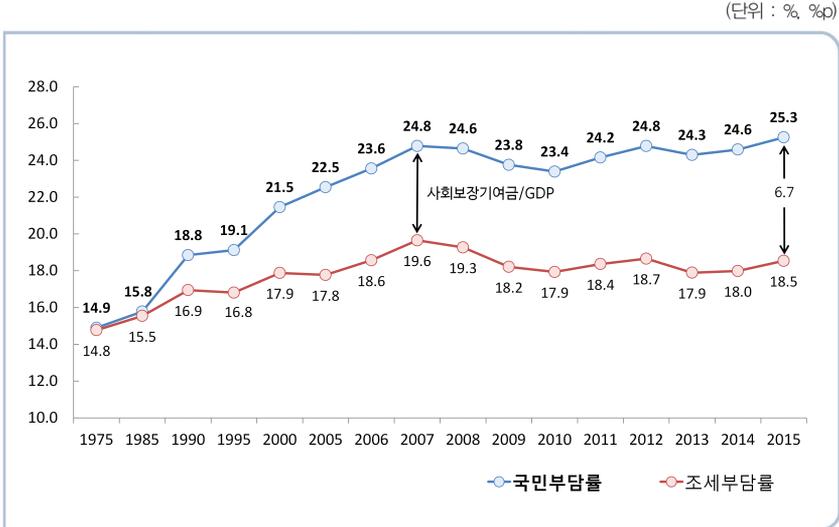
주: 한국은행의 국내총생산 자료는 2014년 3월부터 변경된 「2008 SNA(신국민계정체계)」 자료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OECD가 사용한 국내총생산 자료와는 집계기준 변경 등으로 인해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자료: 한국은행(국내총생산), 기획재정부(조세수입액·조세부담률), OECD(조세수입액·조세부담률); 국회예산정책처 분석



(5) 국민부담률 및 조세부담률(OECD 기준): 1972~2015년

1) 그림



자료: OECD, Revenue Statistics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분석

2) 표

(단위 : %)

	국민부담률	조세부담률	사회보험료 비중
1972	12.4	12.3	0.1
1973	12.0	11.9	0.1
1974	13.1	13.0	0.1
1975	14.9	14.8	0.1
1976	16.2	16.1	0.1
1977	16.2	16.0	0.2
1978	16.6	16.4	0.2
1979	16.9	16.7	0.2
1980	16.9	16.8	0.2
1981	16.8	16.6	0.2
1982	17.0	16.8	0.2
1983	17.2	17.0	0.2
1984	16.2	16.0	0.2

(단위: %)

	국민부담률	조세부담률	사회보험료 비중
1985	15,8	15,5	0,2
1986	15,4	15,2	0,2
1987	15,7	15,4	0,3
1988	15,6	15,0	0,6
1989	16,3	15,7	0,7
1990	18,8	16,9	1,9
1991	18,5	16,6	1,9
1992	18,4	16,4	2,1
1993	18,8	16,3	2,5
1994	18,9	16,5	2,4
1995	19,1	16,8	2,3
1996	19,8	17,1	2,6
1997	19,4	16,7	2,8
1998	19,4	16,2	3,2
1999	19,7	16,3	3,4
2000	21,5	17,9	3,6
2001	21,8	17,8	4,0
2002	22,0	17,8	4,2
2003	22,7	18,2	4,5
2004	22,0	17,4	4,6
2005	22,5	17,8	4,8
2006	23,6	18,6	5,0
2007	24,8	19,6	5,1
2008	24,6	19,3	5,4
2009	23,8	18,2	5,6
2010	23,4	17,9	5,5
2011	24,2	18,4	5,8
2012	24,8	18,7	6,1
2013	24,3	17,9	6,4
2014	24,6	18,0	6,6
2015	25,3	18,5	6,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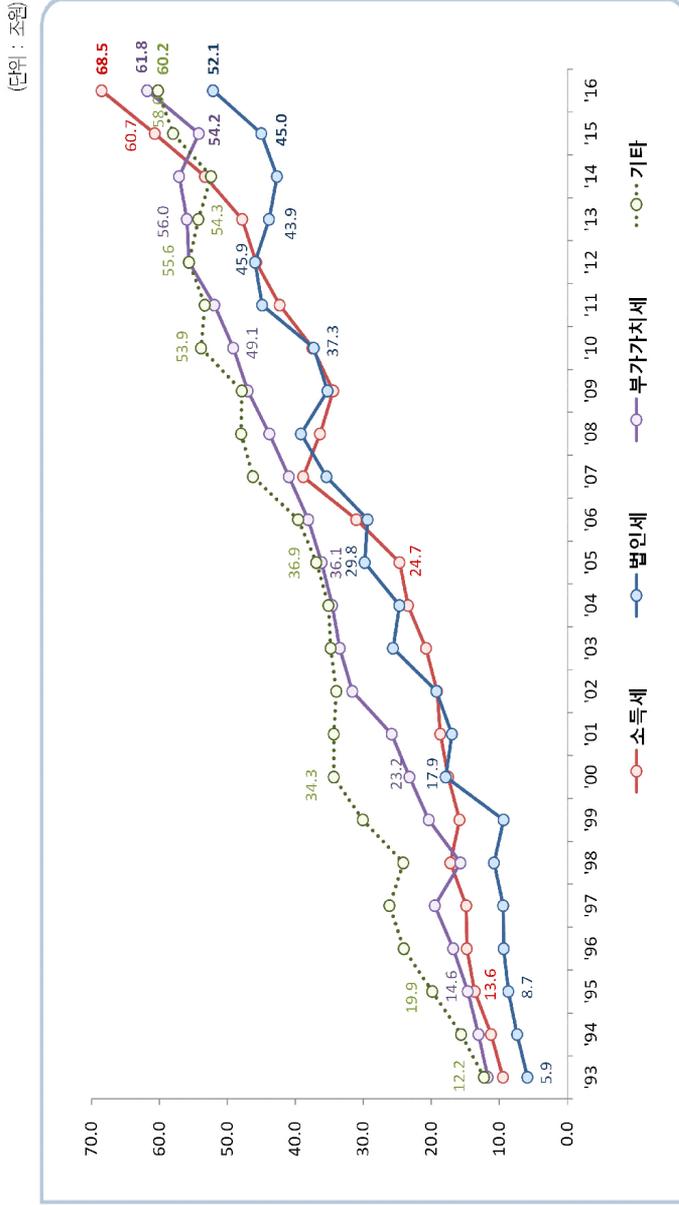
주: 국민부담률 = (조세수입액 + 사회보험료) / GDP

자료: OECD, Revenue Statistics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분석



(6) 세목별 조세수입액(징수액 기준): 1993~2016년

1) 그림



자료: 국세청 자료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분석

2) 표

(단위: 조원)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기타세목	국세합계
1993	9.5	5.9	11.7	12.2	39.3
1994	11.2	7.4	13.1	15.6	47.3
1995	13.6	8.7	14.6	19.9	56.8
1996	14.8	9.4	16.8	24.0	65.0
1997	14.9	9.4	19.5	26.1	69.9
1998	17.2	10.8	15.7	24.1	67.8
1999	15.9	9.4	20.4	30.1	75.7
2000	17.5	17.9	23.2	34.3	92.9
2001	18.7	17.0	25.8	34.3	95.8
2002	19.2	19.2	31.6	34.0	104.0
2003	20.8	25.6	33.4	34.8	114.7
2004	23.4	24.7	34.6	35.1	117.8
2005	24.7	29.8	36.1	36.9	127.5
2006	31.0	29.4	38.1	39.6	138.0
2007	38.9	35.4	40.9	46.2	161.5
2008	36.4	39.2	43.8	48.0	167.3
2009	34.4	35.3	47.0	47.9	164.5
2010	37.5	37.3	49.1	53.9	177.7
2011	42.3	44.9	51.9	53.3	192.4
2012	45.8	45.9	55.7	55.6	203.0
2013	47.8	43.9	56.0	54.3	201.9
2014	53.3	42.7	57.1	52.4	205.5
2015	60.7	45.0	54.2	58.0	217.9
2016	68.5	52.1	61.8	60.2	242.6

자료: 국세청 자료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분석



(7) 세목별 국세 대비 조세수입액 비중(징수액 기준): 1993~2016년



자료: 국세청 자료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분석

Ⅱ. 과세체계 및 현황

1. 소득세	15
2. 법인세	36
3. 부가가치세	58

Ⅱ. 과세체계 및 현황

1. 소득세

(1) 소득세율과 과표구간 변화: 1968~2017년

(단위: %)

1968년(7단계)		1969년(8단계)		1970년(9단계)		1972년(9단계)	
과표구간	세율	과표구간	세율	과표구간	세율	과표구간	세율
~18만원	7	~18만원	7	~12만원	7	~12만원	7
~24만원	9	~24만원	9	~24만원	9	~24만원	9
~36만원	16	~36만원	12	~36만원	11	~36만원	12
~48만원	18	~48만원	15	~72만원	14	~72만원	15
~72만원	30	~60만원	20	~96만원	20	~96만원	19
~96만원	40	~72만원	27	~120만원	27	~120만원	21
96만원~	50	~96만원	40	~180만원	34	~180만원	32
		96만원~	50	~240만원	42	~240만원	40
				240만원~	50	240만원~	48
1975년(16단계)		1989년(8단계)		1991년(5단계)		1994년(6단계)	
과표구간	세율	과표구간	세율	과표구간	세율	과표구간	세율
~24만원	8	~250만원	5	~400만원	5	~400만원	5
~48만원	10	~500만원	10	~1,000만원	16	~800만원	9
~72만원	12	~800만원	15	~2,500만원	27	~1,600만원	18
~96만원	15	~1,200만원	20	~5,000만원	38	~3,200만원	27
~120만원	18	~1,700만원	25	5,000만원~	50	~6,400만원	36
~150만원	21	~2,300만원	30			6,400만원~	45
~180만원	25	~5,000만원	40				
~240만원	30	5,000만원~	50				
~300만원	35						
~480만원	40						
~720만원	45						
~1,200만원	50						
~2,400만원	55						
~3,600만원	60						
~4,800만원	65						
4,800만원~	70						



(단위: %)

1996년(4단계)		2002년(4단계)		2005년(4단계)		2008년(4단계)	
과표구간	서울	과표구간	서울	과표구간	서울	과표구간	서울
~1,000만원	10	~1,000만원	9	~1,000만원	8	~1,200만원	8
~4,000만원	20	~4,000만원	18	~4,000만원	17	~4,600만원	17
~8,000만원	30	~8,000만원	27	~8,000만원	26	~8,800만원	26
8,000만원~	40	8,000만원~	36	8,000만원~	35	8,800만원~	35
2009년(4단계)		2010년(4단계)		2012년(5단계)		2014년(5단계)	
과표구간	서울	과표구간	서울	과표구간	서울	과표구간	서울
~1,200만원	6	~1,200만원	6	~1,200만원	6	~1,200만원	6
~4,600만원	16	~4,600만원	15	~4,600만원	15	~4,600만원	15
~8,800만원	25	~8,800만원	24	~8,800만원	24	~8,800만원	24
8,800만원~	35	8,800만원~	35	~3억원	35	~1.5억원	35
				3억원~	38	1.5억원~	38
2017년이후(6단계)							
과표구간	서울						
~1,200만원	6						
~4,600만원	15						
~8,800만원	24						
~1억 5,000만원	35						
~5억원	38						
5억원~	40						

자료: 1) 임주영 외, 「소득세 적정 과표구간 설정」, 국회예산정책처 용역보고서, 2012
 2) 2012~2016년 세법개정

(2) 근로소득공제 제도 변화: 1991~2017년

연도	제도	공제한도
1991	총급여 230만원 이하 : 전액 총급여 230만원 초과 : 30%	490만원
1993	총급여 250만원 이하 : 전액 총급여 250만원 초과 : 30%	600만원
1994	총급여 270만원 이하 : 전액 총급여 270만원 초과 : 30%	620만원
1995	총급여 310만원 이하 : 전액 총급여 310만원 초과 : 30%	690만원
1996	총급여 400만원 이하 : 전액 총급여 400만원 초과 : 30%	800만원
1997	총급여 500만원 이하 : 전액 총급여 500만원 초과 : 30%	900만원
1999	총급여 500만원 이하 : 전액 총급여 500만원 ~ 1,500만원 : 40% 총급여 1,500만원 초과 : 10%	1,200만원
2001	총급여 500만원 이하 : 전액 총급여 500만원 ~ 1,500만원 : 40% 총급여 1,500만원 초과 : 10% 총급여 4,500만원 초과 : 5%	한도 없음
2002	총급여 500만원 이하 : 전액 총급여 500만원 ~ 1,500만원 : 45% 총급여 1,500만원 ~ 3,000만원 : 15% 총급여 3,000만원 ~ 4,500만원 : 10% 총급여 4,500만원 초과 : 5%	한도 없음
2003	총급여 500만원 이하 : 전액 총급여 500만원 ~ 1,500만원 : 47.5% 총급여 1,500만원 ~ 3,000만원 : 15% 총급여 3,000만원 ~ 4,500만원 : 10% 총급여 4,500만원 초과 : 5%	한도 없음
2004	총급여 500만원 이하 : 전액 총급여 500만원 ~ 1,500만원 : 50% 총급여 1,500만원 ~ 3,000만원 : 15% 총급여 3,000만원 ~ 4,500만원 : 10% 총급여 4,500만원 초과 : 5%	한도 없음
2009	총급여 500만원 이하 : 80% 총급여 500만원 ~ 1,500만원 : 50% 총급여 1,500만원 ~ 3,000만원 : 15% 총급여 3,000만원 ~ 4,500만원 : 10% 총급여 4,500만원 초과 : 5%	한도 없음



연도	제도	공제한도
2014년 이후	총급여 500만원 이하 : 70% 총급여 500만원 ~ 1,500만원 : 40% 총급여 1,500만원 ~ 4,500만원 : 15% 총급여 4,500만원 ~ 1억원 : 5% 총급여 1억원 초과 : 2%	한도 없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알기쉬운 조세저도」, 2012~2015년 세법개정 반영

(3) 인적공제 제도 변화: 1996~2017년

(단위: 만원)

		공제 수준										
		1996	2002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1	2013	2014년 이후
기본공제	본인공제	100	→	→	→	→	→	→	150	→	→	→
	배우자공제	100	→	→	→	→	→	→	150	→	→	→
	부양가족공제	100	→	→	→	→	→	→	150	→	→	→
추가공제	경로우대자 공제	50	100	100 (65세 이상) 150 (70세 이상)	→	→	→	→	100 (70세 이상)	→	→	→
	장애인공제	50	100	→	200	→	→	→	→	→	→	→
	부녀자공제	50	→	→	→	→	→	→	→	→	→	→
	6세 이하 공제	50	→	100	→	→	→	→	→	→	→	폐지 → 자녀 세액 공제
	출산·입양 공제	-	-	-	-	-	-	신설 200	→	→	→	→
	한부모가족 공제	-	-	-	-	-	-	-	-	-	신설 100	-
	소수공제자 추가공제	100 (1인) 50 (2인)	→	→	→	→	폐지	-	-	-	-	-
	다자녀추가공제	-	-	-	-	-	신설 50+ (자녀 2>50)	→	→	100+ (자녀 2>20)	→	폐지 → 자녀 세액 공제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알기쉬운 조세제도」, 2012, 2013년 세법개정 반영



(4) 특별공제 제도 변화: 1993~2017년

		1993	1996	1999	2000	2002	2003	2004	2009	2014년 이후
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고용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전액	→	→	→	→	→	→	→	→
	보장성보험료	50만원	→	70만원	100만원	→	→	→	→	폐지 → 세액공제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	-	-	-	100만원	→	→	→	→	
의료비	본인·노인·장애인	급여		3% 이상	3% 이상		3% 이상	3% 이상 전액	→	폐지 → 세액공제
	부양가족	3% 이상 100만원	→	200만원	300만원	→	500만원	3% 이상 500만원	3% 이상 700만원	
교육비	본인	전액	→	→	→	→	→	→	→	폐지 → 세액공제
	취학전아동	-	1인당 70만원	100	→	→	150	200	300	
	초중고	전액	→	150	→	→	200	200	300	
	대학	-	1인당 230만원	300	→	→	500	700	900	
	장애인특수교육	-	-	-	-	150	전액	→	→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알기쉬운 조세제도」, 2012, 2013년 세법개정 반영

(5) 근로소득세액공제 제도 변화: 1983~2017년

	제도	공제한도
1983	월급여 30만원 이하: 산출세액의 30% 월급여 40만원 이하: 산출세액의 20% 월급여 50만원 이하: 산출세액의 10%	-
1990	모든 근로자: 산출세액의 20%	30만원
1991	총급여 3,600만원 초과: 산출세액의 30%	50만원
1993	산출세액의 20%	50만원
1996	산출세액 50만원 이하: 산출세액의 45% 산출세액 50만원 초과: 산출세액의 20%	50만원
1997	산출세액 50만원 이하: 산출세액의 45% 산출세액 50만원 초과: 산출세액의 30%	60만원
2001	상동	40만원
2003	산출세액 50만원 이하: 산출세액의 50% 산출세액 50만원 초과: 산출세액의 30%	45만원
2004	산출세액 50만원 이하: 산출세액의 55% 산출세액 50만원 초과: 산출세액의 30%	50만원
2014년 이후	산출세액 130만원 이하: 산출세액의 55% 산출세액 130만원 초과: 산출세액의 30%	50~74만원

- 자료: 1) 국회예산정책처, 「알기쉬운 조세제도」, 2012
 2) 국세청, 「국세청 40년사」, 2006
 3) 2013~2015년 세법개정 반영



(6) 특별세액공제 요건: 2014년 이후

구 분	공제요건	한도	소득공제 (2014년 이전)	세액공제 (2014년 이후)	
특별 공제	의료비 공제	공제대상 의료비를 지급한 경우(본인, 고령자 및 장애인은 전액공제)	연 700만원	총급여 3% 초과한 지출금액	
	교육비 공제	본인 : ①학교교육비(대학원 포함) ②평생교육과정비용 ③국외교육비 ④업무훈련비 ⑤학자금 원리금 상환액 기본공제 대상자: 위의 ①-③ (대학원제외) ④어린이집, 학원 등 교육비 장애인 : 특수교육비	본인 : 전액 특수교육비 : 전액 대학생 : 연 900만원 그 외 : 연 300만원	지출금액	지출금액의 15% 단, 기부금 세액공제는 2천만원 초과 지출시 30%
	기부금 공제	공익성 기부금을 지출한 경우 필요경비산입(사업 소득자만 해당)과 기부금 공제방법 중 선택	법정 : 100% 지정 : 30% 종교 : 10%	지출금액	
	보장성 보험료 공제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 및 일반적인 보장성보험의 보험료	연 100만원	불입금액	지출금액의 12%(장애인 보험은 15%)
	표준 공제	근로자 : 항목별공제를 선택하지 않은 경우 비근로자 :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	-	근로자 : 연 100만원 사업자 : 연 60만원 (성실사업자 :연 100만원)	근로소득자 13만원, 사업소득자 7만원 (성실사업자 12만원)
연금저축 공제	해당 과세기간에 거주자가 연금저축에 납입한 경우	연 400만원 (2017년부터 급여 1억2천억원 초과시 300만원) (2015년부터 퇴직연금 한도 300만원 추가)	불입금액	지출금액의 12%(급여 5,500만원 이하 15%)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7) 이자·배당 소득세 원천징수세율: 1991~2017년

(단위: %)

기간	기본			세금우대		
	소득 세율	주민 세율	합계	소득 세율	농특 세율 ¹⁾	합계
1991.1~1994.6	20	1.5	21.5	5	-	5.0
1994.7~1995.12				5	1.5	6.5
1996.1~1997.12	15	1.5	16.5	10	0.5	10.5
1998.1~1998.9	20	2.0	22.0	10	1.0	11.0
1998.10~1999.12 ²⁾	22	2.2	24.2	10	1.2	11.2
2000.1~2000.12	20	2.0	22.0	10	1.0	11.0
2001.1~2001.6	15	1.5	16.5	10	0.5	10.5
2001.7~2004.12	15	1.5	16.5	10	0.5	10.5
2005.1~ 2014.12	14	1.4	15.4	9	0.5	9.5
2015.1~				폐지	폐지	폐지

주: 1) 농어촌특별세율의 경우, 저축감면액의 10% 가산(surtax)

2) 1998.10~1999.12 동안 이자소득세율만 22%로 상승시켰고, 배당소득 세율은 20%로 이전기간(1998.1~1998.9)과 동일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8) 종합소득세와 근로소득세 과세인원: 1995~2015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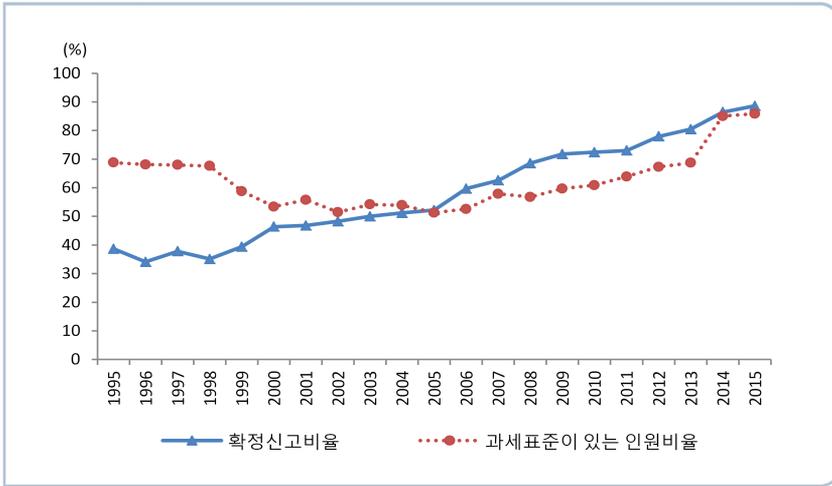
1) 표

(단위: 천명, %)

연도	종합소득세			근로소득세		
	납세인원 (A)	확정신고 인원(B)	확정신고 비율(B/A)	연말정산 신고인원(C)	과세자 (D)	과세자비율 (D/C)
1995	3,507	1,357	38.7	10,467	7,198	68.8
1996	3,657	1,247	34.1	10,212	6,958	68.1
1997	3,438	1,299	37.8	10,212	6,944	68.0
1998	3,495	1,226	35.1	9,276	6,269	67.6
1999	3,408	1,342	39.4	9,390	5,520	58.8
2000	3,480	1,616	46.4	11,102	5,934	53.4
2001	3,808	1,782	46.8	11,555	6,446	55.8
2002	4,161	2,010	48.3	12,017	6,187	51.5
2003	4,227	2,115	50.0	11,547	6,258	54.2
2004	4,363	2,236	51.2	11,624	6,268	53.9
2005	4,370	2,279	52.2	11,903	6,107	51.3
2006	4,580	2,736	59.7	12,595	6,621	52.6
2007	4,913	3,074	62.6	13,376	7,749	57.9
2008	5,227	3,584	68.6	14,046	7,981	56.8
2009	4,971	3,571	71.8	14,295	8,541	59.7
2010	5,230	3,785	72.4	15,177	9,244	60.9
2011	5,419	3,957	73.0	15,540	9,935	63.9
2012	5,585	4,353	77.9	15,768	10,612	67.3
2013	5,674	4,565	80.5	16,360	11,239	68.7
2014	5,846	5,053	86.4	16,687	14,190	85.0
2015	6,187	5,483	88.6	17,333	14,879	85.8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국회예산정책처 정리

2) 그림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국회예산정책처 분석



(9) 종합소득세와 근로소득세 부담구조: 2015년

분류	과세표준기준	인원		급여총계		결정세액		유효세율 (B/A,%)
		만명	%	조원 (A)	%	조원 (B)	%	
종합 소득 세	종합소득세 합계	548	100	162.0	100	23.6	100	14.5
	과표 0인 경우	46	8.4	0.9	0.6	-	-	-
	0~1,200만원	303	55.3	23.4	14.5	0.3	1.1	1.1
	1,200~4,600만원	135	24.6	40.0	24.7	2.4	10.0	5.9
	4,600~8,800만원	36	6.5	25.9	16.0	2.9	12.4	11.3
	8,800만원~1.5억원	15	2.8	18.7	11.5	3.2	13.5	17.0
	1.5억원 초과	13	2.4	53.1	32.7	14.8	63.0	28.0
근로 소득 세	근로소득세 합계	1,733	100.0	566.7	100	28.3	100	5.0
	과표 0인 경우	245	14.2	10.1	1.8	-	-	-
	0~1,200만원	756	43.6	128.0	22.6	0.2	0.8	0.2
	1,200~4,600만원	580	33.5	261.0	46.1	7.2	25.4	2.8
	4,600~8,800만원	121	7.0	108.4	19.1	9.2	32.6	8.5
	8,800만원~1.5억원	24	1.4	32.9	5.8	4.8	17.2	14.7
	1.5억원 초과	8	0.5	26.2	4.6	6.8	24.0	25.9

주: 1) 종합소득자의 실효세율은 종합소득금액 대비 결정세액의 비율

2) 근로소득자의 실효세율은 급여총계 대비 결정세액의 비율

(유효세율의 분모를 급여총계 대신 근로소득금액(2015년 413조원)으로 할 경우, 유효세율은 6.8% 수준)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2015 자료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정리

(10) 양도소득세 세율 변화: 2004~2017년

구 분		년 도					
		'04~'06	'07~'08	'09~'11	'12	'14	'16~'17
<개 인>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2년이상 보유	누진세율 (9~36)	누진세율 (9~36)	누진세율 (6~35)	누진세율 (6~38)	누진세율 (6~38)	누진세율 (16년: 6~38) (17년~: 6~40)
	1~2년 보유	40	40	40	40	토자:40 주택:누진	토자:40 주택:누진
	1년미만 보유	50	50	50	50	토자:50 주택:40	토자:50 주택:40
	1세대 3주택이상	60 (신설)	60	60	60	누진세율 ¹⁾	누진세율 ¹⁾
	1세대 2주택 비사업용 토지	-	50 (신설)	50	50	누진세율	누진세율
	마등기	70	70	70	70	70	70
기타자산		누진세율	누진세율	누진세율	누진세율	누진세율	누진세율
비상장 주식	대기업 대주주 1년미만 보유	30	30	30	30	30	30
	중소기업주식	10	10	10	10	10	10 (대주주20)
	기타	20	20	20	20	20	20
상장 주식	대기업 대주주 1년 미만 보유	30	30	30	30	30	30
	중소기업주식	10	10	10	10	10	10 (대주주20)
	기타	20	20	20	20	20	20
파생상품		미과세					20 (탄력5)
<법 인>							
토지·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등 기	10 (투기지역) 30 (주택)	10 (투기지역) 30 (주택, 사업용용지)	10 (투기지역) 30 (주택, 사업용토지)	10 (투기지역) 30 (주택, 사업용토지)	10 (투기지역) 30 (주택, 사업용토지)	10 (투기지역) 30 (주택, 사업용토지)
		20 (투기지역) 40 (주택)	20 (투기지역) 40 (주택, 사업용토지)				
기타자산중 주식	미등기	20 (투기지역) 40 (주택)	20 (투기지역) 40 (주택, 사업용토지)				

주: 1세대 3주택자 이상 소유자와 비사업용 토지의 경우 기본 누진세율을 적용하되, 지정지역에 대해서는 누진세율+10%p 적용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알기쉬운 조세제도』, 2012; 국세청 홈페이지



(11) 장기보유특별공제 제도 변화: 1975~2017년

1975.1.1.~		1989.1.1.~1995.12.31		1996.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도소득특별공제(물가상승 공제) 신설 ○ 보유기간 중 생산자물가상승률 (연 5%한도) 상당액을 양도차익에서 공제 취득가액×율×보유기간 		〈좌동〉		〈폐지〉	
		□ 장기보유특별공제 신설		□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	공제율	보유기간	공제율
		5년 이상 10년 미만	10%	3년 이상 5년 미만	10%
		10년 이상	30%	5년 이상 10년 미만	15%
				10년 이상	30%
				15년 이상 보유 1세대 1주택	45%
2008.1.1.~		2008.3.21~		2009.1.1.~	
보유기간	일반부동산	〈좌동〉		〈좌동〉	
3년 이상 4년 미만	10%				
4년 이상 5년 미만	12%				
5년 이상 6년 미만	15%				
6년 이상 7년 미만	18%				
7년 이상 8년 미만	21%				
8년 이상 9년 미만	24%				
9년 이상 10년 미만	27%				
10년 이상	30%				
보유기간	1세대 1주택 (’08.1.1~’3.20 양도분)				
3년 이상 4년 미만	10%	3년 이상 4년 미만	12%	3년 이상 4년 미만	24%
4년 이상 5년 미만	12%	4년 이상 5년 미만	16%	4년 이상 5년 미만	32%
5년 이상 6년 미만	15%	5년 이상 6년 미만	20%	5년 이상 6년 미만	40%
6년 이상 7년 미만	18%	6년 이상 7년 미만	24%	6년 이상 7년 미만	48%
7년 이상 8년 미만	21%	7년 이상 8년 미만	28%	7년 이상 8년 미만	56%
8년 이상 9년 미만	24%	8년 이상 9년 미만	32%	8년 이상 9년 미만	64%
9년 이상 10년 미만	27%	9년 이상 10년 미만	36%	9년 이상 10년 미만	72%
10년 이상 11년 미만	30%	10년 이상 11년 미만	40%	10년 이상	80%

2008.1.1.~		2008.3.21~		2009.1.1.~	
보유기간	1세대 1주택 (08.1.1~3.20 양도분)	보유기간	1세대 1주택	보유기간	1세대 1주택
11년 이상 12년 미만	33%	11년 이상 12년 미만	44%		
12년 이상 13년 미만	36%	12년 이상 13년 미만	48%		
13년 이상 14년 미만	39%	13년 이상 14년 미만	52%		
14년 이상 15년 미만	42%	14년 이상 15년 미만	56%		
15년 이상	45%	15년 이상 16년 미만	60%		
		16년 이상 17년 미만	64%		
		17년 이상 18년 미만	68%		
		18년 이상 19년 미만	72%		
		19년 이상 20년 미만	76%		
		20년 이상	80%		

자료: 기획재정부, 「조세개요」, 2012; 국회예산정책처 정리



(12) 양도소득세 세수: 1975~2015년

(단위: 조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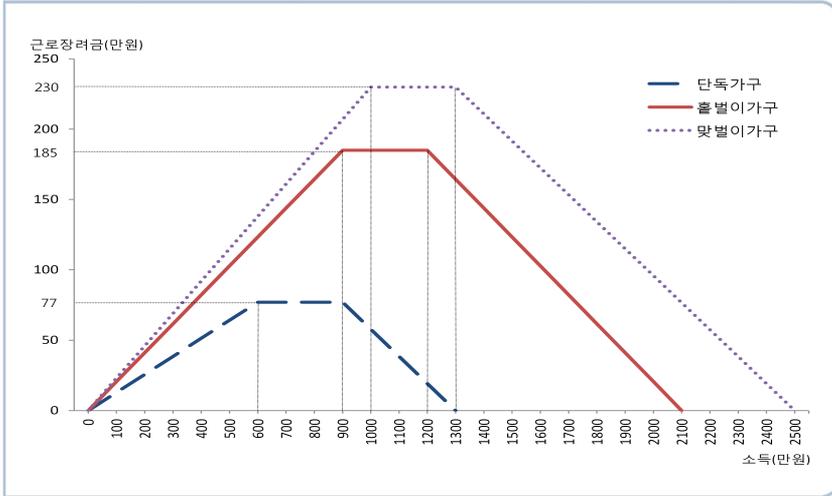
연도	내국세수(A)	양도소득세수(B)	구성비(B/A)
1975	10,123	19	0.2%
1976	13,705	122	0.9%
1977	16,752	137	0.8%
1978	22,526	346	1.5%
1979	30,375	390	1.3%
1980	36,758	389	1.1%
1981	45,958	590	1.3%
1982	52,507	795	1.5%
1983	61,884	1,133	1.8%
1984	66,974	994	1.5%
1985	74,969	930	1.2%
1986	84,640	1,067	1.3%
1987	100,120	1,368	1.4%
1988	125,402	3,070	2.4%
1989	152,084	5,654	3.7%
1990	191,302	11,135	5.8%
1991	240,892	12,587	5.2%
1992	300,801	11,781	3.9%
1993	341,746	13,545	4.0%
1994	384,490	15,770	4.1%
1995	443,820	17,612	4.0%
1996	492,023	17,578	3.6%
1997	521,532	19,566	3.8%
1998	512,378	9,640	1.9%
1999	563,931	9,933	1.8%
2000	711,061	13,814	1.9%
2001	740,273	14,808	2.0%
2002	822,259	24,571	3.0%
2003	922,312	28,975	3.1%
2004	952,764	38,387	4.0%
2005	1,044,279	44,522	4.3%
2006	1,138,795	79,205	7.0%
2007	1,325,081	112,920	8.5%
2008	1,365,563	93,250	6.8%
2009	1,364,769	73,080	5.4%
2010	1,435,061	81,630	5.7%
2011	1,596,018	73,890	4.6%
2012	1,697,713	74,550	4.4%
2013	1,688,458	66,571	3.9%
2014	1,741,118	80,474	4.6%
2015	1,852,403	118,561	6.4%

자료: 국세청, 「국세청 40년사」, 2006; OECD Tax Database; 국회예산정책처 정리

(13) 근로장려세제 및 자녀장려세제 수급기준 변화: 2008~2017년

1) 근로장려세제(EITC)

개정 (적용)	2008년 (2009년~)	2011년 (2012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4년~)	2016·2017년 (2017년~)																																							
적용 대상	근로소득자	근로소득자, 보합모집인·방문판매인	(좌 동) '15년부터 자영업자까지 확대적용 (단, 고소득 전문직, 일정소득금액 이상 사업자 제외)	(좌 동)	(좌 동)																																							
신청 제외자	신청일 직전연도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주거·생계·교육 급여를 3개월 이상 받은 자		신청연도 3월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주거·생계급여를 받은 자	기초생활수급자 포함 (단, 자녀장려금 수급 불가)	(좌 동)																																							
부양 자녀	1인 (18세미만)	무자녀가구 추가 (단, 배우자 필요)	(좌 동) (단, 60세이상 단독가구 가능)	(좌 동) (단, '16년 50대이상, '17년 40대이상 가능)	(좌 동) (단, '18년 30대 이상 가능)																																							
소득 요건 · 최대 지급액	부부 합산 1,700만원 미만, 최대 120만원 지급	<table border="1"> <thead> <tr> <th>부양 자녀</th> <th>소득 기준 (만원)</th> <th>최대 지급액 (만원)</th> </tr> </thead> <tbody> <tr> <td>없음</td> <td>1,300</td> <td>70</td> </tr> <tr> <td>1인</td> <td>1,700</td> <td>140</td> </tr> <tr> <td>2인</td> <td>2,100</td> <td>170</td> </tr> <tr> <td>3인~</td> <td>2,500</td> <td>200</td> </tr> </tbody> </table>	부양 자녀	소득 기준 (만원)	최대 지급액 (만원)	없음	1,300	70	1인	1,700	140	2인	2,100	170	3인~	2,500	200	(좌 동)	<table border="1"> <thead> <tr> <th>구성</th> <th>소득 기준 (만원)</th> <th>최대 지급액 (만원)</th> </tr> </thead> <tbody> <tr> <td>단독 가구</td> <td>1,300</td> <td>70</td> </tr> <tr> <td>혼별이</td> <td>2,100</td> <td>170</td> </tr> <tr> <td>맞별이</td> <td>2,500</td> <td>210</td> </tr> </tbody> </table>	구성	소득 기준 (만원)	최대 지급액 (만원)	단독 가구	1,300	70	혼별이	2,100	170	맞별이	2,500	210	<table border="1"> <thead> <tr> <th>구성</th> <th>소득 기준 (만원)</th> <th>최대 지급액 (만원)</th> </tr> </thead> <tbody> <tr> <td>단독 가구</td> <td>1,300</td> <td>77</td> </tr> <tr> <td>혼별이</td> <td>2,100</td> <td>185</td> </tr> <tr> <td>맞별이</td> <td>2,500</td> <td>230</td> </tr> </tbody> </table>	구성	소득 기준 (만원)	최대 지급액 (만원)	단독 가구	1,300	77	혼별이	2,100	185	맞별이	2,500	230
부양 자녀	소득 기준 (만원)	최대 지급액 (만원)																																										
없음	1,300	70																																										
1인	1,700	140																																										
2인	2,100	170																																										
3인~	2,500	200																																										
구성	소득 기준 (만원)	최대 지급액 (만원)																																										
단독 가구	1,300	70																																										
혼별이	2,100	170																																										
맞별이	2,500	210																																										
구성	소득 기준 (만원)	최대 지급액 (만원)																																										
단독 가구	1,300	77																																										
혼별이	2,100	185																																										
맞별이	2,500	230																																										
자녀 장려 세제	-	-	-	'15년 지급분부터 적용 자녀 1인당 30~50만원 (소득에 따라 차등지급)	(좌 동)																																							
재산 요건	토지, 건물, 자동차, 전세금 등 합계 1억원 미만	(좌 동)	(좌 동)	1억 4천만원 미만 (1억원 초과시 장려금의 50%만 수급)	근로장려금 1억 4천만원 미만(좌동), 자녀장려금 2억원 미만																																							
주택 요건	무주택 (5천만원 이하 1주택 포함)	무주택 (6천만원 이하 1주택 포함)	(좌 동)	무주택 또는 1주택 (주택가격기준 삭제)	(폐 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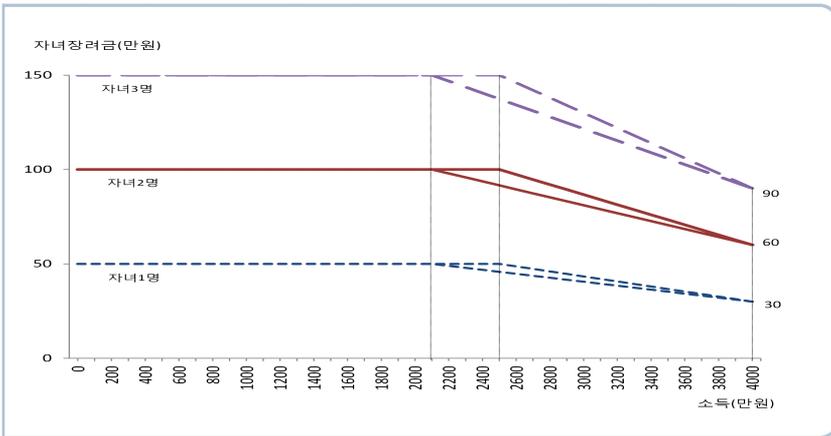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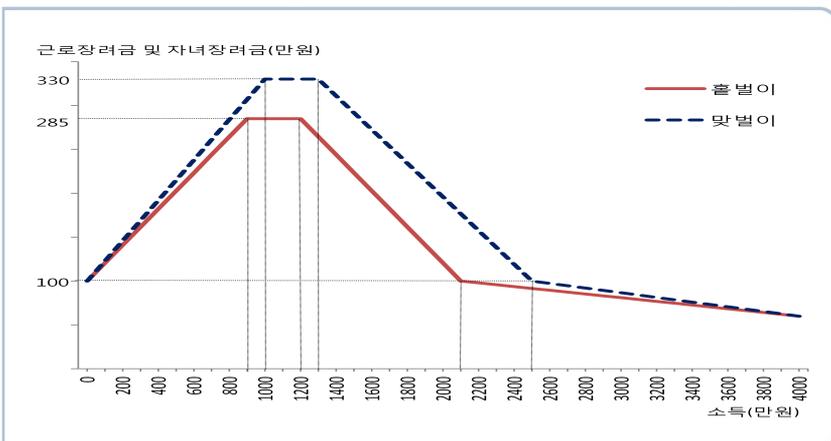
2) 자녀장려세제(CTC)

(단위: 만원)

가구원구성	평탄구간		점감구간	
	소득기준	최대지급액	소득기준	점감률
홀벌이	0 ~ 2,100	자녀 1인당 50만원	2,100 ~ 4,000	자녀 1인당 20/1,900
맞벌이	0 ~ 2,500		2,500 ~ 4,000	자녀 1인당 20/1,500



3) 근로장려세제 및 자녀장려세제 중복 수급: 자녀 2명인 경우





(14)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신청 및 지급: 2009~2015년

1) 근로장려금

(단위: 가구, 백만원)

연도 (귀속기준)	신청		지급		지급제외	
	가구수	금액	가구수	금액	가구수	금액
2008	723,937	558,161	590,720	453,731	133,217	104,430
2009	676,634	522,352	566,080	436,903	110,554	85,449
2010	666,816	509,405	522,098	402,003	144,718	107,402
2011	930,232	747,481	752,049	614,021	178,183	133,460
2012	1,001,087	719,327	783,397	561,761	236,690	157,566
2013	1,001,405	967,151	846,018	774,492	214,387	192,659
2014	1,658,659	1,419,592	1,281,856	1,056,592	376,803	363,030
2015	1,655,491	1,304,810	1,378,953	1,028,049	316,538	276,761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2015 자료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정리

2) 자녀장려금

(단위: 가구, 백만원)

연도 (귀속기준)	신청		지급		지급제외	
	가구수	금액	가구수	금액	가구수	금액
2014	1,403,164	975,841	1,074,814	657,898	328,350	317,943
2015	1,144,573	775,108	926,344	560,657	218,229	214,451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2015 자료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정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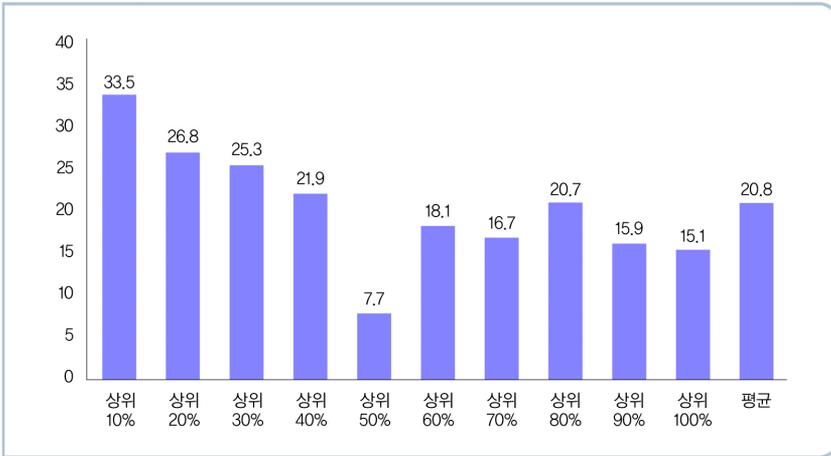
3)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중복가구

(단위: 가구, 백만원)

연도 (귀속기준)	신청		지급	
	가구수	금액	가구수	금액
근로장려금	1,695,491	1,304,810	1,378,953	1,028,049
자녀장려금	1,144,573	775,108	926,344	560,657
중복신청가구	608,268	(근로) 573,677	495,572	(근로) 459,467
		(자녀) 451,140		(자녀) 351,9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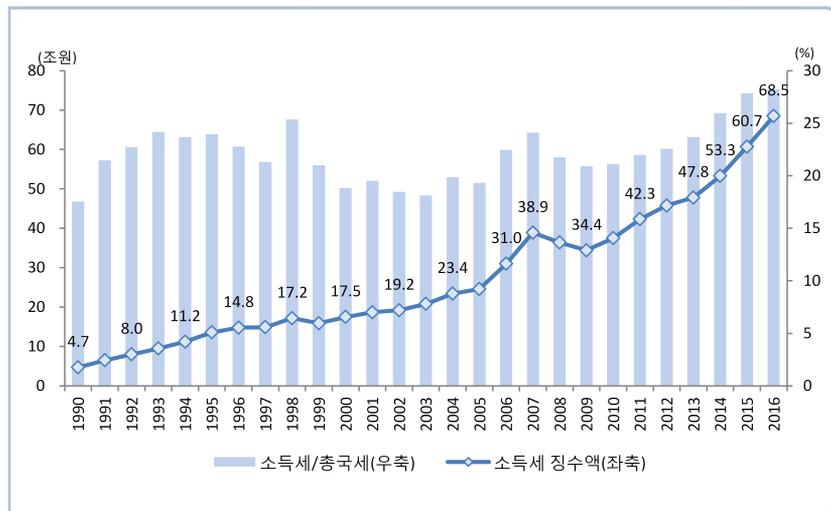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2015 자료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정리

[15] 고소득 자영업자 소득탈루율 추정: 2012년



자료: 신영민 · 강민지, “자영업자의 소득 탈루율 및 탈세규모의 추정”, 국회예산정책처, 2014

[16] 소득세 징수액 추이: 1990~2016년



자료: 연도별 국세통계연보; e-나라지표;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마감 결과”, 2017.2.10.



2. 법인세

(1) 법인세율과 과표구간 변화: 1950~2017년

	일반법인		특별법인		
1950	35%		20%		
1951	25~45%(5단계)		15~35%(5단계)		
1952	15~75%(8단계)		15~35%(5단계)		
1953	35~70%(8단계)		20~55%(8단계)		
	일반법인	특별법인	비영리법인		
1955	35%	30%	30%		
1957	32%	27%	27%		
	일반법인		동족회사		
1959	30%		32%		
	비공개법인		공개법인		
1961	22%		17%		
1962	20%		10%		
1963	20~50%(2단계)		비공개법인의 1/2		
1964	25~30%(2단계)		비공개법인의 1/2		
1966	20~35%(3단계)		비공개법인의 1/2		
1968	25~45%(3단계)		20~35%(3단계)		
	비공개법인	공개법인	비영리법인		
1969	25~45%(3단계)	15~25%(3단계)	20~35%(3단계)		
1972	20~40%(3단계)	16~27%(3단계)	20~35%(3단계)		
1975	20~40%(3단계)	20~27%(2단계)	20~27%(2단계)		
	비공개법인	공개법인	비영리법인	학교법인	
1976	20~40%(3단계)	20~27%(2단계)	20~27%(2단계)	15%	
	비공개법인	공개법인 (대주주지분 30%미만)	공개법인 (35%초과)	비영리법인	학교법인
1977	20~40%(2단계)	20~27%(2단계)	25~33%(2단계)	20~27%(2단계)	15%
1979	20~40%(2단계)	20~30%(2단계)	25~35%(2단계)	20~27%(2단계)	15%

	비공개법인	공개법인 (30%미만)	공개법인 (35%초과)	비영리법인	
1981	25~40%(2단계)	25~33%(2단계)	25~40%(2단계)	20~27%(2단계)	
	비공개법인	공개법인 (35%미만)	공개법인 (35%초과)	비영리법인	공공법인
1982	22~38%(2단계)	22~33%(2단계)	22~38%(2단계)	20~27%(2단계)	5%
	일반법인	비상장대기업	비영리법인	공공법인	
1983	20~30%(2단계)	20~33%(2단계)	27%	5%	
1989	20~30%(2단계)	20~33%(2단계)	27%	10~15%(2단계)	
	일반법인		공공법인		
1991	20~34%(2단계)		17~25%(2단계)		
1994	18~32%(2단계)		18~25%(2단계)		
1995	18~30%(2단계)		18~25%(2단계)		
1996	16~28%(2단계)		16~25%(2단계)		
	모든 과세대상 법인		조합법인		
1999	16~28% 2단계		12%		
2002	15~27% 2단계		12%		
2005	1억원 기준 / 13~25%(2단계)		12%		
2008	2억원 기준 / 11~25%(2단계)		12%		
2009	11~22%(2단계)		12%		
2010	10~22%(2단계)		9%		
2012	2억원 이하 10%		9%		
2014 (현재)	2~200억원 20% 200억원 초과 22%(3단계)		9%(당기순이익 20억원이상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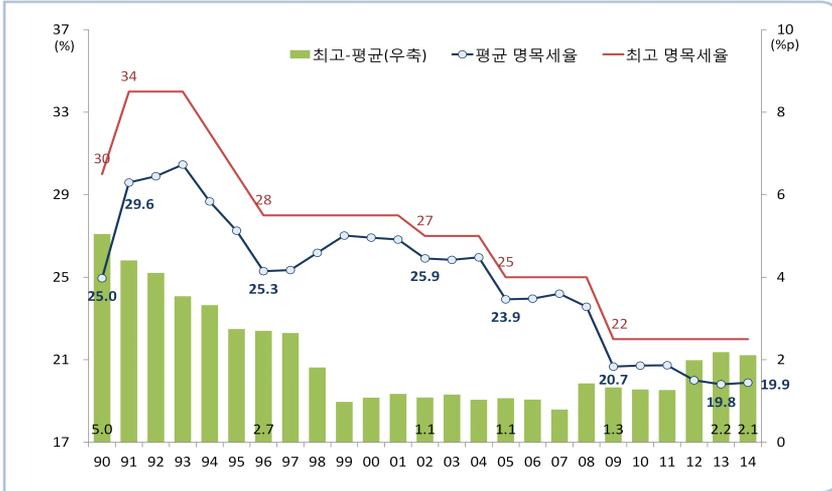
주: 조합법인은 신흥, 새마을금고, 농협, 수협 등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①의 각호에 열거된 조합으로, 당기순이익 과세를 적용 받는 법인

자료: 법제처, 한국조세연구원 자료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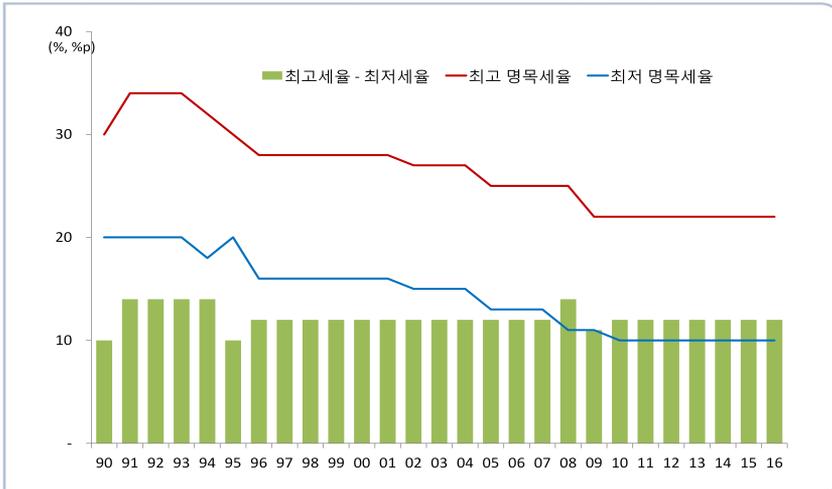
(2) 법인세율 변화: 1990년~2014년(소득귀속연도 기준)

1) 최고세율과 평균세율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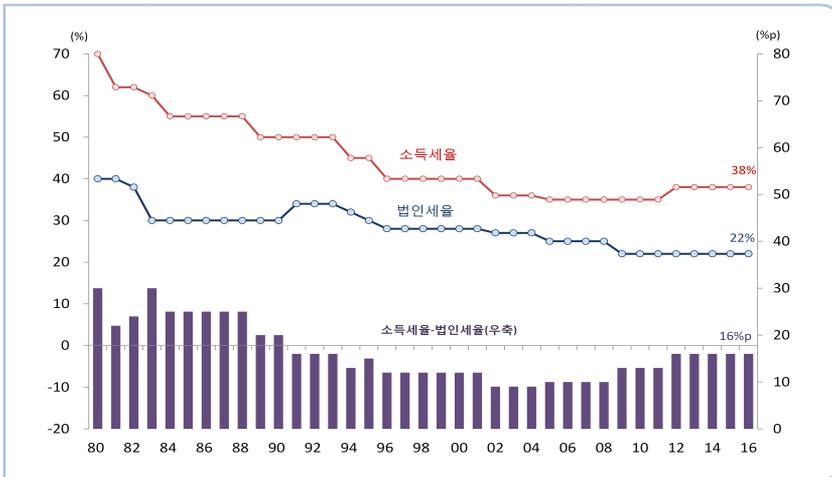
자료: 국세청, 법제처 자료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작성

2) 최고세율과 최저세율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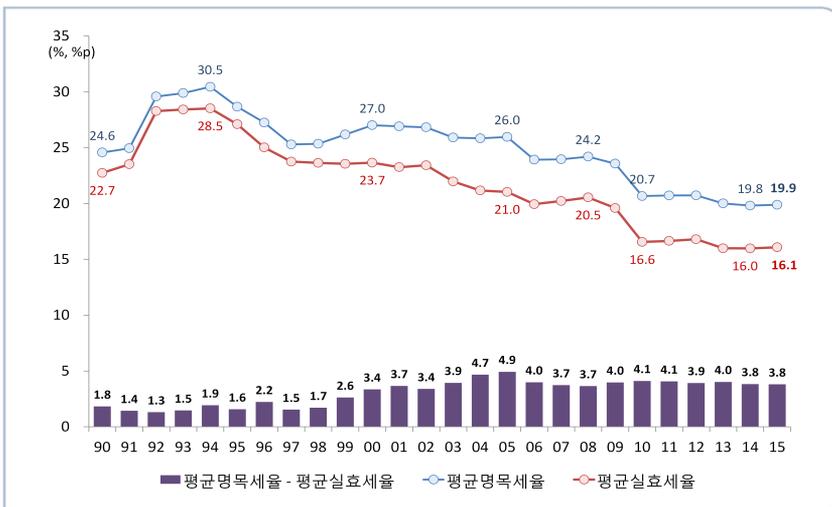
자료: 국세청, 법제처 자료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작성

(3) 법인세율과 소득세율 비교: 1980년~2016년(소득귀속연도 기준)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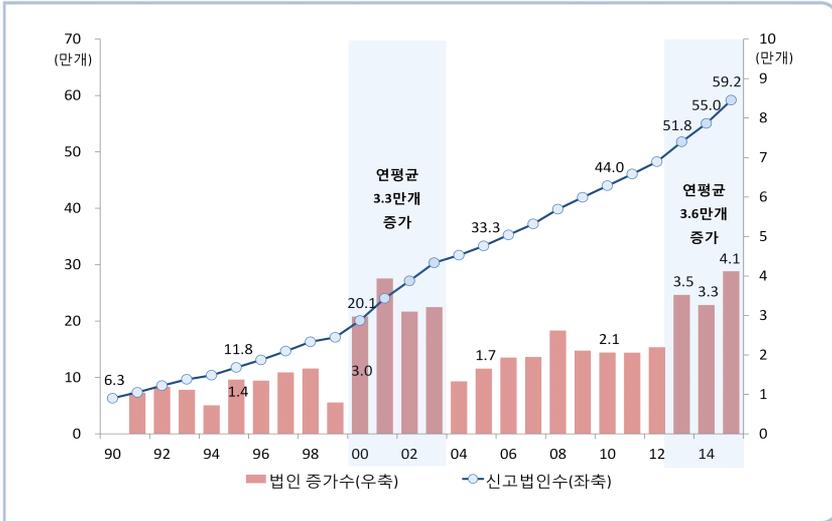
(4) 법인세 평균명목세율과 평균실효세율 비교: 1990~2015년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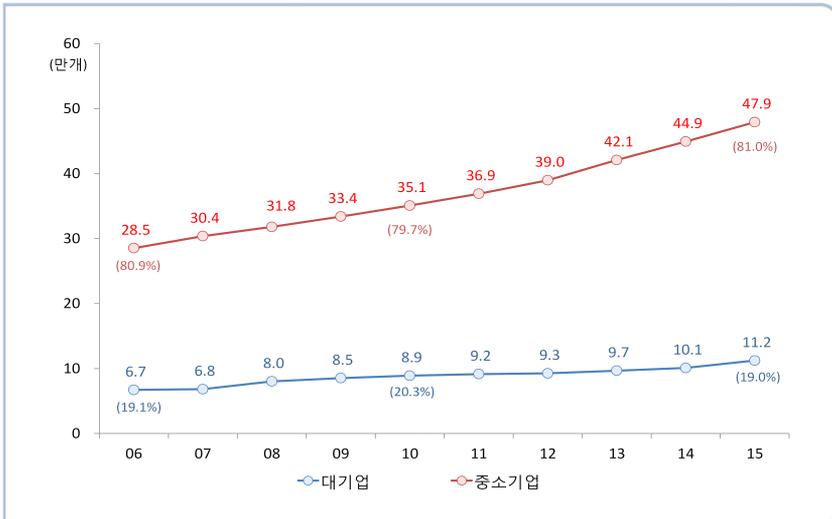


(5) 우리나라 법인수: 1990~2015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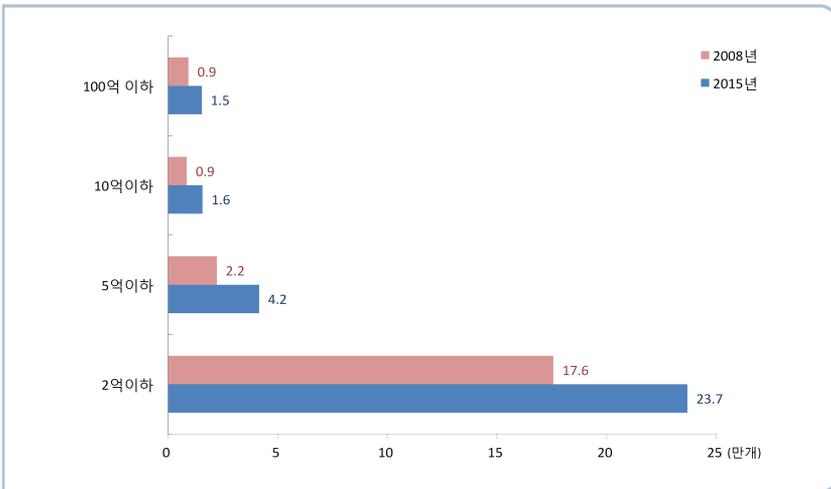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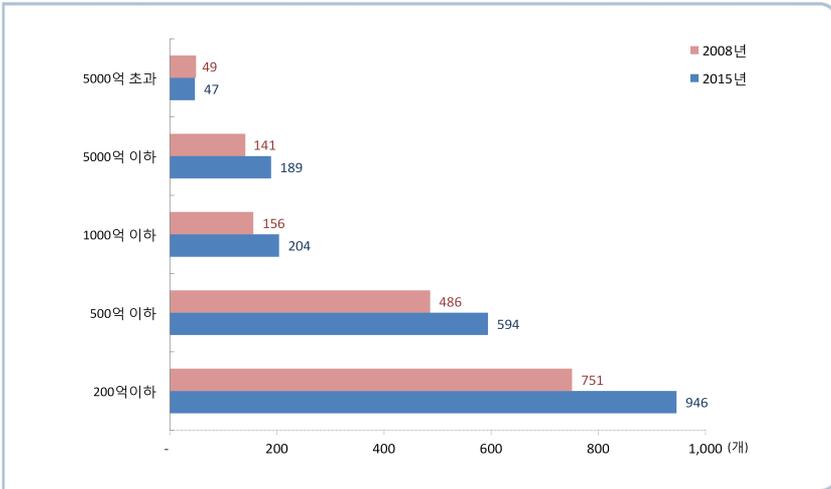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6) 기업규모별 법인수 추이: 2006~2015년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7) 과표구간별 법인수: 2008년과 2015년 비교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8) 중소기업 사업체수 및 종업원수: 1994~2014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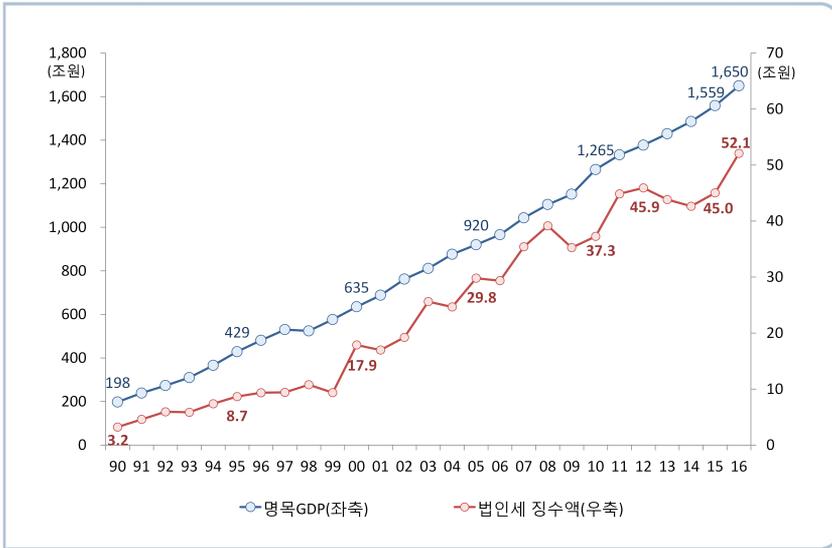
(단위: 만개, 만명, %)

년도	전체(A)		중소기업(B)		중소기업 비중(B/A)	
	사업체수	종사자수	사업체수	종사자수	사업체수	종사자수
1994	238	1,022	237	768	99,3	75,1
1995	262	1,110	260	826	99,2	74,5
1996	265	1,127	263	841	99,3	74,6
1997	269	1,080	267	827	99,3	76,6
1998	262	988	261	767	99,3	77,7
1999	276	1,043	274	828	99,3	79,5
2000	273	1,077	271	868	99,2	80,6
2001	266	1,088	265	918	99,7	84,4
2002	286	1,174	286	1,015	99,8	86,5
2003	294	1,187	293	1,031	99,8	86,8
2004	293	1,182	292	1,021	99,8	86,4
2005	287	1,190	286	1,045	99,9	87,8
2006	294	1,223	294	1,068	99,9	87,3
2007	298	1,261	297	1,115	99,9	88,4
2008	305	1,307	304	1,147	99,9	87,7
2009	307	1,340	307	1,175	99,9	87,7
2010	313	1,414	312	1,226	99,9	86,8
2011	323	1,453	323	1,263	99,9	86,9
2012	335	1,489	335	1,306	99,9	87,7
2013	342	1,534	342	1,342	99,9	87,5
2014	355	1,596	354	1,403	99,9	87,9

주: 중소기업의 대상 업종범위가 1995년 이전에는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도소매업, 1996~1998년에는 도소매업이 도소매 기타서비스업으로 바뀌며 전기·가스·수도사업 추가, 1999~2000년에는 중소기업법 및 표준산업분류 개정에 따라 전 업종으로 대상 확대, 2001년 이후에는 개인 및 회사법인 형태의 전 업종으로 상이함

자료: 중소기업중앙회 자료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9) 명목 GDP 및 법인세징수액: 1990년~2016년



자료: 한국은행, 기획재정부 자료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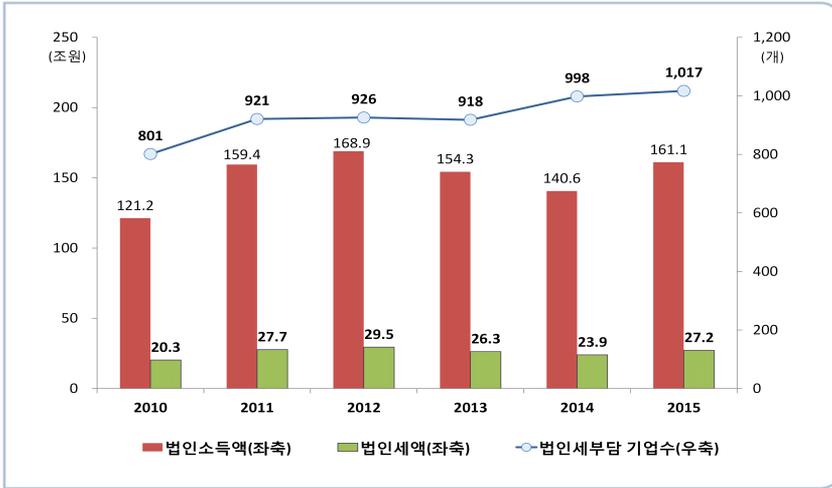
(10) 과세표준 구간별 법인세 현황: 2015년

(단위: 개, 억원, %)

과표구간	총신고 법인수	소득 금액	총부담세액	과표구간	총신고 법인수	소득 금액	총부담세액
0	280,248	182,371	516	0	236,851 (47.4%)	182,371 (6.6%)	516 (0.1%)
1억 이하	189,735	77,764	5,425	2억 이하	208,024 (40.0%)	150,259 (5.5)	11,065 (2.8%)
2억 이하	47,063	72,495	5,640				
5억 이하	41,540	133,393	13,662	200억 이하	61,379 (12.4%)	802,673 (29.2%)	113,955 (28.7%)
10억 이하	15,706	113,580	14,303				
20억 이하	8,487	123,156	17,448				
50억 이하	5,083	161,831	24,543				
100억 이하	1,852	134,228	21,125				
200억 이하	946	136,485	22,873	200억 초과	1,034 (0.2%)	1,610,515 (58.7%)	272,167 (68.4%)
500억 이하	594	187,157	32,698				
1천억 이하	204	147,918	26,619				
5천억 이하	189	375,087	67,409				
5천억 초과	47	900,353	145,441				
전체	591,694	2,745,817	397,704	전체	591,694	2,745,817	397,704

주: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은 흑자법인의 소득금액 합계이고, ()는 전체 대비 해당 과표구간별 비중
 자료: 국세청, 「2015 국세통계연보」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11) 법인세 과표 200억원 초과구간 세액 추이: 2010~2015년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12) 법인세 부담 관련 기업수 추이: 2007~2015년

(단위: 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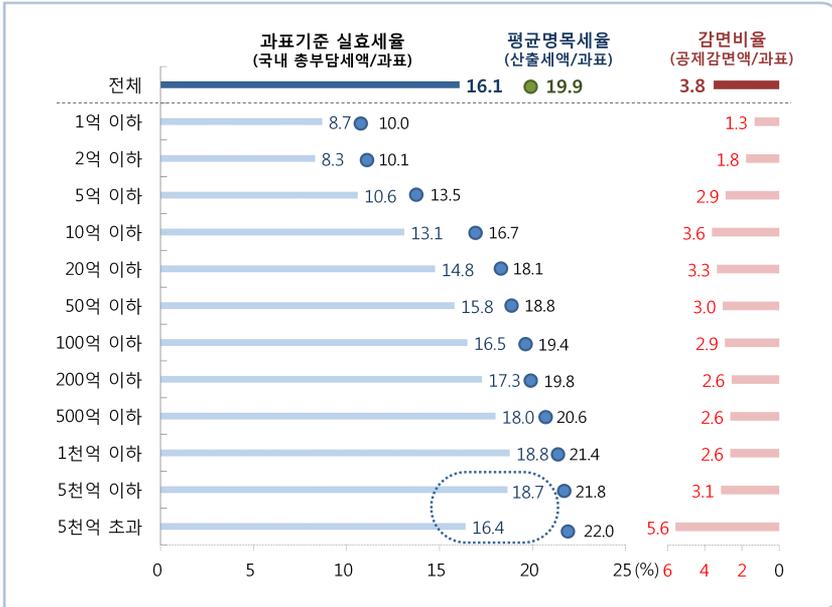
	전체	흑자 기업	적자 기업	법인세 부담	법인세미부담		
					적자	비교세금면	
2007	37.2	25.2	12.0	21.2	16.0	12.0	4.0
2008	39.8	26.8	13.0	22.4	17.5	13.0	4.5
2009	41.9	27.8	14.2	22.8	19.2	14.2	5.0
2010	44.0	29.7	14.4	23.7	20.3	14.4	6.0
2011	46.1	31.2	14.9	24.8	21.3	14.9	6.4
2012	48.3	32.2	16.1	25.8	22.5	16.1	6.4
2013	51.8	34.2	17.6	27.4	24.4	17.6	6.7
2014	55.0	36.3	18.7	29.0	26.0	18.7	7.3
2015	59.2	38.9	20.2	31.3	27.9	20.2	7.6
평균	47.0	31.3	15.7	25.4	21.7	15.7	6.0
(전체 대비)	(100%)	(66.7%)	(33.3%)	(53.9%)	(46.1%)	(33.3%)	(12.7%)
[미부담 대비]					[100%]	[72.4%]	[27.6%]
연평균 증가율	6.0%	5.6%	6.7%	5.0%	7.2%	6.7%	8.4%

주: 2006년 이전의 경우 전체 신고법인수와 흑자기업수는 집계되나, 법인세부담기업수가 미집계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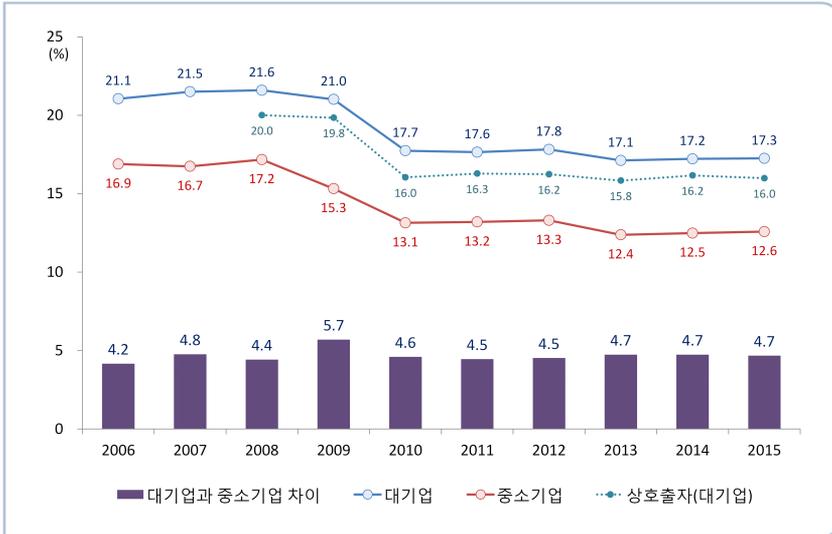


(13) 과표구간별 평균실효세율 및 감면비율: 2015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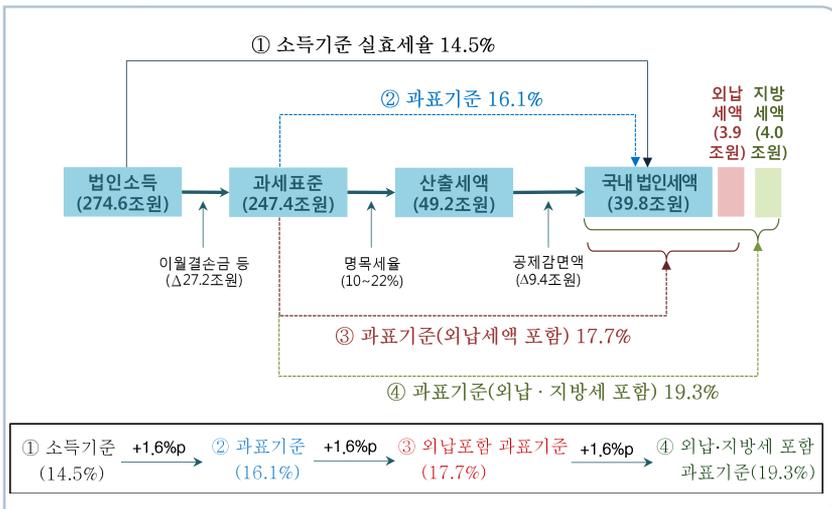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14) 법인세 평균실효세율(대기업과 중소기업 비교): 2006~2015년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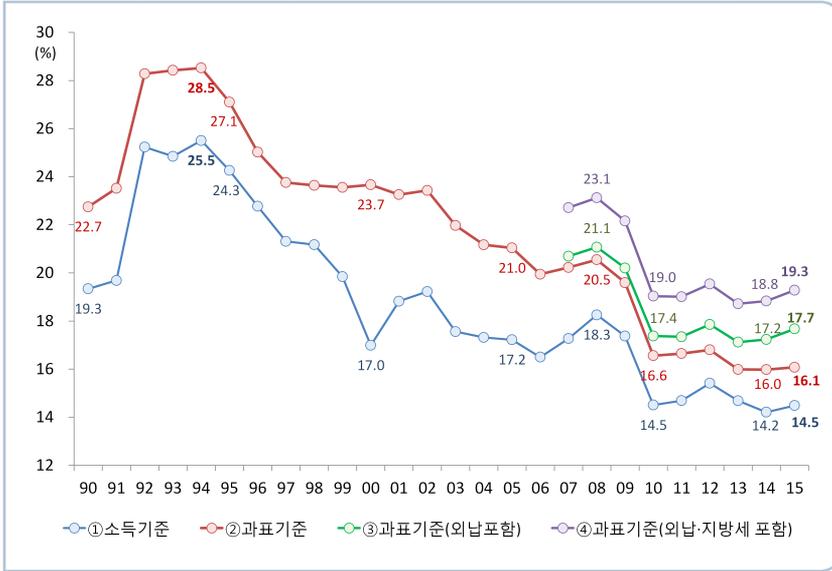
(15) 법인세 실효세율 및 계산절차: 2015년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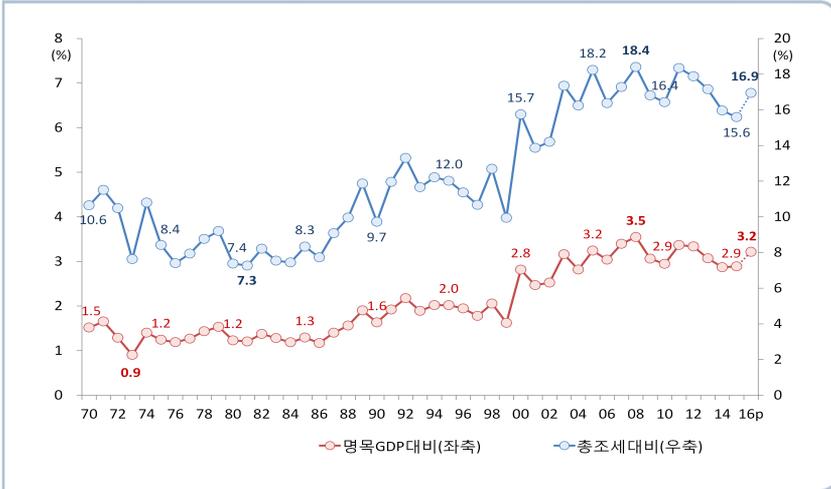


[16] 법인세 실효세율 추정방식별 추이: 1990~2015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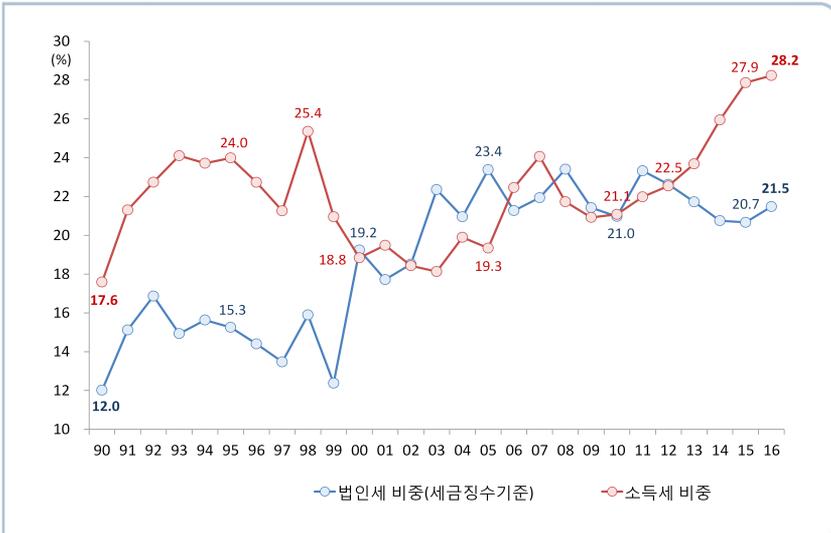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17) 법인세 비중 추이(세금징수기준): 1970~2016년



주: 2016년의 경우, 법인세와 국세는 실적을 사용했으나 GDP(NABO)와 지방세(예산)는 추정치 사용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한국은행 자료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18) 국세대비 법인세 및 소득세 비중 추이(세금징수기준): 1990~2016년



주: 소득세액은 소득세 전체 징수액에서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을 제외한 금액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한국은행 자료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19) 법인세의 전년대비 증감분(세금징수기준): 1970~2016년

(단위: 억원)

	국세			법인세			국세대비 법인세 비중	국세증가분 대비 법인세 증가분 비중
	수입	증가분	증가율	수입	증가분	증가율		
1970	3,648	-	-	424	-	-	11.6%	-
1971	4,531	882	24.2%	567	143	33.9%	12.5%	16.3%
1972	4,763	233	5.1%	548	-19	-3.3%	11.5%	-8.1%
1973	5,785	1,021	21.4%	498	-50	-9.2%	8.6%	-4.9%
1974	9,137	3,352	57.9%	1,103	605	121.6%	12.1%	18.1%
1975	13,910	4,773	52.2%	1,305	202	18.3%	9.4%	4.2%
1976	20,927	7,018	50.5%	1,712	407	31.2%	8.2%	5.8%
1977	26,227	5,299	25.3%	2,350	638	37.3%	9.0%	12.0%
1978	36,523	10,296	39.3%	3,587	1,238	52.7%	9.8%	12.0%
1979	47,617	11,094	30.4%	4,932	1,345	37.5%	10.4%	12.1%
1980	58,077	10,460	22.0%	4,852	-80	-1.6%	8.4%	-0.8%
1981	72,579	14,502	25.0%	5,941	1,089	22.4%	8.2%	7.5%
1982	83,964	11,385	15.7%	7,813	1,872	31.5%	9.3%	16.4%
1983	100,507	16,543	19.7%	8,637	824	10.5%	8.6%	5.0%
1984	108,997	8,490	8.4%	9,235	598	6.9%	8.5%	7.0%
1985	118,764	9,767	9.0%	11,267	2,032	22.0%	9.5%	20.8%
1986	136,063	17,299	14.6%	11,914	647	5.7%	8.8%	3.7%
1987	163,437	27,374	20.1%	16,824	4,910	41.2%	10.3%	17.9%
1988	194,842	31,405	19.2%	22,474	5,650	33.6%	11.5%	18.0%
1989	212,341	17,499	9.0%	31,079	8,605	38.3%	14.6%	49.2%
1990	268,474	56,133	26.4%	32,261	1,182	3.8%	12.0%	2.1%
1991	303,198	34,724	12.9%	45,855	13,594	42.1%	15.1%	39.1%
1992	352,184	48,986	16.2%	59,411	13,555	29.6%	16.9%	27.7%
1993	392,606	40,422	11.5%	58,623	-787	-1.3%	14.9%	-1.9%
1994	472,617	80,011	20.4%	73,876	15,252	26.0%	15.6%	19.1%
1995	567,745	95,128	20.1%	86,626	12,751	17.3%	15.3%	13.4%
1996	649,602	81,857	14.4%	93,561	6,935	8.0%	14.4%	8.5%
1997	699,277	49,675	7.6%	94,247	686	0.7%	13.5%	1.4%
1998	677,977	-21,300	-3.0%	107,758	13,511	14.3%	15.9%	-63.4%
1999	756,580	78,603	11.6%	93,654	-14,104	-13.1%	12.4%	-17.9%

(단위: 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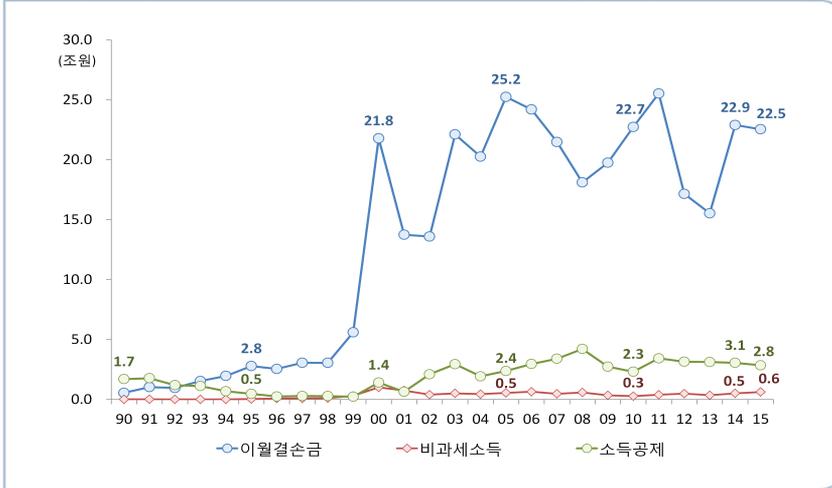
	국세			법인세			국세대비 법인세 비중	국세증가분 대비 법인세 증가분 비중
	수입	증가분	증가율	수입	증가분	증가율		
2000	929,347	172,767	22.8%	178,784	85,130	90.9%	19.2%	49.3%
2001	957,928	28,581	3.1%	169,751	-9,033	-5.1%	17.7%	-31.6%
2002	1,039,678	81,750	8.5%	192,431	22,680	13.4%	18.5%	27.7%
2003	1,146,642	106,964	10.3%	256,327	63,895	33.2%	22.4%	59.7%
2004	1,177,957	31,315	2.7%	246,783	-9,543	-3.7%	21.0%	-30.5%
2005	1,274,657	96,700	8.2%	298,055	51,272	20.8%	23.4%	53.0%
2006	1,380,443	105,786	8.3%	293,622	-4,433	-1.5%	21.3%	-4.2%
2007	1,614,591	234,148	17.0%	354,173	60,551	20.6%	21.9%	25.9%
2008	1,673,060	58,469	3.6%	391,545	37,371	10.6%	23.4%	63.9%
2009	1,645,407	-27,653	-1.7%	352,514	-39,031	-10.0%	21.4%	141.1%
2010	1,777,184	131,777	8.0%	372,682	20,168	5.7%	21.0%	15.3%
2011	1,923,812	146,628	8.3%	448,728	76,046	20.4%	23.3%	51.9%
2012	2,030,149	106,337	5.5%	459,318	10,589	2.4%	22.6%	10.0%
2013	2,019,065	-11,084	-0.5%	438,548	-20,770	-4.5%	21.7%	187.4%
2014	2,055,198	36,133	1.8%	426,503	-12,045	-2.7%	20.8%	-33.3%
2015	2,178,851	123,653	6.0%	450,295	23,792	5.6%	20.7%	19.2%
2016	2,426,000	247,149	11.3%	521,000	70,705	15.7%	21.5%	28.6%
70년대	18,824	4,885	34.0%	1,845	501	35.5%	10.2%	7.5%
80년대	124,957	16,472	16.3%	13,004	2,615	21.1%	9.8%	14.5%
90년대	514,026	54,424	13.8%	74,587	6,257	12.7%	14.6%	2.8%
00년대	1,283,971	88,883	8.3%	273,399	25,886	16.9%	21.0%	35.4%
10년대	2,058,608	111,513	5.8%	445,296	24,069	6.1%	21.6%	39.9%

자료: 기획재정부 자료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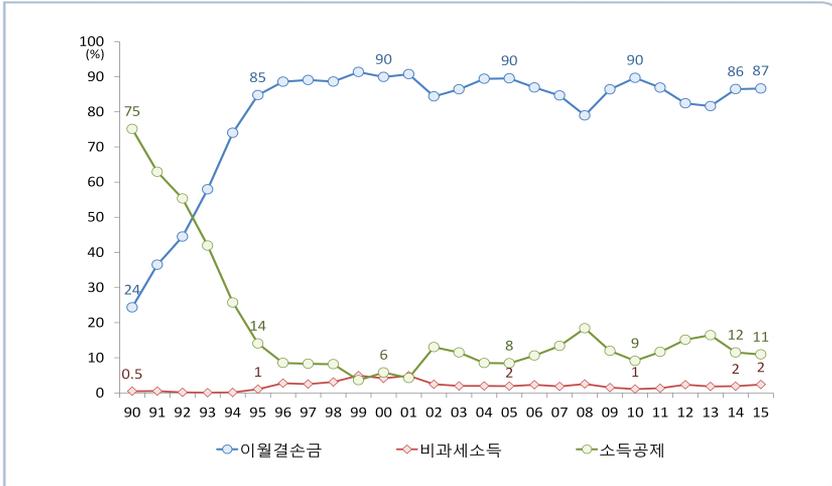
(20) 이월결손금, 비과세소득, 소득공제 금액: 1990년~2015년

1) 금액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2) 전체 대비 비중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21) 최저한세를 변화: 1991~2017년

적용연도	대기업	중소기업
1991	12%	12%
1997	12%	10%
1998	15%	12%
2004	15%	10%
2005	1,000억원 이하 13% 1,000억원 초과 15%	10%
2008	1,000억원 이하 13% 1,000억원 초과 15%	8%
2009	1,000억원 이하 11% 1,000억원 초과 14%	8%
2010	100억원 이하 10% 100~1,000억원 이하 11% 1,000억원 초과 14%	7%
2011	100억원 이하 10% 100~1,000억원 이하 11% 1,000억원 초과 14%	7% * 중소기업 졸업 후 최저한세를 단계적 인상: 졸업유예기간(4년) 후 1~3년 간 8%, 이후 2년간 9% * 업종에 관계없이 사회적기업도 7%
2012	최저한세 적용제외 대상에서 대기업 R&D비용 제외	7%
2013	100억원 이하 10% 100~1,000억원 이하 12% 1,000억원 초과 16%	7%
2014년 이후	100억원 이하 10% 100~1,000억원 이하 12% 1,000억원 초과 17%	7% * 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4년) 후 1~3년간 8%, 이후 2년간 9%

자료: 법제처 자료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22) 최저한세 적용기업

1) 적용기업 추이

(단위: 개, 억원 %)

	신고법인수			부담세액		
	전체	대기업	중소기업	전체	대기업	중소기업
2007	24,753	824	23,929	20,110	17,707	2,403
2008	24,677	695	23,982	17,702	15,400	2,303
2009	23,227	550	22,677	17,512	15,640	1,872
2010	25,716	778	24,938	19,904	17,726	2,178
2011	12,350	837	11,513	35,963	34,618	1,345
2012	9,164	507	8,657	31,433	30,457	976
2013	11,418	745	10,673	36,512	35,426	1,086
2014	11,337	760	10,577	46,799	45,710	1,089
2015	10,664	735	9,929	47,855	46,928	927
평균	17,034	715	16,319	30,421	28,846	1,575
(전체 대비 비중)	(100.0)	(4.2)	(95.8)	(100.0)	(94.8)	(5.2)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2) 최고세율 적용기업 추이: 2007~2015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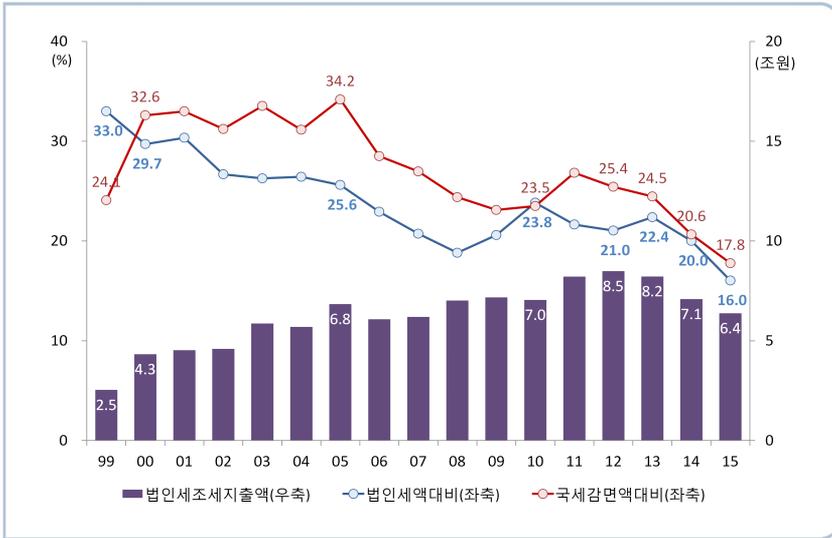
(단위: 개, 억원 %)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기업수	13	12	15	21	27	17	13	18	10
부담세액	15,700	13,509	13,853	15,493	31,756	28,477	32,985	42,822	44,520
(전체대비)	(78.1)	(76.3)	(79.1)	(77.8)	(88.3)	(90.6)	(90.3)	(91.5)	(93.0)

주: 괄호() 안은 전체 최저한세 적용기업 대비 최고세율(과표 1,000억원 초과) 적용기업 비중(%)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23) 법인세 조세지출액과 비중: 1999~2015년



자료: 대한민국정부, 「조세지출 보고서 및 예산서」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24) 기업규모별 공제감면액 추이: 2007~2015년

(단위: 억원)

연도	전체 기업			대기업			중소기업		
	전체	외국납부 세액공제	외납공제 이외	전체	외국납부 세액공제	외납공제 이외	전체	외국납부 세액공제	외납공제 이외
2007	55,879	6,884	48,995	36,922	6,657	30,265	18,956	227	18,730
2008	66,976	9,455	57,521	44,669	9,011	35,658	22,307	444	21,863
2009	71,483	10,807	60,676	49,679	10,237	39,442	21,804	571	21,234
2010	89,728	14,628	75,100	67,445	13,913	53,532	22,283	715	21,568
2011	93,315	15,960	77,354	69,964	15,118	54,846	23,351	842	22,509
2012	94,918	25,306	69,612	71,063	24,416	46,647	23,855	890	22,965
2013	93,197	26,044	67,153	71,700	25,171	46,529	21,497	873	20,624
2014	87,400	27,856	59,544	65,110	27,104	38,006	22,290	752	21,538
2015	96,219	39,467	56,752	73,149	38,837	34,312	23,070	630	22,440

주: 외국납부세액공제 등의 경우 조세지출예산서 상 조세지출항목에 포함되지 않음

자료: 국세통계연보 자료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25) 법인세 조세감면 내역

1) 분야별 조세감면

(단위: 억원)

분야	2014	2015	차이	주요항목
중소기업	8,657	8,600	-57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6,967→7,079),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1,102→1,150)
연구개발	30,152	29,472	-680	R&D비용세액공제(27,456→27,630)
국제지분거래	418	323	-95	
투자촉진	14,859	12,672	-2,187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11,089→8,732)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777→1,779)
고용지원	301	399	98	근로소득중대세제(2015년)·청년고용중 대세제(2015년) 신설
기업구조조정	15	1	-15	
금융기관 구조조정	0	0	0	
지역균형	2,228	2,113	-115	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 하는 경우 법인세 감면(1,405 →1,436)
공익사업	3,263	2,386	-878	조합법인 법인세 과세특례(2,288→1,616)
기타	10,918	7,824	-3,094	법인기부금 손금산입(6,944→4,917) 외국인투자 법인세감면(2,365→1,865)
합계	70,812	63,790	-7,022	

주: 조세특례제한법상 분류기준에 따라 조세지출 분야를 구분. 법인세 조세지출액만 집계

자료: 대한민국정부, 조세지출예산서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2) 주요 10대 조세지출항목

(단위: 억원)

구분	법령 (조특법)	내 용	감면액	
			2014	2015
1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10	연구 및 인력개발용 당해지출액의 1~3% (중소기업 25%), 직전연도 R&D 전년대비 증가 분의 30%(중소기업 50%) 중 선택 등	27,456	27,630
2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	§26	투자금액에 대해 고용유지시 3%(중소기업 4%) 기본공제, 고용창출시 2%(중소기업 3%) 추 가공제	11,089	8,732
3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7	소득세·법인세의 5~30% 세액감면	6,967	7,079
4 법인기부금 손금산입	§24	법정기부금은 소득금액의 50%내, 지정기부금 은 10%내에서 손금산입	6,944	4,917
5 외국인투자기업 세액감면	§121의2 §121의4	감면대상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7년간 (5년 100%, 2년 50%) 또는 5년간(3년 100%, 2년 50%) 세액감면	2,365	1,865
6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24	투자금액의 3%(중견기업 5%, 중소기업 7%) 세액공제	777	1,779
7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72	사업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당해 법인의 결산 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에 기부금·접대비를 합 한 금액에 대해 9~12% 저율과세	2,288	1,616
8 연구·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 세액공제	§11	연구시험용 및 직업훈련용 시설, 신기술을 기업화하기 위한 사업용 자산에 대한 투자 금액의 1~6% 세액공제(대 1%, 중견 3%, 중소 6%)	2,005	1,503
9 법인의 공장 및 본사 수도권 밖 이전시 세액감면	§63의2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과밀억제권 밖 이전 시 법인세를 7년간 100%, 3년간 50% 세액감면 등	1,405	1,436
10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	§25의2	에너지절약시설 투자금액의 1~6% 세액공제 (대기업 1%, 중견기업 3%, 중소기업 6%)	2,099	1,186

자료: 대한민국정부, 조세지출예산서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3. 부가가치세

(1) 주요국의 부가가치세 도입연도

국가명	실시연도	국가명	실시연도
핀란드	1964	터키	1985
덴마크	1967	포르투갈	1986
프랑스	1968	스페인	1986
독일	1968	뉴질랜드	1986
네덜란드	1969	그리스	1987
스웨덴	1969	헝가리	1988
룩셈부르크	1970	일본	1989
노르웨이	1970	아이슬란드	1990
벨기에	1971	캐나다	1991
아일랜드	1972	에스토니아	1992
오스트리아	1973	슬로바키아	1993
이탈리아	1973	체코	1993
영국	1973	폴란드	1993
칠레	1975	스위스	1995
이스라엘	1976	슬로베니아	1997
우리나라	1977	호주	2000
멕시코	1980	라트비아	1995

자료: OECD, Consumption Tax Trends 2016, 2016

(2) 주요국의 부가가치세 세율구조

(단위: %)

국가	표준세율/단일세율	경감세율	특정지역의 세율
호주	10.0	0.0	-
오스트리아	20.0	10.0/13.0	19.00
벨기에	21.0	0.0/6.0/12.0	-
캐나다	5.0	0.0	13.0/14.0/15.0
칠레	19.0	-	-
체코	21.0	10.0/15.0	-
덴마크	25.0	0.0	-
에스토니아	20.0	0.0/9.0	-
핀란드	24.0	0.0/10.0/14.0	-
프랑스	20.0	2.1/5.5/10.0	0.9/2.1/10.0/13.0 & 1.05/1.75/2.1/8.5
독일	19.0	7.0	-
그리스	23.0	6.0/13.0	4.0/ 9.0/16.0
헝가리	27.0	5.0/18.0	-
아이슬란드	24.0	0.0/11.0	-
아일랜드	23.0	0.0/4.8/9.0/13.5	-
이스라엘	17.0	0.0	0.0
이탈리아	22.0	4.0/5.0/10.0	-
일본	8.0	-	-
한국	10.0	0	-
라트비아	21.0	0.0/12.0	-
룩셈부르크	17.0	3.0/8.0/14.0	-
멕시코	16.0	0.0	-
네덜란드	21.0	6	-
뉴질랜드	15.0	0.0	-
노르웨이	25.0	0.0/10.0/15.0	-
폴란드	23.0	5.0/8.0	-
포르투갈	23.0	6.0/13.0	4.0/9.0/18.0&5.0/12.0/22.0
슬로바키아	20.0	10	-
슬로베니아	22.0	9.5	-
스페인	21.0	4.0/10.0	0.0/2.75/3.0/7.0/9.5/13.5/20.0 & 0.5/10.0
스웨덴	25.0	0.0/6.0/12.0	-
스위스	8.0	0.0/2.5/3.8	-
터키	18.0	1.0/8.0	-
영국	20.0	0.0/5.0	-

자료: OECD, Consumption Tax Trends 2016, 2016.



(3) 최근 5년간 국세 국세징수액 대비 부가가치세 비중: 2012~2016년

(조원, %)

	2012	2013	2014	2015	2016	평균
국세합계	203,0	201,9	205,5	217,9	242,6	210,6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부가가치세	55,7	56,6	57,1	54,2	61,8	56,2
	(27,4)	(28,0)	(27,8)	(24,9)	(25,5)	(26,7)

주: 괄호()안은 국세 대비 비중(%임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2016년 자료는 기획재정부 2017.2.10. 보도자료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마감결과)

(4) 부가가치세 신고인원: 2005~2015년

(단위: 명(개), %)

구 분	합계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	
2005	4,121,612 (100,0)	400,398 (9,7)	2,117,551 (51,4)	1,603,663 (38,9)
2010	5,239,103 (100,0)	536,232 (10,2)	2,874,770 (54,8)	1,828,101 (34,8)
2012	5,385,132 (100,0)	591,701 (11,0)	3,112,775 (57,8)	1,680,656 (31,2)
2013	5,609,470 (100,0)	621,260 (11,1)	3,209,199 (57,2)	1,779,011 (31,7)
2014	5,623,792 (100,0)	654,013 (11,6)	3,297,704 (58,7)	1,672,075 (29,7)
2015	5,837,775 (100,0)	705,581 (12,1)	3,472,032 (59,5)	1,660,162 (28,4)

주: 괄호()안은 합계 대비 비중(%임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5) 부가가치세 신고유형별 납부신고세액: 2005~2015년

(단위: 조원, %)

구분	합계	일반과세자		간이사업자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	
2005	37.4 (100.0)	29.2 (77.9)	6.2 (21.9)	0.09 (0.2)
2010	14.2 (100.0)	-1.4 (-9.4)	14.8 (104.0)	0.8 (5.4)
2012	9.4 (100.0)	-7.9 (-84.8)	16.5 (176.7)	0.8 (8.1)
2013	13.7 (100.0)	-4.1 (-29.5)	17.3 (126.0)	0.5 (3.5)
2014	19.0 (100.0)	0.5 (2.6)	18.0 (94.8)	0.5 (2.6)
2015	31.0 (100.0)	12.0 (38.7)	19.0 (61.3)	0.6 (1.9)

주: 괄호()안은 합계 대비 비중(%)임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6) 지방자치단체별 지방소비세 배분내역: 2015년**

(단위: 억원, %)

구 분	2015년 결산기준	
	지방소비세액	비 중
합계	60,027	100
서울특별시	9,778	16.8
부산광역시	4,765	8.2
대구광역시	3,369	5.8
인천광역시	2,742	4.7
광주광역시	1,985	3.4
대전광역시	2,013	3.4
울산광역시	1,677	2.9
세종특별자치시	497	0.9
경기도	10,917	18.7
강원도	2,193	3.8
충청북도	2,274	3.9
충청남도	2,997	5.1
전라북도	2,523	4.3
전라남도	2,397	4.1
경상북도	3,750	6.4
경상남도	5,113	8.8
제주특별자치도	1,038	1.8

자료: 행정자치부, 『2016 지방세통계연감』, 2016. 10.

Ⅲ. 주요 선진국 비교

1. 전체	65
2. 세목별 비교: 소득세	75
3. 세목별 비교: 법인세	84
4. 세목별 비교: 부가가치세	91

Ⅲ. 주요 선진국 비교

1. 전체

(1) OECD 국가의 국민부담률: 2009~2014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호 주	25.8	25.6	26.3	27.4	27.6	27.8
오스트리아	41.0	40.8	41.0	41.7	42.5	42.8
벨기에	42.4	42.6	43.1	44.2	45.0	45.0
캐나다	32.0	30.6	30.5	31.0	31.0	31.2
칠레	17.4	19.7	21.2	21.5	20.0	19.8
체코	32.4	32.5	33.3	33.7	34.1	33.1
덴마크	45.2	45.1	45.1	45.8	46.8	49.6
에스토니아	34.9	33.2	31.5	31.5	31.5	32.4
핀란드	40.9	40.8	42.0	42.7	43.6	43.8
프랑스	41.3	41.6	43.2	44.3	45.2	45.5
독일	36.1	35.0	35.7	36.3	36.4	36.6
그리스	29.6	32.0	32.5	35.5	35.6	35.8
헝가리	39.0	37.3	36.9	38.5	38.2	38.2
아이슬란드	32.0	33.3	34.5	35.3	35.9	38.9
아일랜드	27.6	27.5	26.7	27.3	29.0	28.7
이스라엘	29.8	30.4	30.9	29.6	30.6	31.2
이탈리아	41.9	41.8	41.4	42.7	43.9	43.7
일본	27.0	27.6	28.6	29.5	30.3	32.0
우리나라	23.8	23.4	24.2	24.8	24.3	24.6
라트비아	27.9	28.1	27.8	28.5	28.5	28.9
룩셈부르크	38.9	38.0	37.9	38.8	38.1	38.4
멕시코	17.2	18.5	19.5	19.6	19.7	15.2
네덜란드	35.4	36.2	35.9	36.3	36.7	37.5
뉴질랜드	30.5	30.6	31.4	32.4	31.4	32.5
노르웨이	41.2	41.9	42.7	42.3	40.5	38.7
폴란드	31.3	31.4	31.8	32.1	31.9	32.1
포르투갈	29.5	30.6	32.5	31.2	34.5	34.2
슬로바키아	28.4	27.7	28.3	28.1	30.4	31.2
슬로베니아	36.2	36.7	36.3	36.5	36.8	36.5
스페인	29.8	31.4	31.2	32.1	32.7	33.8
스웨덴	44.1	43.1	42.3	42.3	42.8	42.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스 위 스	27.1	26.5	27.0	26.9	26.9	27.0
터 키	24.6	26.2	27.8	27.6	29.3	28.8
영 국	32.3	32.8	33.6	33.0	32.9	32.1
미 국	23.3	23.7	23.6	24.4	25.4	25.9
OECD 평균	32.4	32.6	33.0	33.4	33.8	34.2

자료: OECD, Revenue Statistics(<http://stats.oecd.org/>)

색인: “조세의 이해와 쟁점 ①: 조세개요”

(2) OECD 국가의 조세부담률: 2009~2014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호 주	25.8	25.6	26.3	27.4	27.6	27.8
오 스트 리 아	26.7	26.8	26.9	27.5	28.0	28.2
벨 기 에	28.0	28.7	29.2	30.0	30.7	30.8
캐 나 다	26.6	25.9	26.0	26.3	26.3	26.5
칠 레	15.8	18.2	19.9	20.1	18.5	18.3
체 코	18.1	18.0	18.7	19.0	19.4	18.6
덴 마 크	45.4	45.5	45.0	45.7	46.7	49.5
에 스토 니 아	22.1	20.5	20.1	20.4	20.6	21.5
핀 란 드	28.8	28.7	30.0	30.1	31.0	31.2
프 랑 스	25.1	25.5	26.6	27.5	28.5	28.5
독 일	22.2	21.3	21.9	22.5	22.6	22.6
그 리 스	19.4	20.1	21.8	22.9	24.8	25.5
형 가 리	26.8	25.8	24.0	25.8	25.7	25.7
아 이 슬 란 드	29.1	29.4	30.5	31.7	32.2	35.2
아 일 랜 드	22.5	22.5	22.2	23.1	23.9	23.7
이 스 라 엘	24.7	25.3	25.6	24.6	25.5	26.1
이 탈 리 아	28.7	28.5	28.5	29.8	30.8	30.7
일 본	15.9	16.2	16.8	17.2	17.9	19.3
우 리 나 라	18.2	17.9	18.4	18.7	17.9	18.0
라 트 비 아	18.6	-	19.1	19.8	20.0	20.5
룩셈부르크	27.3	27.0	26.5	27.2	27.3	27.3
멕시코	14.3	15.7	16.7	16.7	16.6	12.0
네덜란드	22.6	23.0	22.1	21.4	21.7	22.7
뉴질랜드	31.0	31.0	31.4	33.0	31.4	32.5
노르웨이	32.1	33.1	33.2	32.7	31.0	28.8
폴란드	20.1	20.3	20.5	20.0	19.6	19.9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포르투갈	20,8	21,3	22,9	22,4	25,6	25,2
슬로바키아	16,1	15,7	16,3	15,7	17,1	17,9
슬로베니아	21,6	21,9	21,6	21,6	22,0	22,1
스페인	18,1	19,7	19,5	20,6	21,4	22,2
스웨덴	33,2	32,3	32,6	32,4	32,9	32,9
스위스	20,6	20,2	20,4	20,2	20,1	20,3
터키	18,6	19,7	20,1	20,1	21,2	20,6
영국	26,0	26,6	27,3	26,7	26,7	26,0
미국	17,0	17,6	18,5	18,9	19,3	19,7
OECD 평균	23,6	-	24,1	24,5	24,7	25,1

자료: OECD, Revenue Statistics(<http://stats.oecd.org/>)

색인: “조세의 이해와 쟁점 ①: 조세개요”



(3) 우리나라와 OECD 평균 국민부담률 비교: 1975~2015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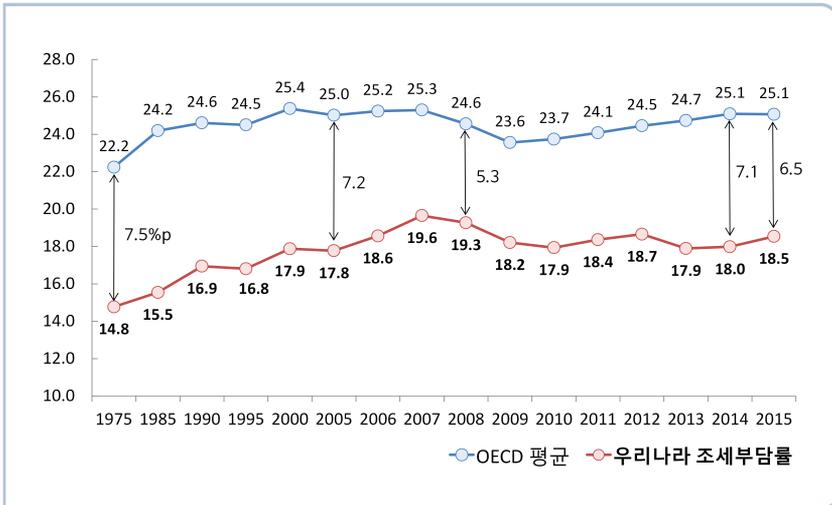
(단위: %)



자료: OECD, Revenue Statistics 자료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4) 우리나라와 OECD 평균 조세부담률 비교: 1975~2015년

(단위: %)



자료: OECD, Revenue Statistics 자료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5) GDP 대비 조세수입 비중(OECD, 세목별): 1975년

(단위 %)

	소득세			사회 보험료	급여세	재산세	소비세	기타	EU 관세	합계
	개인	법인								
호 주	14.2	11.1	3.1	0	1.5	2.2	7.4	0.0	-	25.4
오스트리아	9.5	7.9	1.6	10	2.9	1.1	12.6	0.2	-	36.4
벨 기 에	15.3	12.7	2.7	11.7	0.0	1.2	10.5	0.0	-	38.8
캐 나 다	14.8	10.3	4.3	3.2	0.0	3	10.1	0.4	-	31.4
칠 레	n/a	n/a	n/a	n/a	n/a	n/a	n/a	n/a	-	n/a
체 코	n/a	n/a	n/a	n/a	n/a	n/a	n/a	n/a	-	n/a
덴 마 크	22.3	21.1	1.2	0.2	0.0	2.3	12.9	0.0	-	37.8
에스토니아	n/a	n/a	n/a	n/a	n/a	n/a	n/a	n/a	-	n/a
핀 란 드	15.6	13.9	1.7	7.4	0.8	0.7	11.5	0.1	-	36.1
프 랑 스	5.5	3.7	1.8	14.2	0.7	1.8	11.6	1.1	-	34.9
독 일	11.8	10.3	1.5	11.7	0.3	1.3	9.2	0.0	-	34.3
그 리 스	2.5	1.7	0.6	5.5	0.1	1.8	8.7	0.0	-	18.6
헝 가 리	n/a	n/a	n/a	n/a	n/a	n/a	n/a	n/a,0	-	n/a
아이슬랜드	6.7	5.9	0.8	0.8	1.2	1.5	18.4	0.6	-	29.2
아일랜드	8.4	7.0	1.3	3.8	0.0	2.7	13	0.0	-	27.9
이스라엘	n/a	n/a	n/a	n/a	n/a	n/a	n/a	n/a	-	n/a
이탈리아	5.3	3.7	1.5	11.2	0.0	0.8	7.2	0.0	-	24.5
일 본	9.1	4.9	4.2	5.9	0.0	1.9	3.5	0.0	-	20.4
우리나라	3.4	1.2	1.3	0.1	0.0	1.4	8.7	0.6	-	14.2
룩셈부르크	13.4	8.6	4.9	9.2	0.3	1.6	6.6	0.0	-	31.2
멕시코	n/a	n/a	n/a	n/a	n/a	n/a	n/a	n/a	-	n/a
네덜란드	13.3	10.4	3.0	14.7	0.0	0.9	9.3	0.1	-	38.4
뉴질랜드	18.7	15.2	3.3	0	0.0	2.6	6.8	0.0	-	28.0
노르웨이	13.5	12.4	1.1	9.7	0.0	0.9	14.8	0.3	-	39.2
폴 란 드	n/a	n/a	n/a	n/a	n/a	n/a	n/a	n/a	-	n/a
포르투갈	3.3	n/a	n/a	6.5	0.5	0.5	8.0	0.1	-	18.9
슬로바키아	n/a	n/a	n/a	n/a	n/a	n/a	n/a	n/a	-	n/a
슬로베니아	n/a	n/a	n/a	n/a	n/a	n/a	n/a	n/a	-	n/a
스 페 인	4.0	2.6	1.2	8.5	0.0	1.1	4.3	0.0	-	18.0
스 웨 덴	19.6	17.9	1.7	7.6	1.7	0.4	9.5	0.1	-	38.9
스 위 스	10.7	8.8	1.9	5.0	0.0	1.8	5.0	0.0	-	22.5
터 키	5.0	3.9	0.6	1.1	0.0	0.8	4.9	0.0	-	11.9
영 국	15.0	13.4	2.1	5.9	0.0	4.3	8.4	0.0	-	33.6
미 국	11.3	8.5	2.8	5.0	0.0	3.4	4.8	0.0	-	24.6
OECD평균	10.9	9.0	2.1	6.4	0.4	1.7	9.1	0.1	-	28.6

주: 2015년에 OECD 회원국이 된 라트비아 제외

자료: OECD Tax Database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6) GDP 대비 조세수입 비중(OECD, 세목별): 2000년

(단위: %)

	소득세			사회 보험료	급여세	재산세	소비세	기타	EU 관세	합계
	개인	법인								
호 주	17.7	11.5	6.2	0.0	1.4	2.7	8.7	0.0	-	30.4
오스트리아	12.0	9.3	2.0	14.4	2.7	0.6	12.1	0.3	0.2	42.1
벨 기 에	16.8	13.7	3.1	13.4	0.0	2.0	10.9	0.0	0.4	43.5
캐 나 다	17.4	12.8	4.2	4.7	0.7	3.3	8.4	0.2	-	34.8
칠 레	4.4	1.4	2.1	1.4	0.0	1.3	12.0	-0.3	-	18.8
체 코	7.4	4.2	3.2	14.4	0.0	0.5	10.2	0.0	-	32.5
덴 마 크	28.8	24.7	3.2	0.6	0.2	1.6	15.5	0.0	0.2	46.9
에스토니아	7.7	6.8	0.9	10.9	0.0	0.4	12.1	0.0	-	31.1
핀 란 드	19.7	14.0	5.7	11.6	0.0	1.1	13.3	0.0	0.1	45.8
프 랑 스	10.7	7.8	3.0	15.5	1.0	2.9	11.1	1.6	0.1	43.1
독 일	10.9	9.2	1.8	14.1	0.0	0.8	10.2	0.0	0.2	36.2
그 리 스	9.0	4.8	4.0	10.1	0.0	2.0	12.1	0.0	0.1	33.4
헝 가 리	9.4	7.2	2.2	11.3	1.4	0.7	15.6	0.2	-	38.6
아이슬랜드	14.5	12.6	1.2	2.8	0.0	2.8	16.0	0.1	-	36.3
아일랜드	13.4	9.8	3.6	3.6	0.0	1.8	11.7	0.0	0.2	30.8
이스라엘	13.8	10.1	3.3	5.1	1.3	3.1	11.6	0.0	-	34.8
이탈리아	13.5	10.1	2.8	11.6	0.0	1.9	11.3	2.2	0.1	40.6
일 본	9.3	5.6	3.7	9.4	0.0	2.8	5.1	0.1	-	26.6
우리나라	6.2	3.1	3.0	3.6	0.0	2.7	8.2	0.8	-	21.5
라트비아	7.0	5.5	1.5	9.8	0.0	1.1	11.2	0.0	-	29.1
룩셈부르크	13.6	6.9	6.7	9.7	0.0	4.0	9.8	0.1	0.1	37.2
멕시코	4.5	n/a	n/a	2.7	0.2	0.2	5.8	0.1	-	13.6
네덜란드	9.7	5.6	4.0	14.4	0.0	2.0	10.7	0.2	0.3	37.2
뉴질랜드	19.5	14.0	4.0	0.0	0.0	1.7	11.3	0.0	-	32.5
노르웨이	18.8	10.1	8.8	8.8	0.0	1.0	13.3	0.0	-	41.9
폴 란 드	6.7	4.3	2.4	12.9	0.2	1.4	11.6	0.0	-	32.9
포르투갈	9.1	5.4	3.7	7.9	0.0	1.1	12.5	0.2	0.2	31.1
슬로바키아	6.9	3.3	2.6	14.0	0.0	0.6	12.2	0.0	-	33.6
슬로베니아	6.8	5.5	1.1	13.9	1.5	0.6	13.8	0.0	-	36.6
스 페 인	9.5	6.4	3.0	11.6	0.0	2.1	9.8	0.2	0.2	33.4
스 웨 덴	20.0	16.3	3.7	12.9	2.1	1.7	12.1	0.1	0.1	49.0
스 위 스	12.2	8.2	3.8	6.7	0.0	2.5	6.1	0.0	-	27.4
터 키	7.1	5.4	1.8	4.5	0.0	0.8	10.1	1.6	-	24.2
영 국	12.8	9.6	3.2	5.6	0.0	3.8	10.5	0.0	0.2	32.8
미 국	14.1	11.9	2.2	6.6	0.0	2.9	4.6	0.0	-	28.2
OECD평균	12.0	8.7	3.3	8.6	0.4	1.8	10.9	0.2	0.2	34.0

자료: OECD Tax Database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7) GDP 대비 조세수입 비중(OECD, 세목별): 2014년

(단위: %)

	소득세			사회 보험료	급여세	재산세	소비세	기타	EU 관세	합계
	개인	법인								
호 주	16.1	11.4	4.7	0.0	1.4	2.8	7.5	0.0	-	27.8
오스트리아	12.6	10.1	2.1	14.7	3.0	0.6	11.7	0.2	0.1	42.8
벨 기 에	16.1	12.9	3.2	14.2	0.0	3.6	10.8	0.0	0.3	45.0
캐 나 다	15.0	11.3	3.3	4.7	0.6	3.7	7.2	0.0	-	31.2
칠 레	6.5	1.4	4.2	1.4	0.0	0.8	10.9	0.0	-	19.8
체 코	7.1	3.6	3.5	14.5	0.0	0.4	10.9	0.0	0.2	33.1
덴 마 크	32.2	26.8	2.6	0.1	0.3	1.9	15.0	0.0	0.2	49.6
에스토니아	7.4	5.7	1.7	10.9	0.0	0.3	13.7	0.0	0.2	32.4
핀 란 드	15.3	13.4	1.9	12.7	0.0	1.3	14.4	0.0	0.1	43.8
프 랑 스	10.8	8.5	2.3	17.0	1.6	3.9	11.0	1.1	0.1	45.5
독 일	11.4	9.6	1.7	13.9	0.0	1.0	10.1	0.0	0.2	36.6
그 리 스	8.5	5.9	1.9	10.3	0.0	1.4	15.5	0.0	0.1	35.8
헝 가 리	6.8	5.3	1.5	12.5	0.6	1.3	16.8	0.2	0.1	38.2
아이슬랜드	18.1	13.6	3.4	3.7	0.4	2.5	12.1	2.2	-	38.9
아일랜드	11.6	9.2	2.4	5.0	0.2	2.2	9.7	0.0	0.1	28.7
이스라엘	9.7	5.8	3.2	5.1	1.2	3.0	12.3	0.0	-	31.2
이탈리아	14.0	11.3	2.2	13.0	0.0	2.9	11.8	1.9	0.1	43.7
일 본	10.2	6.1	4.1	12.7	0.0	2.7	6.3	0.1	-	32.0
우리나라	7.2	4.0	3.2	6.6	0.1	2.7	7.4	0.7	-	24.6
라트비아	7.5	5.9	1.5	8.4	0.0	1.0	11.8	0.0	0.2	28.9
룩셈부르크	13.3	8.9	4.4	11.0	0.0	3.0	11.0	0.0	0.0	38.4
멕 시 코	5.7	3.0	2.6	3.1	0.4	0.3	5.4	0.2	-	15.2
네덜란드	9.6	7.0	2.6	14.9	0.0	1.4	11.1	0.2	0.3	37.5
뉴질랜드	18.0	12.6	4.3	0.0	0.0	2.0	12.5	0.0	-	32.5
노르웨이	16.4	9.8	6.6	9.9	0.0	1.2	11.1	0.0	-	38.7
폴 란 드	6.3	4.6	1.7	12.2	0.2	1.4	11.6	0.2	0.1	32.1
포르투갈	10.5	7.7	2.8	9.0	0.0	1.2	13.0	0.3	0.1	34.2
슬로바키아	6.5	3.0	3.3	13.4	0.0	0.4	10.7	0.0	0.2	31.2
슬로베니아	6.5	5.1	1.4	14.4	0.1	0.6	14.7	0.0	0.1	36.5
스 페 인	9.7	7.6	2.1	11.6	0.0	2.4	9.6	0.3	0.1	33.8
스 웨 덴	14.9	12.2	2.7	9.9	4.5	1.1	12.1	0.0	0.1	42.8
스 위 스	12.3	8.4	2.8	6.7	0.0	1.8	6.1	0.1	-	27.0
터 키	6.1	4.2	1.8	8.2	0.0	1.4	12.7	0.4	-	28.8
영 국	11.2	8.8	2.4	6.0	0.0	4.1	10.7	0.0	0.2	32.1
미 국	12.3	10.2	2.2	6.2	0.0	2.8	4.5	0.0	-	25.9
OECD평균	11.5	8.4	2.8	9.1	0.4	1.9	11.0	0.2	0.1	34.2

자료: OECD Tax Database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8) GDP 대비 조세수입 비중(OECD, 세목별): 2015년

(단위: %)

	소득세			사회 보험료	급여세	재산세	소비세	기타	EU 관세	합계
	개인	법인	n/a							
호 주	n/a	n/a	n/a							
오스트리아	13.2	10.6	2.3	14.8	3.0	0.6	11.7	0.2	0.1	43.5
벨 기 에	16.0	12.6	3.4	14.3	0.0	3.5	10.7	0.0	0.3	44.8
캐 나 다	15.2	11.8	3.1	4.9	0.6	3.8	7.4	0.0	-	31.9
칠 레	7.5	1.5	4.9	1.4	0.0	0.9	11.2	-0.3	-	20.7
체 코	7.2	3.6	3.6	14.5	0.0	0.4	11.3	0.0	0.2	33.5
덴 마 크	29.2	25.4	2.6	0.1	0.3	2.0	15.0	0.0	0.2	46.6
에스토니아	7.9	5.8	2.1	11.2	0.0	0.3	14.1	0.0	0.2	33.6
핀 란 드	15.5	13.3	2.2	12.7	0.0	1.4	14.2	0.0	0.1	44.0
프 랑 스	10.7	8.6	2.1	16.9	1.6	4.1	11.1	1.1	0.1	45.5
독 일	11.6	9.9	1.7	14.0	0.0	1.1	10.1	0.0	0.2	36.9
그 리 스	8.7	n/a	n/a	10.7	0.0	2.0	15.5	0.0	0.0	36.8
헝 가 리	6.9	5.0	1.9	13.1	0.6	1.3	17.2	0.2	0.1	39.4
아이슬랜드	17.5	13.3	2.9	3.6	0.3	2.0	11.8	1.9	-	37.1
아일랜드	10.2	7.5	2.7	3.9	0.1	1.5	7.7	0.0	0.1	23.6
이스라엘	9.9	6.1	3.0	5.2	1.2	3.1	12.0	0.0	-	31.4
이탈리아	13.9	11.3	2.1	13.1	0.0	2.8	11.7	1.7	0.1	43.3
일 본	10.4	6.1	4.3	n/a	0.0	2.6	6.8	0.1	-	n/a
우리나라	7.6	4.4	3.2	6.7	0.1	3.1	7.1	0.6	-	25.3
라트비아	7.5	5.9	1.6	8.3	0.0	1.0	12.0	0.0	0.2	29.0
룩셈부르크	13.4	9.0	4.4	10.7	0.0	3.3	9.5	0.0	0.0	37.0
멕시코	6.8	3.4	3.3	3.3	n/a	n/a	n/a	n/a	-	17.4
네덜란드	10.5	7.7	2.7	14.2	0.0	1.4	11.2	0.1	0.4	37.8
뉴질랜드	18.1	12.5	4.4	0.0	0.0	2.0	12.6	0.0	-	32.8
노르웨이	15.0	10.4	4.5	10.4	0.0	1.1	11.6	0.0	-	38.1
폴 란 드	n/a	n/a	n/a							
포르투갈	10.5	7.3	3.2	9.0	0.0	1.3	13.3	0.3	0.1	34.5
슬로바키아	6.9	3.2	3.5	13.8	0.0	0.4	11.0	0.0	0.2	32.3
슬로베니아	6.6	5.1	1.5	14.5	0.1	0.6	14.6	0.0	0.1	36.6
스 페 인	9.7	7.2	2.4	11.4	0.0	2.4	9.9	0.3	0.2	33.8
스 웨 덴	15.5	12.5	3.0	9.8	4.6	1.1	12.3	0.0	0.2	43.3
스 위 스	13.0	8.7	3.0	6.9	0.0	1.9	6.1	0.1	-	27.9
터 키	6.1	4.4	1.7	8.7	0.0	1.5	13.3	0.4	-	30.0
영 국	11.5	9.1	2.5	6.1	0.0	4.1	10.7	0.0	0.2	32.5
미 국	12.9	10.7	2.2	6.2	0.0	2.7	4.4	0.0	-	26.4
OECD평균	11.6	8.6	2.9	9.2	0.4	1.9	11.2	0.2	0.1	34.3

자료: OECD Tax Database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9) 한국과 OECD의 조세구조 비교(총 조세 대비 비중)

(단위: %)

	1995		2005		2013		2014	
	한국	OECD 평균	한국	OECD 평균	한국	OECD 평균	한국	OECD 평균
개인소득세 ¹⁾	18	26	13	24	15	25	16	24
법인소득세	12	8	16	10	14	9	13	9
사회보험료	12	25	21	25	26	26	27	26
급여세	0	1	0	1	0	1	0	1
재산세	14	5	12	6	10	6	11	6
소비세	41	32	34	31	29	31	28	31
- 일반소비세 ²⁾	18	19	17	20	17	20	17	21
- 특별소비세	23	13	17	11	12	11	11	10
기타	3	3	3	3	5	3	5	4
합계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주: 1) OECD 기준으로 개인소득세와 법인소득세로 분류하기 어려운 1995년의 농특세는 금액이 상대적으로 작아 개인소득세로 포함

2) 우리나라의 경우 일반소비세는 부가가치세(VAT)만 존재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017 경제·재정수첩」, 2017(원자료: OECD, Revenue Statistics)

색인: “조세의 이해와 쟁점 ①: 조세개요”



(10) OECD 국가의 지하경제 규모: 2000~2010년

(단위: %)

	2000	2002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순위)	평균
호 주	14.3	14.1	13.7	13.7	13.7	13.7	13.2	13.5	13.4	(8)	13.8
오스트리아	9.8	9.8	9.8	9.8	9.6	9.7	9.5	9.7	10.6	(4)	9.8
벨기에	22.2	22.0	21.8	21.8	21.4	20.8	20.3	20.5	20.7	(22)	21.5
캐나다	16.0	15.8	15.6	15.5	15.3	15.2	14.9	15.5	15.4	(13)	15.6
칠레	19.8	19.6	19.1	18.9	18.7	18.4	19.1	20.5	19.8	(21)	19.4
체코	19.1	18.8	18.4	17.8	17.3	16.3	15.2	15.7	15.5	(14)	17.6
덴마크	18.0	18.0	17.8	17.6	17.0	16.5	15.3	16.2	16.2	(16)	17.3
에스토니아	25.6	24.9	24.0	23.4	22.7	22.5	20.8	24.3	22.5	(24)	21.7
핀란드	18.1	17.8	17.6	17.4	17.1	16.6	16.4	16.7	16.8	(18)	17.4
프랑스	15.2	15.1	14.9	14.8	14.8	14.5	14.0	14.5	14.6	(11)	14.8
독일	16.0	16.1	16.1	16.0	15.6	15.3	14.8	14.6	15.1	(12)	15.7
그리스	28.7	28.0	27.1	26.9	26.4	26.5	26.0	25.3	25.1	(30)	27.0
헝가리	25.1	24.5	24.1	24.0	23.7	23.7	23.1	23.1	23.1	(25)	24.1
아이슬란드	15.9	16.0	15.5	15.1	15.0	14.4	13.8	14.7	14.4	(10)	15.2
아일랜드	15.9	15.9	15.8	15.6	15.5	15.9	15.9	17.5	16.5	(17)	16.1
이탈리아	27.1	26.8	27.0	27.1	26.9	26.8	26.7	26.5	26.7	(31)	26.9
일본	11.2	11.3	10.9	10.7	10.4	10.3	11.0	11.0	11.0	(5)	11.0
우리나라	27.5	26.9	26.5	26.3	25.9	25.8	25.6	24.5	24.7	(29)	26.3
룩셈부르크	9.8	9.8	9.8	9.7	9.6	9.3	9.1	9.3	9.6	(3)	9.6
멕시코	30.1	30.4	30.1	29.9	29.2	28.8	30.0	30.0	30.0	(33)	30.0
네덜란드	13.1	13.2	13.2	13.2	13.2	13.1	12.7	12.9	13.6	(9)	13.2
뉴질랜드	12.8	12.4	12.0	12.1	12.1	12.0	11.8	12.0	12.0	(7)	12.2
노르웨이	19.1	19.0	18.5	18.5	18.2	18.1	17.7	18.6	18.2	(20)	18.6
폴란드	27.6	27.7	27.3	26.9	26.4	25.4	24.7	24.6	23.8	(28)	26.4
포르투갈	22.7	22.7	23.1	23.3	23.2	22.5	21.9	22.0	22.2	(23)	22.7
슬로바키아	18.9	18.6	18.1	17.6	17.2	16.6	16.0	15.8	15.8	(15)	17.5
슬로베니아	27.1	26.6	26.2	25.8	25.3	25.3	24.6	23.5	23.7	(27)	25.7
스페인	22.7	22.4	22.5	22.4	22.4	22.3	22.9	24.5	23.5	(26)	22.8
스웨덴	19.2	19.0	18.5	18.6	18.2	18.0	17.7	17.9	18.1	(19)	18.6
스위스	8.6	8.6	8.6	8.5	8.3	8.0	7.2	7.8	8.0	(1)	8.3
터키	32.1	32.4	31.0	30.0	29.5	28.0	28.6	29.4	29.0	(32)	30.6
영국	12.7	12.6	12.4	12.4	12.3	12.4	12.1	12.9	12.0	(7)	12.5
미국	8.7	8.8	8.6	8.5	8.4	8.6	8.6	9.3	9.1	(2)	8.7
OECD평균	20.7	20.5	20.1	19.9	19.6	19.3	19.2	18.3	18.3		20.3

주: 괄호()안 OECD 34개 중 2010년 기준 순위로, 지하경제 규모가 작을수록 순위가 높음

자료: Buehn & Schneider(2013)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2. 세목별 비교: 소득세

(1) GDP 대비 소득세 비중(OECD): 1970~2015년

(단위: %)

	1970	1980	1990	2000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호 주	7.9	11.5	12.1	11.5	9.8	10.3	10.7	10.7	11.4	-
오스트리아	7.0	9.0	8.3	9.3	9.2	9.2	9.6	9.8	10.1	10.6
벨기에	8.3	14.7	13.2	13.7	12.0	12.2	12.3	12.9	12.9	12.6
캐나다	9.8	10.4	14.4	12.8	10.7	11.0	11.3	11.2	11.3	11.8
칠레	-	-	0.9	1.4	1.3	1.4	1.5	1.4	1.4	1.5
체코	-	-	-	4.2	3.3	3.5	3.6	3.7	3.6	3.6
덴마크	18.3	21.6	24.0	24.7	23.4	23.4	23.4	25.5	26.8	25.4
에스토니아	-	-	-	6.8	5.3	5.1	5.2	5.4	5.7	5.8
핀란드	12.2	12.6	14.9	14.0	12.1	12.3	12.5	12.8	13.4	13.3
프랑스	3.6	4.6	4.4	7.8	7.2	7.4	8.0	8.4	8.5	8.6
독일	8.4	10.8	9.6	9.2	8.5	8.8	9.3	9.5	9.6	9.9
그리스	1.9	3.1	3.6	4.8	4.0	4.8	7.0	6.0	5.9	-
헝가리	-	-	-	7.2	6.5	5.1	5.7	5.4	5.3	5.0
아이슬랜드	5.3	6.7	8.1	12.6	12.2	13.0	13.2	13.8	13.6	13.3
아일랜드	5.0	9.6	10.7	9.8	8.1	8.4	8.9	9.0	9.2	7.5
이스라엘	-	-	-	10.1	5.5	5.5	5.3	5.5	5.8	6.1
이탈리아	2.7	6.6	9.6	10.1	11.2	11.0	11.6	11.6	11.3	11.3
일본	4.1	6.0	7.9	5.6	5.1	5.3	5.5	5.8	6.1	6.1
우리나라	-	1.9	3.8	3.1	3.3	3.5	3.7	3.7	4.0	4.4
라트비아	-	-	-	5.5	6.2	5.6	5.8	5.8	5.9	5.9
룩셈부르크	5.4	9.2	8.1	6.9	8.0	8.4	8.5	8.7	8.9	9.0
멕시코	-	-	-	-	2.4	2.4	2.5	2.6	3.0	3.4
네덜란드	8.9	10.6	9.9	5.6	7.8	7.4	7.0	6.9	7.0	7.7
뉴질랜드	11.0	18.3	17.4	14.0	11.4	11.3	12.1	11.9	12.6	12.5
노르웨이	12.1	11.9	10.5	10.1	9.9	9.7	9.7	9.9	9.8	10.4
폴란드	-	-	-	4.3	4.4	4.3	4.5	4.5	4.6	-
포르투갈	-	-	4.2	5.4	5.4	6.0	5.8	7.7	7.7	7.3
슬로바키아	-	-	-	3.3	2.7	2.8	2.9	2.9	3.0	3.2
슬로베니아	-	-	-	5.5	5.6	5.6	5.7	5.2	5.1	5.1
스페인	1.8	4.5	6.9	6.4	6.9	7.2	7.4	7.5	7.6	7.2
스웨덴	17.8	18.0	19.1	16.3	12.0	11.7	11.9	12.2	12.2	12.5
스위스	6.5	9.1	7.7	8.2	8.4	8.4	8.5	8.4	8.4	8.7
터키	2.5	5.8	4.0	5.4	3.7	3.8	4.0	4.1	4.2	4.4
영국	11.0	9.8	9.7	9.6	9.3	9.4	9.0	9.0	8.8	9.1
미국	9.4	10.0	9.8	11.9	8.2	9.3	9.3	9.9	10.2	10.7
OECD평균	7.9	9.8	9.7	8.7	7.7	7.8	8.1	8.3	8.4	-

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소득세 모두 포함

자료: OECD Tax Database 자료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정리



(2) 총세수 대비 소득세 비중(OECD): 1970~2015년

(단위: %)

	1970	1980	1990	2000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호 주	37.3	44.0	43.0	37.8	38.4	39.3	39.1	39.0	41.0	-
오스트리아	20.7	23.2	21.0	22.2	22.5	22.5	22.9	22.9	23.6	24.3
벨기에	25.1	36.4	32.0	31.4	28.2	28.2	27.8	28.5	28.6	28.1
캐나다	32.4	34.1	40.8	36.8	35.0	36.1	36.4	36.2	36.3	36.8
칠레	-	-	5.6	7.6	6.8	6.6	6.8	7.2	7.3	7.1
체코	-	-	-	12.9	10.2	10.6	10.6	10.7	10.8	10.8
덴마크	49.1	52.3	54.0	52.7	51.9	51.7	51.1	54.5	54.0	54.5
에스토니아	-	-	-	22.0	15.9	16.1	16.4	17.2	17.5	17.2
핀란드	39.2	35.7	34.7	30.6	29.5	29.2	29.3	29.3	30.6	30.2
프랑스	10.7	11.6	10.7	18.0	17.1	17.2	18.1	18.6	18.7	18.9
독일	26.7	29.6	27.6	25.3	24.3	24.7	25.7	26.1	26.3	26.7
그리스	9.7	14.9	14.1	14.5	12.3	14.1	19.6	16.8	16.4	-
헝가리	-	-	-	18.6	17.4	13.9	14.7	14.0	13.9	12.7
아이슬랜드	19.9	23.1	26.9	34.8	36.5	37.6	37.4	38.3	34.9	35.9
아일랜드	18.3	32.0	33.1	31.9	30.0	31.1	32.4	31.9	32.0	31.8
이스라엘	-	-	-	29.1	18.0	18.0	18.0	17.8	18.6	19.6
이탈리아	10.9	23.1	26.3	24.8	26.8	26.3	26.4	26.4	25.9	26.2
일본	21.5	24.3	27.8	21.1	18.6	18.4	18.6	19.2	18.9	-
우리나라	-	11.5	20.0	14.6	14.2	14.7	15.0	15.3	16.3	17.4
라트비아	-	-	-	18.8	22.2	20.2	20.2	20.3	20.5	20.4
룩셈부르크	23.9	27.0	24.1	18.5	21.0	22.2	21.9	22.9	23.2	24.5
멕시코	-	-	-	-	16.7	17.3	18.3	18.1	19.7	-
네덜란드	26.8	26.3	24.7	15.1	21.5	20.8	19.4	18.8	18.7	20.5
뉴질랜드	44.0	61.6	48.0	43.1	37.7	37.0	37.7	38.0	38.6	38.2
노르웨이	35.2	28.5	26.2	24.1	23.6	23.1	23.4	24.8	25.4	27.4
폴란드	-	-	-	13.2	14.0	13.7	14.0	14.1	14.3	-
포르투갈	-	-	15.9	17.4	17.6	18.4	18.3	22.6	22.5	21.2
슬로바키아	-	-	-	9.9	9.5	9.9	10.3	9.6	9.6	9.8
슬로베니아	-	-	-	15.0	15.1	15.3	15.4	14.0	14.0	14.1
스페인	11.5	20.4	21.7	19.1	21.9	22.8	22.9	22.5	22.3	21.3
스웨덴	49.8	41.0	38.5	33.2	27.9	27.5	28.0	28.4	28.6	28.8
스위스	35.7	38.9	32.8	29.8	31.9	31.0	31.6	31.2	31.0	31.1
터키	27.0	43.5	26.8	22.2	14.0	13.5	14.4	13.9	14.7	14.6
영국	31.5	29.4	29.4	29.3	28.7	28.1	27.5	27.7	27.4	27.9
미국	36.6	39.1	37.7	42.2	34.8	38.8	38.5	38.7	39.3	40.8
OECD평균	28.0	31.3	28.6	24.6	23.2	23.3	23.7	23.9	24.0	-

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소득세 모두 포함
 자료: OECD Tax Database

(3) 중앙정부기준 소득세 명목최고세율(OECD): 1981~2016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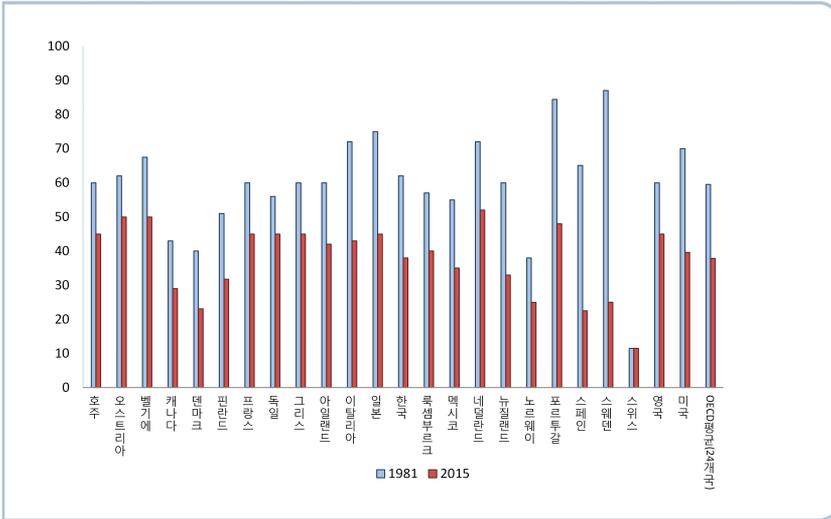
	1981	1990	2000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호 주	60.0	47.0	47.0	45.0	45.0	45.0	45.0	45.0	45.0	45.0	45.0	45.0
오스트리아	62.0	50.0	50.0	50.0	50.0	50.0	50.0	50.0	50.0	50.0	50.0	55.0
벨기에	67.5	55.0	55.0	50.0	50.0	50.0	50.0	50.0	50.0	50.0	50.0	50.0
캐나다	43.0	29.0	29.0	29.0	29.0	29.0	29.0	29.0	29.0	29.0	29.0	33.0
칠레	n.a	n.a	45.0	40.0	40.0	40.0	40.0	40.0	40.0	40.0	40.0	40.0
체코	n.a	n.a	32.0	15.0	15.0	15.0	15.0	15.0	15.0	15.0	15.0	15.0
덴마크	40.0	40.0	28.0	26.5	26.0	18.7	18.6	19.7	20.8	21.8	23.1	24.1
에스토니아	n.a	n.a	26.0	21.0	21.0	21.0	21.0	21.0	21.0	21.0	20.0	20.0
핀란드	51.0	43.0	37.5	31.5	30.5	30.0	30.0	29.8	31.8	31.8	31.8	31.8
프랑스	60.0	56.8	53.3	40.0	40.0	40.0	41.0	45.0	45.0	45.0	45.0	45.0
독일	56.0	53.0	51.0	45.0	45.0	45.0	45.0	45.0	45.0	45.0	45.0	45.0
그리스	60.0	50.0	45.0	40.0	40.0	45.0	45.0	45.0	42.0	42.0	42.0	45.0
헝가리	n.a	50.0	40.0	36.0	36.0	32.0	16.0	16.0	16.0	16.0	16.0	15.0
아이슬랜드	n.a	n.a	33.4	22.8	24.1	33.0	31.8	31.8	31.8	31.8	31.8	31.8
아일랜드	60.0	53.0	44.0	41.0	41.0	41.0	41.0	41.0	41.0	41.0	40.0	40.0
이스라엘	n.a	n.a	50.0	47.0	46.0	45.0	45.0	48.0	50.0	50.0	50.0	50.0
이탈리아	72.0	50.0	45.0	43.0	43.0	43.0	43.0	43.0	43.0	43.0	43.0	43.0
일본	75.0	50.0	37.0	40.0	40.0	40.0	40.0	40.0	40.0	40.0	45.0	45.0
우리나라	62.0	50.0	40.0	35.0	35.0	35.0	35.0	38.0	38.0	38.0	38.0	38.0
룩셈부르크	57.0	56.0	46.0	38.0	38.0	38.0	39.0	39.0	40.0	40.0	40.0	40.0
멕시코	55.0	35.0	40.0	28.0	28.0	30.0	30.0	30.0	30.0	35.0	35.0	35.0
네덜란드	72.0	60.0	60.0	52.0	52.0	52.0	52.0	52.0	52.0	52.0	52.0	52.0
뉴질랜드	60.0	33.0	39.0	39.0	38.0	35.5	33.0	33.0	33.0	33.0	33.0	33.0
노르웨이	38.0	17.0	29.9	25.3	24.6	24.6	26.1	25.8	25.8	25.0	25.2	24.3
폴란드	n.a	n.a	40.0	40.0	32.0	32.0	32.0	32.0	32.0	32.0	32.0	32.0
포르투갈	84.4	40.0	40.0	42.0	42.0	45.9	46.5	46.5	48.0	48.0	48.0	48.0
슬로바키아	n.a	n.a	42.0	19.0	19.0	19.0	19.0	19.0	25.0	25.0	25.0	25.0
슬로베니아	n.a	n.a	50.0	41.0	41.0	41.0	41.0	41.0	50.0	50.0	50.0	50.0
스페인	65.1	56.0	39.6	27.1	27.1	27.1	23.5	30.5	30.5	30.5	22.5	22.5
스웨덴	87.0	35.0	25.0	25.0	25.0	25.0	25.0	25.0	25.0	25.0	25.0	25.0
스위스	11.5	11.5	11.5	11.5	11.5	13.2	13.2	13.2	13.2	13.2	13.2	13.2
터키	n.a	n.a	40.0	35.0	35.0	35.0	35.0	35.0	35.0	35.0	35.0	35.0
영국	60.0	40.0	40.0	40.0	40.0	50.0	50.0	50.0	45.0	45.0	45.0	45.0
미국	70.0	28.0	39.6	35.0	35.0	35.0	35.0	35.0	39.6	39.6	39.6	39.6
OECD평균	59.5	43.5	40.3	35.2	34.8	35.3	34.8	35.3	35.9	36.0	35.9	36.2

주: 별도 부가세는 제외

자료: OECD Tax Database; 국회예산정책처 정리



(4) 소득세 명목최고세율(OECD): 1981년과 2015년 비교



자료: OECD Tax Database 자료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분석

(5) 지방정부 포함 소득세 최고세율 적용소득 수준(OECD): 2003~2016년

(단위: 평균소득의 배수)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호 주	1.3	1.2	1.3	1.7	2.6	2.5	2.8	2.7	2.6	2.4	2.3	2.3	2.2	2.2
오스트리아	2.2	2.1	2.0	2.0	1.9	1.9	2.1	2.1	2.0	2.0	14.2	13.9	13.7	24.7
벨기에	1.1	1.1	1.0	1.0	1.0	1.0	1.0	1.0	1.0	1.0	1.0	1.6	1.0	1.0
캐나다	2.8	3.0	2.9	2.9	2.9	2.9	3.0	2.9	2.8	10.7	10.6	4.4	4.3	4.3
칠레	17.7	17.5	17.2	16.9	16.7	16.8	15.5	12.9	12.8	12.3	11.8	11.8	11.3	10.9
체코	2.2	2.0	1.9	1.6	1.5	0.5	0.4	0.4	0.4	0.4	0.4	0.4	0.4	0.4
덴마크	1.0	1.1	1.1	1.1	1.0	1.0	1.0	1.1	1.1	1.1	1.2	1.2	1.2	1.2
에스토니아	0.1	0.2	0.2	0.2	0.2	0.2	0.2	0.2	0.2	0.2	0.2	0.1	0.1	0.4
핀란드	2.0	1.9	1.9	1.9	1.8	1.8	1.8	1.8	1.8	1.8	2.5	2.5	2.2	1.8
프랑스	2.8	2.8	2.7	2.9	2.8	2.8	2.8	2.8	15.8	15.4	15.2	15.0	14.8	14.8
독일	1.6	1.4	1.4	1.4	6.3	6.2	6.3	6.2	6.0	5.8	5.8	5.7	5.5	5.5
그리스	1.4	1.3	1.3	1.2	3.7	3.7	3.6	4.9	5.1	5.4	5.5	5.5	25.2	3.9
헝가리	0.9	0.9	0.8	0.8	0.8	0.7	0.8	1.6	0.8	0.9	0.0	0.0	0.0	0.0
아이슬란드	1.2	1.2	1.0	0.2	0.2	0.2	1.7	1.5	1.5	1.4	1.4	1.4	1.4	1.2
아일랜드	1.1	1.0	1.0	1.1	3.2	3.1	7.9	5.4	1.0	1.0	1.0	1.0	1.0	2.0
이스라엘	2.4	4.0	4.0	4.0	3.7	3.6	3.8	3.9	3.9	3.9	6.3	6.0	5.9	5.6
이탈리아	3.4	3.3	4.4	4.3	3.2	3.1	3.0	3.0	10.4	10.2	10.0	9.9	9.8	9.8
일본	4.6	4.5	4.5	4.5	4.5	4.5	4.7	4.7	4.7	4.6	4.6	4.5	8.9	8.7
우리나라	4.1	3.8	3.6	3.4	3.2	3.3	3.2	3.0	3.0	8.9	8.5	4.3	4.2	4.0
룩셈부르크	1.0	1.0	1.0	0.9	0.9	0.9	1.0	0.9	3.2	3.1	3.0	3.0	2.9	2.9
멕시코	3.6	1.7	1.5	1.4	1.4	4.8	4.6	4.5	4.3	4.2	4.0	29.1	28.4	26.6
네덜란드	1.4	1.4	1.4	1.3	1.3	1.3	1.2	1.2	1.2	1.2	1.2	1.2	1.2	1.4
뉴질랜드	1.6	1.6	1.5	1.5	1.4	1.6	1.5	1.5	1.4	1.4	1.3	1.3	1.2	1.2
노르웨이	2.5	2.5	2.1	1.9	1.5	1.5	1.6	1.6	1.6	1.6	1.6	1.6	1.6	1.6
폴란드	3.3	3.3	3.2	3.1	3.1	2.9	2.9	2.7	2.6	2.5	2.4	2.3	2.2	2.1
포르투갈	4.4	4.4	4.4	4.3	4.4	4.5	4.6	10.2	10.6	10.1	15.9	16.1	16.3	16.0
슬로바키아	3.8	0.5	0.5	0.5	0.5	0.4	0.5	0.5	0.4	0.4	4.0	3.9	3.8	3.7
슬로베니아	4.3	4.3	4.5	4.4	1.4	1.4	1.4	1.4	1.4	1.4	5.4	5.3	5.3	5.2
스페인	2.7	2.6	2.6	2.6	2.6	2.5	2.4	2.4	7.1	11.8	11.7	11.7	2.5	2.4
스웨덴	1.5	1.5	1.5	1.5	1.5	1.4	1.5	1.5	1.5	1.5	1.5	1.5	1.5	1.5
스위스	3.4	3.3	3.3	3.3	3.2	3.3	3.3	3.2	3.2	3.4	3.3	3.3	3.3	3.5
터키	9.8	10.4	5.3	3.0	3.7	3.5	3.5	4.7	4.5	4.5	4.3	4.0	3.8	3.5
영국	1.3	1.2	1.2	1.2	1.2	1.2	1.3	4.4	4.4	4.3	4.3	4.3	4.2	4.1
미국	8.7	8.8	8.8	8.7	8.4	8.4	8.6	8.4	8.3	8.3	8.3	8.2	8.2	8.0
OECD평균	3.1	3.0	2.9	2.7	2.9	2.9	3.1	3.3	3.9	4.4	6.4	5.5	5.9	5.5

자료: OECD Tax Database 자료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정리



(6) 무자녀 1인 평균소득가구의 평균유효세율(OECD): 2004~2016년

(단위: %)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호 주	23.9	24.2	24.0	23.4	22.6	22.1	22.3	22.3	22.9	23.1	23.4	24.1	24.3
오스트리아	15.2	15.0	15.4	15.8	16.2	14.7	15.0	15.5	15.9	16.3	16.5	16.9	13.9
벨 기 에	27.9	28.0	27.9	28.1	28.5	28.3	28.7	28.8	28.7	28.4	28.3	28.1	26.8
캐 나 다	16.9	16.3	16.3	16.0	16.1	15.2	15.1	15.3	15.3	15.3	15.6	15.8	15.4
칠 레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체 코	11.3	11.5	9.9	10.4	11.1	11.3	11.5	12.1	11.9	11.9	12.1	12.3	12.6
덴 마 크	30.2	30.1	30.2	30.4	30.2	28.8	27.9	36.1	36.2	35.8	35.6	36.1	36.2
에스토니아	20.9	18.8	18.1	18.1	17.3	16.8	16.7	16.9	17.1	17.5	17.7	16.8	16.7
핀 란 드	24.7	24.7	23.8	23.7	24.2	23.0	22.3	22.2	21.8	22.5	22.6	22.7	22.0
프 랑 스	15.0	15.3	14.0	14.1	14.1	14.2	14.2	14.2	14.4	14.5	14.7	14.7	14.8
독 일	21.4	20.8	20.8	21.0	21.2	20.6	18.7	18.9	19.1	19.0	19.1	19.2	19.0
그 리 스	9.0	8.8	10.1	9.8	9.1	8.8	7.2	10.8	10.1	9.1	8.9	8.8	9.6
형 가 리	20.9	20.2	20.9	21.8	21.3	20.8	14.4	17.6	16.6	16.0	16.0	16.0	15.0
아이슬랜드	27.9	28.0	27.7	26.7	26.8	25.7	27.1	27.9	28.2	28.6	28.1	28.7	28.9
아일랜드	10.9	10.2	9.6	8.7	8.8	10.2	10.7	14.7	14.7	15.2	16.5	15.7	15.2
이스라엘	14.1	13.3	12.6	13.3	11.2	9.8	9.0	9.1	8.7	8.6	8.8	9.4	9.9
이탈리아	19.3	18.8	19.6	19.7	20.0	20.2	20.7	21.3	21.5	21.6	22.1	23.1	21.6
일본	6.6	6.7	7.2	8.1	8.0	7.9	7.6	7.6	7.6	7.6	7.6	7.7	7.8
우리나라	2.7	2.8	3.4	4.7	4.6	4.1	4.5	4.4	4.9	5.0	5.0	5.4	5.7
룩셈부르크	13.5	14.2	14.9	15.6	15.3	14.0	14.6	15.3	15.8	17.2	17.6	17.9	18.1
멕시코	3.7	3.1	3.5	4.6	3.8	4.1	4.3	7.9	8.2	8.4	8.7	9.0	9.5
네덜란드	10.8	11.2	13.2	14.6	15.5	16.6	16.2	16.4	17.1	15.8	16.1	16.7	16.9
뉴질랜드	19.7	20.0	20.4	21.1	20.5	18.1	17.0	15.9	16.4	16.9	17.3	17.6	17.9
노르웨이	22.3	21.2	21.3	21.7	21.8	21.5	21.5	21.6	21.4	21.4	20.6	20.2	19.7
폴란드	6.3	6.4	6.5	6.8	7.2	6.6	6.7	6.8	6.9	6.9	7.0	5.9	7.2
포르투갈	11.5	10.8	11.7	11.4	11.0	10.5	11.2	12.3	11.8	16.4	16.3	17.3	16.6
슬로바키아	8.4	8.4	8.7	8.9	9.4	8.0	8.3	9.4	9.4	9.4	9.5	9.7	9.8
슬로베니아	13.5	12.6	12.8	10.8	11.0	10.8	11.2	11.3	11.2	11.0	11.1	11.2	11.3
스페인	13.7	13.9	14.1	14.2	13.0	13.5	15.4	15.7	16.5	16.6	16.6	15.1	15.0
스웨덴	24.5	24.2	23.9	20.6	19.9	18.4	17.8	17.9	17.9	18.1	17.4	17.7	17.9
스위스	11.5	11.5	11.4	11.7	11.1	11.2	11.3	11.3	11.0	11.0	11.1	11.1	10.7
터키	15.5	15.5	15.4	15.4	12.7	12.1	12.0	12.1	12.1	12.4	12.4	12.5	12.3
영국	17.6	17.6	17.7	17.7	16.4	16.1	16.2	15.6	15.4	14.6	14.4	14.1	14.0
미국	16.7	16.6	16.8	17.2	16.8	15.7	16.1	17.2	17.2	17.0	17.2	18.0	18.3
OECD 평균	15.5	15.3	15.4	15.5	15.2	14.7	14.5	15.4	15.4	15.6	15.6	15.8	15.7

자료: OECD Taxing wages

(7) 가구유형별 평균유효세율(OECD): 2016년

(단위: %)

	무자녀 1인가구 (평균 소득의 67%)	무자녀 1인가구 (평균 소득의 100%)	무자녀 1인가구 (평균 소득의 167%)	2자녀 1인가구 (평균 소득의 67%)	2자녀 외벌이가구 (평균 소득의 100%)	2자녀 맞벌이가구 (평균 소득의 100%-33%)	2자녀 맞벌이가구 (평균 소득의 100%-67%)	무자녀 맞벌이가구 (평균 소득의 100%-33%)
호 주	18.8	24.3	30.2	18.8	24.3	19.9	22.1	19.9
오스트리아	8.3	13.9	21.0	5.0	11.7	9.2	11.1	9.8
벨기에	19.5	26.8	34.5	14.1	15.1	19.3	22.4	21.2
캐나다	11.8	15.4	21.4	3.5	10.6	12.5	13.9	12.5
칠레	0.0	0.0	1.0	0.0	0.0	0.0	0.0	0.0
체코	8.9	12.6	15.6	-4.9	-4.2	2.5	5.6	9.5
덴마크	33.8	36.2	42.2	32.3	32.2	34.1	35.2	34.1
에스토니아	15.2	16.7	17.9	11.2	11.0	13.1	14.5	15.2
핀란드	15.0	22.0	29.4	14.4	21.9	16.9	19.0	17.1
프랑스	11.0	14.8	20.9	7.9	7.9	7.9	11.0	11.5
독일	14.0	19.0	27.5	-2.8	0.9	6.5	10.8	13.9
그리스	4.4	9.6	16.6	3.7	10.1	7.6	8.1	8.0
헝가리	15.0	15.0	15.0	1.5	5.9	8.2	9.6	15.0
아이슬랜드	25.0	28.9	34.0	25.0	21.5	25.0	27.3	25.0
아일랜드	8.7	15.2	27.4	2.5	6.8	8.7	12.0	8.7
이스라엘	5.3	9.9	17.3	-3.5	9.9	7.4	5.9	7.4
이탈리아	12.4	21.6	29.9	4.7	14.7	11.5	15.0	15.0
일본	6.2	7.8	12.7	6.2	6.4	6.9	7.2	6.9
우리나라	2.2	5.7	10.6	0.0	3.3	2.9	3.1	4.3
룩셈부르크	10.1	18.1	25.8	3.5	6.5	8.2	12.5	8.2
멕시코	2.5	9.5	14.0	2.5	9.5	5.2	6.7	5.2
네덜란드	6.4	16.9	27.9	4.5	16.4	12.7	11.9	13.2
뉴질랜드	13.6	17.9	23.6	15.0	17.9	16.5	16.7	16.5
노르웨이	16.3	19.7	26.2	12.9	18.6	16.7	18.4	16.7
폴란드	6.4	7.2	7.8	0.0	1.4	2.8	4.1	6.3
포르투갈	10.2	16.6	23.4	0.0	4.3	4.9	9.7	10.0
슬로바키아	6.6	9.8	12.5	-0.4	-1.5	3.9	5.7	7.4
슬로베니아	6.7	11.3	15.3	0.1	3.0	3.9	5.8	8.5
스페인	10.4	15.0	21.0	-4.6	7.7	9.9	11.0	11.3
스웨덴	15.2	17.9	31.4	15.2	17.9	15.6	16.8	15.6
스위스	7.8	10.7	15.5	2.1	4.2	5.7	7.9	8.3
터키	9.2	12.3	16.9	7.4	10.3	8.6	10.3	9.5
영국	11.0	14.0	22.3	-3.2	13.4	11.0	12.8	11.0
미국	15.4	18.3	23.7	-2.6	6.5	10.2	12.5	15.4
OECD 평균	11.4	15.7	21.5	5.6	10.1	10.5	12.3	12.4

자료: OECD Taxing wag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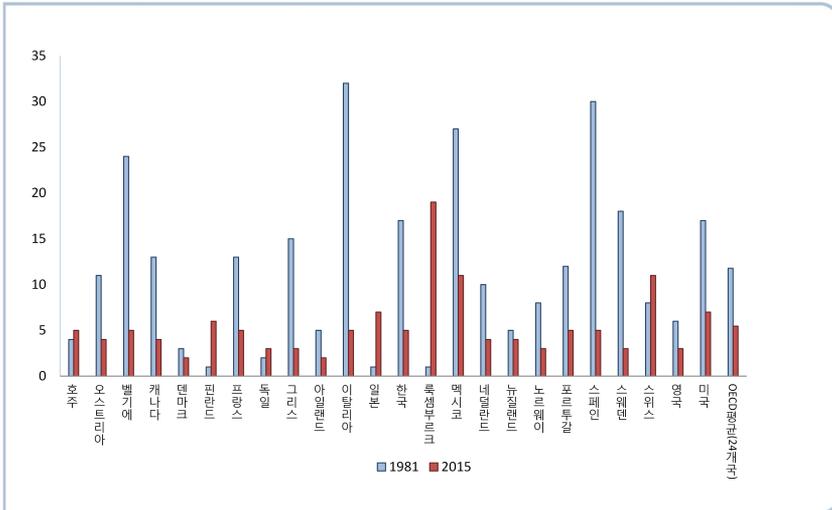
(8) 중앙정부기준 과표구간 개수(OECD): 1981~2016년

(단위: 개)

	1981	1990	2000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호 주	4	8	5	5	5	5	5	5	5	5	5	5
오스트리아	11	5	5	4	4	4	4	4	4	4	4	7
벨기에	24	7	7	5	5	5	5	5	5	5	5	5
캐나다	13	3	3	4	4	4	4	4	4	4	4	5
칠레			6	7	7	7	7	7	7	7	8	8
체코			4	1	1	1	1	1	1	1	1	1
덴마크	3	3	3	3	2	2	2	2	2	2	2	2
에스토니아			1	1	1	1	1	1	1	1	1	1
핀란드	1	1	7	5	5	5	5	5	6	6	6	6
프랑스	13	13	7	5	5	5	5	6	6	5	5	5
독일	2	2	3	3	3	3	3	3	3	3	5	3
그리스	15	9	5	3	4	9	9	8	3	3	3	3
헝가리		5	3	2	2	2	1	1	1	1	1	1
아이슬란드			2	1	1	3	3	3	3	3	3	3
아일랜드	5	3	2	2	2	2	2	2	2	2	2	2
이스라엘			5	6	6	6	6	6	7	7	7	7
이탈리아	32	7	5	5	5	5	5	5	5	5	5	5
일본	1	1	4	6	6	6	6	6	6	6	7	7
우리나라	17	8	4	4	4	4	4	5	5	5	5	5
룩셈부르크	1	1	10	17	17	17	18	18	19	19	19	19
멕시코	27	6	10	8	8	8	8	8	8	11	11	11
네덜란드	10	3	4	4	4	4	4	4	4	4	4	4
뉴질랜드	5	3	4	7	4	4	4	4	4	4	4	4
노르웨이	8	3	3	3	3	3	3	3	3	3	3	5
폴란드			3	3	2	2	2	2	2	2	3	2
포르투갈	12	5	5	7	7	8	8	8	5	5	5	5
슬로바키아			7	1	1	1	1	1	2	2	2	2
슬로베니아			6	3	3	3	3	3	4	4	4	4
스페인	30	16	6	4	4	4	6	7	7	7	5	5
스웨덴	18	4	3	3	3	3	3	3	3	3	3	3
스위스	8	11	11	11	11	11	11	11	11	11	11	11
터키			6	4	4	4	4	4	4	4	4	4
영국	6	2	3	2	2	3	3	3	3	3	3	3
미국	17	2	5	6	6	6	6	6	7	7	7	7
OECD평균	11.8	5.2	4.4	4.1	4.0	4.2	4.8	4.8	4.8	4.9	4.9	5.0

자료: OECD Tax Database

(9) 소득세 과표구간 개수(OECD): 1981년과 2015년 비교



자료: OECD Tax Database; 국회예산정책처 분석



3. 세목별 비교: 법인세

(1) GDP 대비 법인세 비중(OECD): 1965~2015년

(단위: %)

	1965	1980	1990	2000	2005	2010	2013	2014	2015	순위
호 주	3.4	3.2	4.0	6.2	5.8	4.7	4.9	4.7	n/a	2
오스트리아	1.8	1.4	1.4	2.0	2.2	1.9	2.2	2.1	2.3	25
벨기에	1.9	1.9	2.0	3.1	3.2	2.5	3.1	3.2	3.4	11
캐나다	3.7	3.5	2.5	4.2	3.3	3.2	3.3	3.3	3.1	10
칠레	n/a	n/a	2.1	2.1	4.6	4.0	4.4	4.2	4.9	5
체코	n/a	n/a	n/a	3.2	4.2	3.2	3.4	3.5	3.6	7
덴마크	1.3	1.4	1.7	3.2	3.4	2.3	2.8	2.6	2.6	17
에스토니아	n/a	n/a	n/a	0.9	1.4	1.3	1.7	1.7	2.1	32
핀란드	2.4	1.2	1.9	5.7	3.2	2.4	2.4	1.9	2.2	27
프랑스	1.8	2.0	2.2	3.0	2.4	2.3	2.6	2.3	2.1	22
독일	2.5	2.0	1.7	1.8	1.7	1.5	1.8	1.7	1.7	31
그리스	0.3	0.8	1.4	4.0	3.2	2.5	1.1	1.9	n/a	28
헝가리	n/a	n/a	n/a	2.2	2.1	1.2	1.4	1.5	1.9	34
아이슬란드	0.5	0.7	0.8	1.2	1.9	0.9	2.2	3.4	2.9	8
아일랜드	2.2	1.4	1.6	3.6	3.2	2.4	2.4	2.4	2.7	21
이스라엘	n/a	n/a	n/a	3.3	3.4	2.6	3.5	3.2	3.0	12
이탈리아	1.7	2.2	3.7	2.8	2.2	2.3	2.6	2.2	2.1	23
일본	3.9	5.4	6.4	3.7	4.2	3.2	4.0	4.1	4.3	6
우리나라	n/a	1.9	2.4	3.0	3.6	3.2	3.4	3.2	3.2	13
라트비아	n/a	n/a	n/a	1.5	1.9	1.0	1.6	1.5	1.6	33
룩셈부르크	2.9	5.6	5.4	6.7	5.9	5.8	4.8	4.4	4.4	3
멕시코	n/a	n/a	n/a	n/a	1.4	1.9	2.4	2.6	3.3	19
네덜란드	2.5	2.7	3.0	4.0	3.4	2.3	2.2	2.6	2.7	18
뉴질랜드	4.8	2.3	2.3	4.0	6.0	3.7	4.4	4.3	4.4	4
노르웨이	1.1	5.6	3.6	8.8	11.5	9.9	8.3	6.6	4.5	1
폴란드	n/a	n/a	n/a	2.4	2.1	1.9	1.8	1.7	n/a	30
포르투갈	n/a	n/a	2.1	3.7	2.6	2.7	3.3	2.8	3.2	14
슬로바키아	n/a	n/a	n/a	2.6	2.7	2.5	2.9	3.3	3.5	9
슬로베니아	n/a	n/a	n/a	1.1	2.7	1.8	1.2	1.4	1.5	35
스페인	1.3	1.1	2.8	3.0	3.9	1.9	2.1	2.1	2.4	26
스웨덴	1.9	1.1	1.5	3.7	3.5	3.3	2.7	2.7	3.0	16
스위스	1.3	1.5	2.9	3.8	3.0	2.7	2.8	2.8	3.0	15
터키	0.5	0.6	1.0	1.8	1.7	1.9	1.9	1.8	1.7	29
영국	1.3	2.8	3.3	3.2	3.0	2.8	2.5	2.4	2.5	20
미국	3.9	2.7	2.0	2.2	2.9	1.8	2.1	2.2	2.2	24
OECD 평균	2.1	2.3	2.5	3.3	3.4	2.7	2.9	2.8	n/a	

주: 순위는 2014년 기준으로 높은 순서 기준

자료: OECD, Revenue statistics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2) 총조세 대비 법인세 비중(OECD): 1965~2015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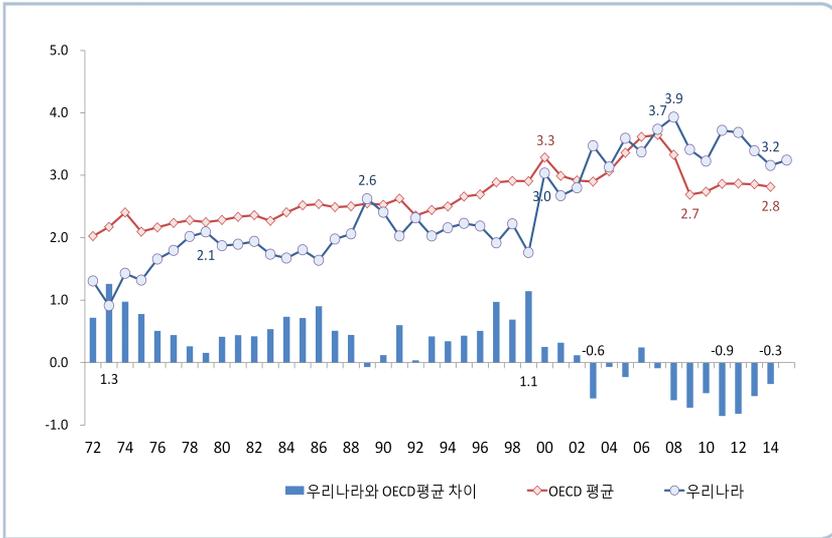
(단위: %)

	1965	1980	1990	2000	2005	2010	2013	2014	2015	순위
호 주	16.3	12.2	14.1	20.2	19.2	18.3	17.9	16.8	n/a	8
오스트리아	7.2	5.1	5.3	7.0	8.0	7.0	7.7	7.5	7.9	28
벨기에	9.0	6.5	7.2	10.4	10.5	8.8	10.1	10.5	11.1	17
캐나다	15.7	13.0	8.0	14.1	12.2	12.3	12.5	12.4	11.6	12
칠레	n/a	n/a	13.6	12.1	23.7	21.9	23.8	22.9	25.5	2
체코	n/a	n/a	n/a	17.7	21.1	18.0	17.7	18.9	18.7	5
덴마크	4.7	3.3	3.8	6.9	7.2	5.1	5.9	5.3	5.7	35
에스토니아	n/a	n/a	n/a	4.4	7.2	6.4	8.4	8.0	9.3	26
핀란드	8.7	4.4	6.1	16.7	10.4	8.5	7.6	6.2	7.0	33
프랑스	8.0	9.0	9.5	10.8	8.7	9.0	9.3	8.1	7.4	25
독일	10.7	8.3	7.7	7.9	8.5	7.0	7.9	7.7	7.6	27
그리스	2.6	5.6	7.9	17.2	15.9	12.0	4.6	7.4	n/a	30
헝가리	n/a	n/a	n/a	8.1	8.4	4.7	5.4	5.7	7.1	34
아이슬랜드	2.0	2.6	2.9	3.6	5.3	3.1	6.7	9.5	8.7	19
아일랜드	9.7	5.3	5.7	13.3	12.7	10.7	10.2	10.1	13.7	18
이스라엘	n/a	n/a	n/a	11.2	12.1	10.4	13.5	12.2	11.5	13
이탈리아	10.5	12.6	15.0	9.7	8.3	7.9	8.3	7.1	6.8	31
일본	28.4	30.8	30.4	21.2	24.6	19.7	22.4	21.4	n/a	3
우리나라	n/a	11.2	14.2	17.0	20.2	18.0	19.0	17.5	17.5	7
라트비아	n/a	n/a	n/a	7.9	9.5	5.0	8.1	7.5	7.7	29
룩셈부르크	16.3	22.7	22.3	24.3	21.4	21.6	17.6	16.0	16.7	9
멕시코	n/a	n/a	n/a	n/a	14.6	16.5	21.1	21.3	n/a	4
네덜란드	11.7	10.6	12.1	17.7	14.8	10.0	10.1	11.4	11.6	14
뉴질랜드	20.7	7.8	6.5	12.4	16.8	12.2	14.1	13.2	13.5	11
노르웨이	4.3	16.9	12.2	26.5	34.0	30.4	27.2	23.0	16.4	1
폴란드	n/a	n/a	n/a	11.9	10.2	9.6	9.0	8.8	n/a	23
포르투갈	n/a	n/a	10.9	16.0	11.5	12.5	12.9	11.3	12.4	15
슬로바키아	n/a	n/a	n/a	13.1	14.2	15.3	16.8	18.5	19.2	6
슬로베니아	n/a	n/a	n/a	5.0	11.3	8.4	5.5	6.4	6.7	32
스페인	12.8	9.9	13.7	13.9	16.4	9.8	9.9	9.3	10.8	20
스웨덴	7.0	3.4	4.3	10.2	10.3	10.2	8.1	8.2	8.9	24
스위스	9.1	8.3	16.0	18.3	15.0	13.4	13.9	13.9	14.5	10
터키	5.1	4.8	8.3	9.0	9.2	9.7	8.7	9.0	8.0	22
영국	5.2	10.0	12.0	11.7	11.5	10.8	9.5	9.2	9.3	21
미국	18.9	13.8	10.1	10.3	14.6	10.3	10.9	11.1	10.9	16
OECD 평균	10.5	9.8	10.3	12.9	13.4	11.5	11.5	11.2	n/a	

주: 순위는 2014년 기준으로 높은 순서 기준. 총조세에서 사회보험료 제외
 자료: OECD, Revenue statistics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3) 우리나라와 OECD평균 간 GDP대비 법인세 비중 추이: 1972~2015년



자료: OECD Tax Database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4) 중앙정부 기준 법인세 명목최고세율(OECD): 2000~2016년

(단위: %)

	2000	2005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호 주	34	30	30	30	30	30	30	30	30	(4)
오스트리아	34	25	25	25	25	25	25	25	25	(10)
벨기에	39	33	33	33	33	33	33	33	33	(3)
캐나다	28	21	18	16,5	15	15	15	15	15	(31)
칠레	15	17	17	20	20	20	21	22,5	24	(15)
체코	31	26	19	19	19	19	19	19	19	(27)
덴마크	32	28	25	25	25	25	24,5	23,5	22	(17)
에스토니아	26	24	21	21	21	21	21	20	20	(22)
핀란드	29	26	26	26	24,5	24,5	20	20	20	(22)
프랑스	33,33	33,33	33,33	33,33	33,33	33,33	33,33	33,33	33,33	(2)
독일	40	25	15	15	15	15	15	15	15	(31)
그리스	40	32	24	20	20	26	26	26	29	(6)
헝가리	18	16	19	19	19	19	19	19	19	(27)
아이슬란드	30	18	18	20	20	20	20	20	20	(22)
아일랜드	24	12,5	12,5	12,5	12,5	12,5	12,5	12,5	12,5	(34)
이스라엘	36	34	25	24	25	25	26,5	26,5	25	(10)
이탈리아	37	33	27,5	27,5	27,5	27,5	27,5	27,5	27,5	(9)
일본	30	30	30	30	30	28,05	28,05	23,9	23,4	(16)
우리나라	28	25	22	22	22	22	22	22	22	(17)
라트비아	25	15	15	15	15	15	15	15	15	(31)
룩셈부르크	30	22	21	21	21	21	21	21	21	(21)
멕시코	35	30	30	30	30	30	30	30	30	(4)
네덜란드	35	31,5	25,5	25	25	25	25	25	25	(10)
뉴질랜드	33	33	30	28	28	28	28	28	28	(7)
노르웨이	28	23,75	28	28	28	28	27	27	25	(10)
폴란드	30	19	19	19	19	19	19	19	19	(27)
포르투갈	32	25	25	27	30	30	30	28	28	(7)
슬로바키아	29	19	19	19	19	23	22	22	22	(17)
슬로베니아	25	25	20	20	18	17	17	17	17	(30)
스페인	35	35	30	30	30	30	30	28	25	(10)
스웨덴	28	28	26,3	26,3	26,3	22	22	22	22	(17)
스위스	8,5	8,5	8,5	8,5	8,5	8,5	8,5	8,5	8,5	(35)
터키	33	30	20	20	20	20	20	20	20	(22)
영국	30	30	28	26	24	23	21	20	20	(22)
미국	35	35	35	35	35	35	35	35	35	(1)
OECD평균	30,2	25,7	23,4	23,3	23,2	23,3	23,1	22,8	22,7	

주: ()는 높은 순서임

자료: OECD Tax Database 자료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5) 지방세·부가세 포함 법인세 명목최고세율(OECD): 2000~2016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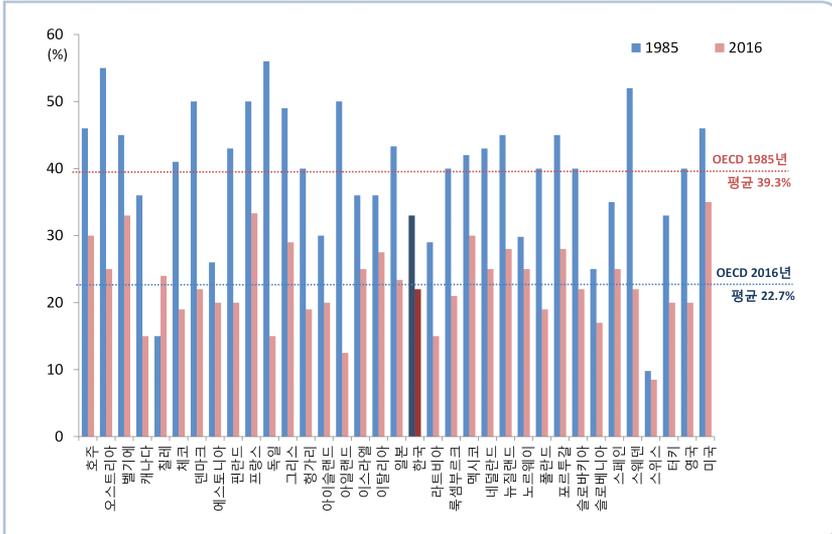
	2000	2005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호 주	34	30	30	30	30	30	30	30	30	(6)
오스트리아	34	25	25	25	25	25	25	25	25	(14)
벨기에	40,17	33,99	33,99	33,99	33,99	33,99	33,99	33,99	33,99	(3)
캐나다	42,43	34,18	29,4	27,7	26,1	26,3	26,3	26,3	26,8	(13)
칠레	15	17	17	20	20	20	21	22,5	24	(20)
체코	31	26	19	19	19	19	19	19	19	(30)
덴마크	32	28	25	25	25	25	24,5	23,5	22	(21)
에스토니아	26	24	21	21	21	21	21	20	20	(25)
핀란드	29	26	26	26	24,5	24,5	20	20	20	(25)
프랑스	37,76	34,95	34,43	34,43	36,1	36,1	38	38	38	(2)
독일	52,03	38,9	30,175	30,175	30,175	30,175	30,175	30,175	30,175	(5)
그리스	40	32	24	20	20	26	26	26	29	(11)
헝가리	18	16	19	19	19	19	19	19	19	(30)
아이슬란드	30	18	18	20	20	20	20	20	20	(25)
아일랜드	24	12,5	12,5	12,5	12,5	12,5	12,5	12,5	12,5	(35)
이스라엘	36	34	25	24	25	25	26,5	26,5	25	(14)
이탈리아	37	33	31,4	31,4	31,4	31,4	31,4	31,29	31,293	(4)
일본	40,87	39,54	39,54	39,54	39,54	36,99	36,99	32,11	29,97	(8)
우리나라	30,8	27,5	24,2	24,2	24,2	24,2	24,2	24,2	24,2	(19)
라트비아	25	15	15	15	15	15	15	15	15	(34)
룩셈부르크	37,45	30,38	28,59	28,8	28,8	29,22	29,22	29,22	29,22	(10)
멕시코	35	30	30	30	30	30	30	30	30	(6)
네덜란드	35	31,5	25,5	25	25	25	25	25	25	(14)
뉴질랜드	33	33	30	28	28	28	28	28	28	(12)
노르웨이	28	28	28	28	28	28	27	27	25	(14)
폴란드	30	19	19	19	19	19	19	19	19	(30)
포르투갈	35,2	27,5	26,5	28,5	31,5	31,5	31,5	29,5	29,5	(9)
슬로바키아	29	19	19	19	19	23	22	22	22	(21)
슬로베니아	25	25	20	20	18	17	17	17	17	(33)
스페인	35	35	30	30	30	30	30	28	25	(14)
스웨덴	28	28	26,3	26,3	26,3	22	22	22	22	(21)
스위스	24,93	21,32	21,17	21,17	21,17	21,15	21,15	21,15	21,149	(24)
터키	33	30	20	20	20	20	20	20	20	(25)
영국	30	30	28	26	24	23	21	20	20	(25)
미국	39,34	39,29	39,21	39,19	39,13	39,05	39,08	39	38,924	(1)
OECD평균	32,4	27,8	25,5	25,3	25,3	25,3	25,2	24,9	24,8	

주: ()는 높은 순서임

자료: OECD Tax Database 자료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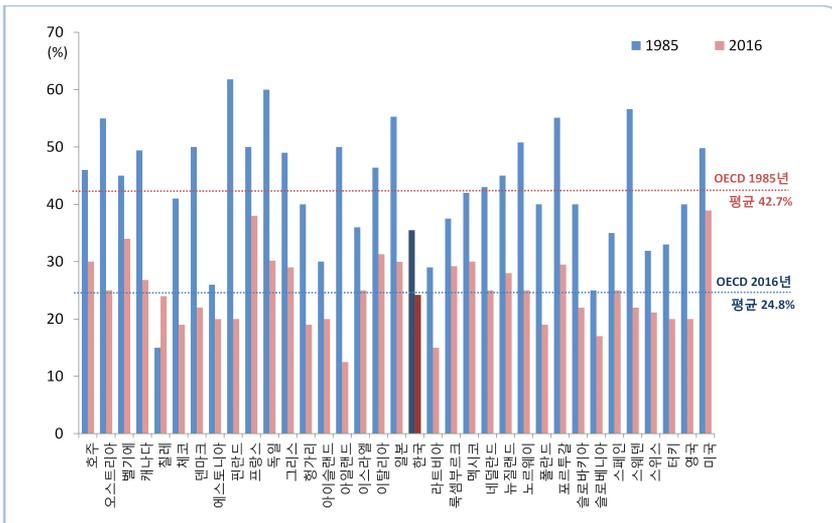
(6) 법인세율 변화(OECD): 1985년과 2016년 비교

1) 중앙정부 기준



자료: OECD, IBFD 자료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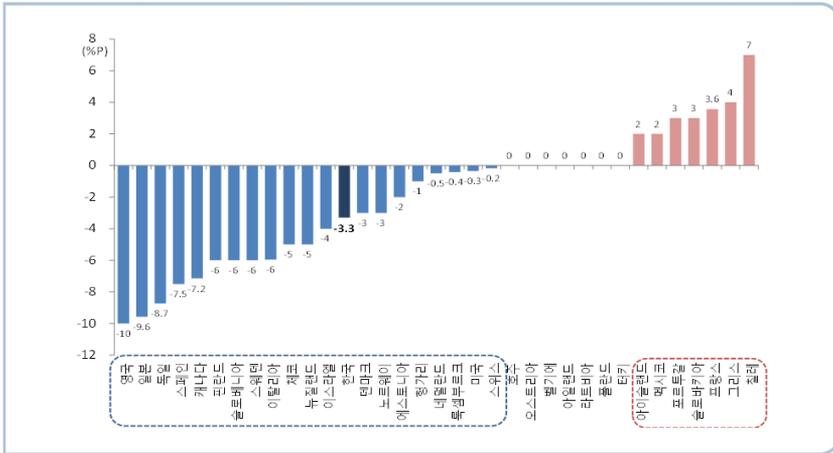
2) 지방세 포함



자료: OECD, IBFD 자료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7)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법인세를 인하 정도(OECD): 2007~2016년



자료: OECD Tax Database, IBFD 자료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8) OECD 국가의 과표구간 개수

구간수	해당 국가
1	오스트리아, 캐나다, 칠레, 체코, 덴마크, 핀란드, 독일, 그리스, 아이슬란드, 이탈리아, 아일랜드, 에스토니아, 이스라엘, 룩셈부르크, 라트비아, 멕시코, 뉴질랜드, 폴란드, 노르웨이,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터키, 영국(총 26개국)
2	호주 ²⁾ , 헝가리 ³⁾ , 네덜란드 ⁴⁾ , 일본 ⁵⁾ (총 4개국)
3	한국, 벨기에 ⁶⁾ , 프랑스 ⁷⁾ (총 3개국)
4	포르투갈 ⁸⁾ (총 1개국)
8	미국 (총 1개국)

주: 1) 2017년 기준, 파트너십(아이슬란드), 특수펀드(체코, 슬로베니아), 무역이익(아일랜드) 등 특정 소득과 특정산업(이스라엘, 영국), 특정도시(룩셈부르크), 손실기업(이탈리아) 등에 대해 차등세율을 적용하는 경우는 단일세율로 보았고, 기업규모나 소득규모에 따라 세율이 다른 경우는 차등세율로 보았음

- 2) 호주의 기본세율은 30%이나, 소기업에 대해 28.5% 세율 적용
- 3) 헝가리의 경우, 5억포린트 이하 10%, 5억포린트 초과시 19%
- 4) 네덜란드의 경우, 20만유로 이하 20%, 20만유로 초과시 25%
- 5) 일본의 기본세율은 23.4%이나, 과세소득이 800만엔인 중소기업은 2017.3.31.까지 15% 경감세율
- 6) 벨기에의 기본세율은 33.33%에 3%의 부가세인 austerity surcharge 추가납부. 다만, 소득이 322,500유로인 기업은 과세소득별로 24.25%, 31%, 34.5%의 3단계 누진세율 적용
- 7) 프랑스의 기본세율은 33.33%이나, 과세소득 38,120유로까지 15%, 38,120-75,000유로 28% 적용 다만, 과세소득이 76.3만유로를 넘는 기업은 3.3%의 부가세인 사회보험료 과세
- 8) 포르투갈의 기본세율은 21%. 과세소득 규모에 따라 150만유로 이하 0%, 150-750만유로 3%, 750-3,500만유로 5%, 3,500만유로 초과시 7% 각각 추가

자료: IBFD 자료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4. 세목별 비교: 부가가치세

(1) GDP 대비 부가가치세 비중(OECD): 1990~2014년

(단위: %)

구분	1990	1995	2000	2010	2011	2012	2013	2014	순위
호 주	0.0	0.0	3.4	3.4	3.3	3.3	3.5	3.5	33
오스트리아	8.2	7.6	7.9	7.7	7.6	7.8	7.7	7.7	12
벨기에	6.8	6.5	7.0	6.9	6.9	6.9	6.9	6.9	20
캐나다	0.0	2.9	3.2	4.2	4.2	4.2	4.1	4.2	29
칠레	6.3	7.5	7.9	7.6	7.9	8.1	8.1	8.2	9
체코	-	5.8	6.0	6.7	6.9	7.0	7.4	7.4	16
덴마크	8.4	9.1	9.2	9.5	9.6	9.6	9.4	9.5	2
에스토니아	-	9.6	8.4	8.5	8.2	8.4	8.2	8.6	6
핀란드	8.3	7.7	8.0	8.3	8.8	9.0	9.3	9.2	4
프랑스	7.6	7.3	7.2	6.8	6.8	6.8	6.8	6.9	20
독일	5.8	6.3	6.7	7.0	7.0	7.0	7.0	7.0	19
그리스	6.2	6.1	6.9	7.1	7.3	7.2	7.0	7.1	17
헝가리	-	7.3	8.7	8.6	8.5	9.2	9.0	9.4	3
아이슬랜드	8.6	9.1	10.4	7.6	7.7	8.0	8.0	8.1	10
아일랜드	6.6	6.7	7.1	6.0	5.6	5.8	5.8	6.0	26
이스라엘	-	8.3	7.4	7.5	7.5	7.3	7.7	8.0	11
이탈리아	5.3	5.3	6.3	6.1	6.0	6.0	5.9	6.0	26
일본	1.3	1.4	2.4	2.6	2.7	2.7	2.8	3.9	31
우리나라	3.5	3.4	3.7	4.1	4.1	4.3	4.1	4.2	29
라트비아	-	8.4	7.0	6.7	6.8	7.2	7.4	7.6	14
룩셈부르크	4.1	4.3	5.0	6.5	6.7	7.2	7.2	7.5	15
멕시코	3.2	2.5	3.1	3.8	3.7	3.7	3.5	3.9	31
네덜란드	6.6	6.1	6.4	6.8	6.5	6.5	6.5	6.4	24
뉴질랜드	8.1	8.1	8.1	9.3	9.4	9.6	9.4	9.7	1
노르웨이	7.6	8.5	8.2	7.8	7.6	7.5	7.7	7.7	12



구분	1990	1995	2000	2010	2011	2012	2013	2014	순위
폴 란 드	-	6.1	6.9	7.6	7.8	7.1	7.0	7.1	17
포르투갈	5.2	6.8	7.6	7.5	8.1	8.3	8.1	8.5	7
슬로바키아	-	8.2	6.9	6.2	6.7	6.0	6.4	6.6	23
슬로베니아	-	0.0	8.5	8.1	8.1	8.0	8.5	8.5	7
스 페 인	5.0	5.0	5.9	5.3	5.2	5.4	5.9	6.1	25
스 웨 덴	7.4	8.8	8.3	9.2	9.0	8.9	9.0	9.0	5
스 위 스	2.8	3.1	3.6	3.4	3.5	3.5	3.5	3.5	33
터 키	2.7	4.1	5.8	5.7	6.1	5.8	6.4	5.9	28
영 국	5.5	5.7	5.9	6.1	6.8	6.8	6.8	6.8	22
미 국	0.0	0.0	0.0	0.0	0.0	0.0	0.0	0.0	35
OECD 평균	5.2	5.8	6.4	6.5	6.5	6.6	6.6	6.8	-

주: 2015년도는 누락된 국가가 있어 생략

자료: OECD, Revenue statistics, 2016. 을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정리

(2) 총조세 대비 부가가치세 비중(OECD): 1990~2014년

(단위: %)

	1990	1995	2000	2010	2011	2012	2013	2014	순위
호 주	0,0	0,0	11,1	13,3	12,5	12,1	12,7	12,6	33
오스트리아	20,8	18,6	18,8	18,9	18,6	18,6	18,2	18,0	25
벨기에	16,4	15,2	16,1	16,2	15,9	15,7	15,4	15,3	28
캐나다	0,0	8,4	9,2	13,7	13,7	13,7	13,4	13,5	31
칠레	37,4	40,6	41,8	38,5	37,0	37,7	40,8	41,6	1
체코	-	16,6	18,3	20,5	20,6	20,9	21,8	22,4	10
덴마크	18,9	19,5	19,5	21,1	21,2	21,0	20,2	19,2	22
에스토니아	-	26,6	27,1	25,7	26,0	26,6	26,0	26,4	3
핀란드	19,3	17,4	17,4	20,4	20,9	21,1	21,3	21,0	15
프랑스	18,4	17,4	16,7	16,1	15,8	15,4	15,1	15,2	29
독일	16,6	17,4	18,4	20,0	19,7	19,4	19,2	19,0	23
그리스	24,6	22,0	20,8	21,9	21,5	20,2	19,6	20,0	19
헝가리	-	17,8	22,4	22,9	23,2	23,8	23,5	24,5	8
아이슬랜드	28,5	29,9	28,5	22,7	22,4	22,8	22,2	20,8	16
아일랜드	20,4	21,1	22,9	22,2	20,8	21,2	20,4	20,8	16
이스라엘	-	23,2	21,2	24,5	24,4	24,5	25,2	25,7	5
이탈리아	14,7	13,8	15,4	14,5	14,4	13,6	13,3	13,8	30
일본	4,4	5,4	9,1	9,6	9,4	9,2	9,2	12,2	34
우리나라	18,7	17,8	17,0	17,5	17,0	17,2	17,0	17,2	26
라트비아	-	28,4	23,9	23,9	24,4	25,3	26,0	26,3	4
룩셈부르크	12,1	12,4	13,4	17,0	17,7	18,4	19,0	19,6	21
멕시코	26,1	22,2	22,8	26,9	26,4	26,7	23,7	25,6	6
네덜란드	16,5	16,2	17,3	18,7	18,1	17,9	17,8	17,2	26
뉴질랜드	22,4	22,8	24,9	30,7	31,0	30,0	30,0	29,9	2
노르웨이	18,8	21,2	19,7	18,5	18,0	18,2	19,2	20,0	19
폴란드	-	16,1	21,0	24,4	24,8	22,4	22,1	22,2	11
포르투갈	19,6	23,3	24,4	24,7	25,0	26,2	23,6	24,8	7



	1990	1995	2000	2010	2011	2012	2013	2014	순위
슬로바키아	-	20.8	20.4	22.1	23.4	21.1	21.0	21.3	12
슬로베니아	-	0.0	23.3	21.9	22.3	21.8	23.1	23.2	9
스 페 인	15.7	15.9	17.6	16.7	16.4	16.6	17.8	18.1	24
스 웨 덴	14.9	19.4	16.9	21.2	21.3	21.0	20.9	21.1	14
스 위 스	11.7	12.1	13.2	12.8	12.8	13.1	13.1	12.9	32
터 키	18.3	24.3	24.2	21.7	21.8	20.8	22.0	20.4	18
영 국	16.9	19.0	18.1	18.8	20.5	20.8	20.9	21.3	12
미 국	0.0	0.0	0.0	0.0	0.0	0.0	0.0	0.0	35
OECD 평균	16.7	17.8	19.2	20.0	20.0	19.8	19.8	20.1	

주: 2015년도는 누락된 국가가 있어 생략

자료: OECD, Revenue statistics, 2016. 을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정리

(3) OECD 국가의 부가가치세 도입연도

국가명	실시연도	국가명	실시연도
핀란드	1964	터키	1985
덴마크	1967	포르투갈	1986
프랑스	1968	스페인	1986
독일	1968	뉴질랜드	1986
네덜란드	1969	그리스	1987
스웨덴	1969	헝가리	1988
룩셈부르크	1970	일본	1989
노르웨이	1970	아이슬란드	1990
벨기에	1971	캐나다	1991
아일랜드	1972	에스토니아	1992
오스트리아	1973	슬로바키아	1993
이탈리아	1973	체코	1993
영국	1973	폴란드	1993
칠레	1975	스위스	1995
이스라엘	1976	슬로베니아	1997
우리나라	1977	호주	2000
멕시코	1980	라트비아	1995

자료: OECD, Consumption Tax Trends 2016, 2016



(4) OECD 국가의 부가가치세 세율구조

(단위: %)

국가	표준세율/단일세율	경감세율	특정지역의 세율
호 주	10,0	0,0	-
오스트리아	20,0	10,0/13,0	19,00
벨기에	21,0	0,0/6,0/12,0	-
캐나다	5,0	0,0	13,0/14,0/15,0
칠레	19,0	-	-
체코	21,0	10,0/15,0	-
덴마크	25,0	0,0	-
에스토니아	20,0	0,0/9,0	-
핀란드	24,0	0,0/10,0/14,0	-
프랑스	20,0	2,1/5,5/10,0	0,9/2,1/10,0/13,0 & 1,05/1,75/2,1/8,5
독일	19,0	7,0	-
그리스	23,0	6,0/13,0	4,0/ 9,0/16,0
헝가리	27,0	5,0/18,0	-
아이슬란드	24,0	0,0/11,0	-
아일랜드	23,0	0,0/4,8/9,0/13,5	-
이스라엘	17,0	0,0	0,0
이탈리아	22,0	4,0/5,0/10,0	-
일본	8,0	-	-
우리나라	10,0	0	-
라트비아	21,0	0,0/12,0	-
룩셈부르크	17,0	3,0/8,0/14,0	-
멕시코	16,0	0,0	-
네덜란드	21,0	6	-
뉴질랜드	15,0	0,0	-
노르웨이	25,0	0,0/10,0/15,0	-
폴란드	23,0	5,0/8,0	-
포르투갈	23,0	6,0/13,0	4,0/9,0/18,0&5,0/12,0/22,0
슬로바키아	20,0	10	-
슬로베니아	22,0	9,5	-
스페인	21,0	4,0/10,0	0,0/2,75/3,0/7,0/9,5/13,5/20,0 & 0,5/10,0
스웨덴	25,0	0,0/6,0/12,0	-
스위스	8,0	0,0/2,5/3,8	-
터키	18,0	1,0/8,0	-
영국	20,0	0,0/5,0	-

자료: OECD, Consumption Tax Trends 2016, 2016.

(5) 우리나라와 OECD 국가의 면세대상 비교

구분	면세대상
OECD 표준면세대상	우편서비스, 환자수송, 병원 및 의료, 치과의료, 자선활동, 교육, 비영리 조직의 비상업적 활동, 스포츠, 문화서비스(라디오, TV방송제외), 보험 및 재보험, 동산 임대, 금융서비스, 마권·복권 및 도박, 토지 및 건물공급, 일부 기금모금행사
우리나라 면세대상	미가공식료품, 농·축·수·임산물, 수돗물, 연탄, 무연탄, 여객운송용역, 의료보건용역, 교육용역, 보험용역, 문화관련 재화 및 용역, 예술창작품, 문화행사, 비직업운동경기, 도서관·박물관·동물원 등의 입장 관련 재화 및 용역, 토지·금융용역, 근로 유사 인적용역, 독립된 자격으로 공급하는 인적용역,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재화와 용역, 정부업무 대행단체 등이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 국민주택, 건설용역, 특수용도 유류, 공장·광산·건설사업장 및 학교 구내식당 음식용역, 수입 문화 관련 재화, 국외로부터의 공익기증재화, 특수용도 면세재화, 면세에 부수되는 재화와 용역의 공급

자료: 정유석, “국제비교를 통한 현행 부가가치세제의 개선방안 - 면세범위와 세율체계를 중심으로”, 「국제회계 연구」 제46집, 2012. 12.



(6) 우리나라·EU 및 OECD 국가의 면세대상 비교

구 분	OECD	EU	우리나라	
기초생활품	미가공식료품	과세	자율과세	면세
	가공식료품	과세	자율과세	과세
	수도	과세	자율과세	면세
	연탄 및 무연탄	과세	과세	면세
	여객운송	과세	자율과세	면세 (일부과세)
	주택임대	면세	면세	면세
	국민후생 문화관련	건강증진 의료	면세	면세
미용 목적		과세	과세	과세
비영리교육		면세	면세	면세
영리교육		과세	과세	면세
도서 및 신문		과세	자율과세	면세
방송		과세	면세	면세
예술창작품		과세	과세	면세
도서관		면세	면세	면세
부가가치 생산요소	토지	면세	면세	면세
	금융 및 보험	면세	면세	면세
	인적용역	과세	과세	면세 (일부과세)
기 타	우표	면세	면세	면세
	담배	과세	과세	과세 (일부과세)
	공익단체	면세	면세	면세
	정부	과세	과세	면세 (일부과세)

자료: 한국조세연구원, 각국 조세제도, 한국조세연구원, 2011.

(7) 주요국의 경감세율 현황

국가별	표준세율	경감세율	초경감세율
벨 기 에	21%	0.0% / 6% / 12%	
불 가 리 아	20%	9%	
체 코	21%	10% / 15%	
독 일	19%	7%	
에스토니아	20%	0.0% / 9%	
그 리 스	23%	6.5% / 13%	4% / 9% / 16%
스 페 인	21%	4% / 10%	0.0% / 2.75% / 3.0% / 7.0% / 9.5% / 13.5% / 20.0% & 0.5% / 10.0%
프 랑 스	20%	2.1% / 5.5% / 10%	0.9% / 2.1% / 10% / 13% & 1.05% 1.75% / 2.1% / 8.5%
아 일 랜 드	23%	0.0% / 4.8% / 9% / 13.5%	
이 탈 리 아	22%	4% / 5% / 10%	4%
키 프 리 스	19%	0.0% / 5% / 9%	
라 트 비 아	21%	12%	
리투아니아	21%	5% / 9%	
룩셈부르크	17%	3% / 8% / 14%	
헝 가 리	27%	5% / 18%	
말 타	18%	5% / 7%	
네 덜 란 드	21%	6%	
오스트리아	20%	10% / 12%	19%
폴 란 드	23%	0.0% / 5% / 8%	
포 르 투 갈	23%	6% / 13%	5% / 10% / 18% & 5% / 12% / 22%
루 마 니 아	20%	5% / 9%	
슬로베니아	22%	9.5%	
슬로바키아	20%	10%	
핀 란 드	24%	0.0% / 10% / 14%	
스 웨 덴	25%	0.0% / 6% / 12%	
영 국	20%	0.0% / 5%	
스 위 스	8%	2.5% / 3.8%	

자료: EU, List of VAT Rates Applied in the Member States of the European Union, 2016.



(8) OECD 국가들의 부가가치세 표준세율 변화추이: 2009~2016년

(단위: %)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변동 유무
호 주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유지
오스트리아	20,0	20,0	20,0	20,0	20,0	20,0	20,0	20,0	유지
벨기에	21,0	21,0	21,0	21,0	21,0	21,0	21,0	21,0	유지
캐나다	5,0	5,0	5,0	5,0	5,0	5,0	5,0	5,0	유지
칠레	19,0	19,0	19,0	19,0	19,0	19,0	19,0	19,0	유지
체코	19,0	20,0	20,0	20,0	21,0	21,0	21,0	21,0	인상
덴마크	25,0	25,0	25,0	25,0	25,0	25,0	25,0	25,0	유지
에스토니아	18,0	20,0	20,0	20,0	20,0	20,0	20,0	20,0	인상
핀란드	22,0	22,0	23,0	23,0	24,0	24,0	24,0	24,0	인상
프랑스	19,6	19,6	19,6	19,6	19,6	20,0	20,0	20,0	인상
독일	19,0	19,0	19,0	19,0	19,0	19,0	19,0	19,0	유지
그리스	19,0	19,0	23,0	23,0	23,0	23,0	23,0	23,0	인상
헝가리	20,0	25,0	25,0	27,0	27,0	27,0	27,0	27,0	인상
아이슬란드	24,5	25,5	25,5	25,5	25,5	25,5	24,0	24,0	인하
아일랜드	21,5	21,0	21,0	23,0	23,0	23,0	23,0	23,0	인상
이스라엘	15,5	16,0	16,0	16,0	17,0	17,0	18,0	17,0	인상
이탈리아	20,0	20,0	20,0	21,0	21,0	22,0	22,0	22,0	인상
일본	5,0	5,0	5,0	5,0	5,0	5,0	8,0	8,0	인상
우리나라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유지
라트비아	21,0	21,0	22,0	22,0	21,0	21,0	21,0	21,0	유지
룩셈부르크	15,0	15,0	15,0	15,0	15,0	15,0	17,0	17,0	인상
멕시코	15,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인상
네덜란드	19,0	19,0	19,0	19,0	21,0	21,0	21,0	21,0	인상
뉴질랜드	12,5	12,5	15,0	15,0	15,0	15,0	15,0	15,0	인상
노르웨이	25,0	25,0	25,0	25,0	25,0	25,0	25,0	25,0	유지
폴란드	22,0	22,0	23,0	23,0	23,0	23,0	23,0	23,0	인상
포르투갈	20,0	20,0	23,0	23,0	23,0	23,0	23,0	23,0	인상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변동 유무
슬로바키아	19,0	19,0	20,0	20,0	20,0	20,0	20,0	20,0	인상
슬로베니아	20,0	20,0	20,0	20,0	20,0	22,0	22,0	22,0	인상
스 페 인	16,0	16,0	18,0	18,0	21,0	21,0	21,0	21,0	인상
스 웨 덴	25,0	25,0	25,0	25,0	25,0	25,0	25,0	25,0	유지
스 위 스	7,6	7,6	8,0	8,0	8,0	8,0	8,0	8,0	인상
터 키	18,0	18,0	18,0	18,0	18,0	18,0	18,0	18,0	유지
영 국	15,0	17,5	20,0	20,0	20,0	20,0	20,0	20,0	인상
미 국	-	-	-	-	-	-	-	-	-
OECD평균	17,6	18,0	18,5	18,7	18,9	19,0	19,2	19,2	

주: 변동유무는 2009년 대비 2016년 현재의 변동유무를 나타냄

자료: OECD, Consumption Tax Trends 2016, 2016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정리



IV. 지방세



IV. 지방세

(1) 지방세 세목별 징수 현황

(단위: 억원, %)

세목	2014년	2015	증감액	증감률
총 징수액	617,250	709,778	92,528	15.0
취득세	163,912	208,103	44,191	27.0
지방소득세	97,169	127,844	30,675	31.6
재산세	87,801	92,937	5,136	5.8
지동차세	69,201	70,721	1,520	2.2
지방소비세	58,357	60,027	1,670	2.9
지방교육세	54,549	58,149	3,600	6.6
담배소비세	29,528	30,350	822	2.8
등록면허세	14,851	18,313	3,462	23.3
주민세	13,885	15,015	1,130	8.1
지역자원시설세	11,379	13,514	2,135	18.8
레저세	10,729	10,889	160	1.5
과년도 수입	5,889	3,916	-1,973	-33.5

자료: 행정자치부, 「2016 지방세통계연감」, 2016.

(2) 지방세 비과세·감면율 현황: 2011~2015년

(단위: 억원, %)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징수액	523,001	539,381	537,789	617,250	709,778
비과세·감면액	173,319	154,286	160,760	130,029	130,123
비과세·감면율	24.9	22.2	23.0	17.4	15.5

주: 비과세·감면율=비과세·감면액/(징수액+비과세·감면액)×100.

자료: 행정자치부, 「2016 지방세통계연감」, 2016.

**(3) 지방세 세목별 비과세·감면액 현황: 2011~2015년**

(단위: 억원 %)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합계	173,319(100)	154,286(100)	160,760(100)	130,029(100)	130,123(100)
취득세	106,371(61.4)	84,518(54.8)	93,003(57.9)	56,942(43.8)	53,054(40.8)
재산세	42,746(24.7)	45,313(29.4)	47,080(29.3)	48,198(37.1)	48,417(37.2)
담배소비세	13,380(7.7)	13,704(8.9)	9,894(6.2)	12,231(9.4)	16,642(12.8)
자동차세	6,534(3.8)	6,499(4.2)	6,624(4.1)	6,779(5.2)	5,260(4.0)
등록면허세	1,106(0.6)	1,141(0.7)	843(0.5)	2,487(1.9)	3,524(2.7)
주민세	451(0.3)	408(0.3)	438(0.3)	1,993(1.5)	1,862(1.4)
지역자원 시설세	992(0.6)	1,074(0.7)	1,107(0.7)	1,218(0.9)	1,234(0.9)
레저세	55(0.0)	58(0.0)	123(0.1)	109(0.1)	121(0.1)
지방교육세	3(0.0)	-	-	7(0.0)	2(0.0)
지방소득세	1,607(0.9)	1,569(1.0)	1,648(1.0)	66(0.1)	7(0.0)
도시계획세	74(0.0)	2(0.0)	-	-	-

주: ()안은 비중임.

자료: 행정자치부, 「2016 지방세통계연감」, 2016.

(4) 지방세 근거법률별·세목별 비과세·감면액 현황: 2015년 기준

(단위: 억원, %)

구분	합계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감면조례	조세특례제한법	기타
합계	130,123	68,256	55,605	1,452	4,528	282
취득세	53,054	12,536	37,651	1,045	1,553	270
재산세	48,417	36,617	11,405	165	231	0
담배소비세	16,642	16,642	-	-	-	-
자동차세	5,260	685	1,738	102	2,734	0
등록면허세	3,524	78	3,429	15	2	-
주민세	1,862	1,004	845	1	-	12
지역자원시설세	1,234	696	537	0.4	0.4	-
레저세	121	-	-	121	-	-
지방교육세	2	-	-	1	1	-
지방소득세	7	-	0	0	6	0
도시계획세	0	-	-	0	-	0

자료: 행정자치부, 「2016 지방세통계연감」, 2016.



(5) OECD 국가(연방형, 지역형 국가)의 과세주체별 비중 현황

(단위: %)

국가명	연방정부(국세)			주정부(지방세)			기초정부(지방세)			사회보장기여금		
	1975	1995	2014	1975	1995	2014	1975	1995	2014	1975	1995	2014
호주	80.1	77.5	80.0	15.7	19.0	16.5	4.2	3.4	3.5	0.0	0.0	0.0
오스트리아	51.7	64.8	66.5	10.6	1.8	1.6	12.4	4.1	3.2	25.3	29.3	28.5
벨기에	65.3	60.1	57.4	-	1.8	5.3	4.4	4.8	4.6	28.8	32.2	31.9
캐나다	47.6	39.1	41.4	32.5	37.1	39.1	9.9	9.8	10.3	10.0	14.0	9.2
독일	33.5	31.4	31.2	22.3	21.6	22.0	9.0	7.4	8.2	34.0	39.0	38.1
멕시코	-	73.9	73.3	-	2.8	4.4	-	1.5	1.6	-	21.8	20.6
스위스	30.7	31.6	35.2	27.0	23.8	24.7	20.3	17.6	15.3	22.0	27.0	24.9
미국	45.4	41.4	42.1	19.5	20.0	19.7	14.7	13.3	14.1	20.5	25.2	24.1
연방형 평균	50.6	52.5	53.4	21.3	16.0	16.7	10.7	7.7	7.6	20.1	23.6	22.2
스페인(지역형)	48.2	50.4	42.3	-	4.8	13.6	4.3	8.5	10.0	47.5	35.8	33.6

자료: OECD, REVENUE STATISTICS 1965-2015, 2016.

(6) OECD 국가(단일형 국가)의 과세주체별 비중 현황

(단위: %)

국가명	중앙정부(국세)			지방정부(지방세)			사회보장기여금		
	1975	1995	2014	1975	1995	2014	1975	1995	2014
칠레	-	89.9	86.7	-	6.5	7.6	-	3.6	5.8
체코	-	57.7	54.5	-	0.9	1.2	-	41.4	43.8
덴마크	68.9	68.2	74.6	30.0	31.3	25.0	0.1	0.0	0.1
에스토니아	-	84.3	82.0	-	0.8	1.1	-	14.9	16.5
핀란드	56.0	46.6	47.4	23.5	22.3	23.5	20.4	30.8	28.9
프랑스	51.2	42.3	33.1	7.6	11.0	13.0	40.6	46.3	53.7
그리스	67.1	66.8	68.6	3.4	0.9	3.0	29.5	31.7	28.2
헝가리	-	63.8	60.8	-	2.5	5.7	-	33.6	33.2
아이슬란드	81.3	79.2	75.5	18.7	20.8	24.5	0.0	0.0	0.0
아일랜드	77.4	83.1	82.4	7.3	2.7	2.8	13.1	12.7	14.3
이스라엘	-	79.7	75.6	-	6.4	8.0	-	13.9	16.4
이탈리아	53.2	62.7	53.4	0.9	5.4	16.5	45.9	31.5	29.8
일본	45.4	41.2	36.9	25.6	25.3	23.5	29.0	33.5	39.7
우리나라	89.0	69.2	56.2	10.1	18.7	16.9	0.9	12.1	26.9

국가명	중앙정부(국세)			지방정부(지방세)			사회보장기여금		
	1975	1995	2014	1975	1995	2014	1975	1995	2014
라트비아	-	43.5	50.8	-	19.5	19.5	-	36.9	29.1
룩셈부르크	63.6	66.5	68.8	6.7	6.5	3.3	29.0	26.6	27.8
네덜란드	58.9	56.0	55.6	1.2	3.1	3.8	38.4	39.5	39.6
뉴질랜드	92.3	94.7	93.3	7.7	5.3	6.7	0.0	0.0	0.0
노르웨이	50.6	58.4	86.1	22.4	19.6	13.9	27.0	22.0	0.0
폴란드	-	61.9	48.2	-	8.3	13.4	-	29.8	38.1
포르투갈	65.4	72.3	67.8	0.0	5.4	7.2	34.6	21.5	24.7
슬로바키아	-	62.5	54.6	-	1.3	2.7	-	36.2	42.1
슬로베니아	-	51.8	50.0	-	6.3	10.6	-	41.9	39.0
스웨덴	51.3	46.9	50.0	29.2	30.9	36.9	19.5	21.8	12.7
터키	-	75.1	62.0	-	12.8	9.4	-	12.1	28.5
영국	70.5	77.5	75.8	11.1	3.7	5.0	17.5	17.8	18.7
단일형 평균	65.1	65.5	63.5	12.8	10.7	11.7	21.6	23.5	24.5

자료: OECD, REVENUE STATISTICS 1965-2015, 2016.

(7) OECD 국가(연방형 국가)의 주정부 지방세 세원별 비중 현황: 2014년 기준

(단위: %)

국가명	소득과세	재산과세	소비과세	기타과세
호주	0.0	40.0	29.8	30.2
오스트리아	46.3	2.0	15.8	35.9
벨기에	0.0	72.3	27.1	0.6
캐나다	48.1	4.4	36.6	10.9
독일	53.9	6.3	39.7	0.1
멕시코	0.0	16.8	20.9	62.3
스위스	78.6	14.4	6.5	0.5
미국	41.7	2.1	56.1	0.1
연방형 평균	33.6	19.8	29.1	17.5
스페인(지역형)	67.4	19.9	11.7	1.0

자료: OECD, REVENUE STATISTICS 1965-2015, 2016.

**(8) OECD 국가(연방형 국가)의 지방정부 지방세 세원별 비중 현황: 2014년 기준**

(단위: %)

국가명	소득과세	재산과세	소비과세	기타과세
호주	0.0	100.0	0.0	0.0
오스트리아	0.0	14.6	9.6	75.8
벨기에	30.9	60.6	8.2	0.3
캐나다	0.0	97.2	1.7	1.1
독일	79.4	14.5	6.0	0.1
멕시코	0.0	83.5	3.0	13.5
스위스	82.8	14.7	0.4	2.1
미국	6.1	70.7	23.2	0.0
연방형 평균	24.9	57.0	6.5	11.6
스페인(지역형)	17.9	42.9	34.2	5.0

자료: OECD, REVENUE STATISTICS 1965-2015, 2016.

(9) OECD 국가(단일형 국가)의 지방세 세원별 비중 현황: 2014년 기준

(단위: %)

국가명	소득과세	재산과세	소비과세	기타과세
칠레	0.0	41.3	58.6	0.1
체코	0.0	55.0	45.0	0.0
덴마크	88.7	11.3	0.0	0.0
에스토니아	0.0	85.1	14.9	0.0
핀란드	92.8	7.1	0.0	0.1
프랑스	0.0	51.8	23.6	24.6
그리스	0.0	93.6	6.5	0.0
헝가리	0.0	19.5	80.5	0.0
아이슬란드	82.3	17.0	0.8	0.0
아일랜드	0.0	91.5	0.0	8.5
이스라엘	0.0	95.0	5.0	0.0
이탈리아	24.7	20.2	20.1	35.0
일본	51.5	28.2	19.2	1.1
우리나라	16.0	45.3	27.2	11.5
라트비아	84.3	14.4	1.3	0.0
룩셈부르크	89.1	9.1	1.5	0.3
네덜란드	0.0	51.8	48.2	0.0
뉴질랜드	0.0	90.3	9.6	0.1
노르웨이	87.5	11.2	1.3	0.0
폴란드	56.7	32.4	5.3	5.6
포르투갈	27.1	45.2	26.0	1.7
슬로바키아	0.0	51.3	25.5	23.2
슬로베니아	77.9	15.8	6.4	0.0
스웨덴	97.5	2.5	0.0	0.0
터키	26.0	14.8	50.2	9.0
영국	0.0	100.0	0.0	0.0
단일형 평균	34.7	42.3	18.3	4.7

자료: OECD, REVENUE STATISTICS 1965-2015, 2016.



(10) OECD 국가의 지방세 세원별 비중 현황: 2014년 기준

(단위: %)

	소득과세	재산과세	소비과세	기타과세
미국	26.8	30.8	42.4	0.0
영국	0.0	100.0	0.0	0.0
터키	26.0	14.8	50.2	9.0
스위스	80.2	14.5	4.2	1.1
스웨덴	97.5	2.5	0.0	0.0
스페인	46.4	29.6	21.3	2.7
슬로베니아	77.9	15.8	6.3	0.0
슬로바키아	0.0	51.3	48.7	0.0
포르투갈	27.1	45.2	26.0	1.7
폴란드	56.7	32.4	5.3	5.6
노르웨이	87.5	11.2	1.3	0.0
뉴질랜드	0.0	90.3	9.7	0.0
네덜란드	0.0	51.8	48.2	0.0
멕시코	0.0	34.9	16.0	49.1
룩셈부르크	89.1	9.1	1.5	0.3
라트비아	84.3	14.4	1.3	0.0
우리나라	16.0	45.3	27.2	11.5
일본	51.5	28.2	19.2	1.1
이탈리아	24.7	20.2	29.0	26.1
이스라엘	0.0	95.0	5.0	0.0
아일랜드	0.0	91.5	0.0	8.5
아이슬란드	82.3	17.0	0.8	0.0
헝가리	0.0	19.5	80.5	0.0
그리스	0.0	93.6	6.4	0.0
독일	60.9	8.5	30.6	0.0
프랑스	0.0	51.8	23.5	24.7
핀란드	92.8	7.1	0.0	0.1
에스토니아	0.0	85.1	14.9	0.0
덴마크	88.7	11.3	0.0	0.0

	소득과세	재산과세	소비과세	기타과세
체코	0,0	55,0	45,0	0,0
칠레	0,0	41,3	58,7	0,0
캐나다	38,1	23,8	29,3	8,8
벨기에	14,4	66,9	18,3	0,4
오스트리아	15,4	10,4	11,6	62,6
호주	0,0	50,6	24,5	24,9
OECD 평균	33,8	39,2	20,2	6,8

자료: OECD, REVENUE STATISTICS 1965-2015, 2016.



V. 조세지출



V. 조세지출

(1) 국세감면액과 지방세감면액 추이: 1980~2017년

1) 표

(단위: 억원)

	국세			지방세		
	징수액 (A)	감면액 (B)	감면율 [B/(A+B)]	징수액 (C)	감면액 (D)	감면율 [D/(C+D)]
1980	58,077	n/a	n/a	7,677	1,084	12.4%
1981	72,579	5,767	7.4%	9,144	1,379	13.1%
1982	83,965	6,860	7.6%	11,192	1,240	10.0%
1983	100,507	6,425	6.0%	13,972	1,727	11.0%
1984	108,997	7,271	6.3%	15,084	1,506	9.1%
1985	118,764	10,110	7.8%	16,546	1,400	7.8%
1986	136,063	13,645	9.1%	18,098	1,408	7.2%
1987	163,437	19,272	10.5%	21,923	1,346	5.8%
1988	194,842	21,295	9.9%	31,000	2,245	6.8%
1989	212,341	23,895	10.1%	49,608	3,996	7.5%
1990	268,474	29,722	10.0%	63,674	4,021	5.9%
1991	303,198	32,167	9.6%	80,351	5,438	6.3%
1992	352,184	n/a	n/a	94,622	15,880	14.4%
1993	392,606	n/a	n/a	110,261	15,549	12.4%
1994	472,617	n/a	n/a	132,309	15,206	10.3%
1995	567,745	n/a	n/a	153,160	14,890	8.9%
1996	649,602	n/a	n/a	173,947	15,508	8.2%
1997	699,277	n/a	n/a	184,057	18,039	8.9%
1998	677,977	77,305	10.2%	171,497	20,204	10.5%
1999	756,580	105,418	12.2%	185,861	21,170	10.2%
2000	929,347	132,824	12.5%	206,006	23,436	10.2%
2001	957,928	137,298	12.5%	266,649	27,683	9.4%
2002	1,039,678	147,261	12.4%	315,257	32,419	9.3%
2003	1,146,642	175,080	13.2%	331,329	26,726	7.5%
2004	1,177,957	182,862	13.4%	342,017	32,150	8.6%
2005	1,274,657	200,169	13.6%	359,774	35,337	8.9%
2006	1,380,443	213,380	13.4%	412,937	80,678	16.3%
2007	1,614,591	229,652	12.5%	435,243	97,266	18.3%



(단위: 억원)

	국세			지방세		
	징수액 (A)	감면액 (B)	감면율 [B/(A+B)]	징수액 (C)	감면액 (D)	감면율 [D/(C+D)]
2008	1,673,060	287,827	14.7%	454,797	113,046	19.9%
2009	1,645,407	310,621	15.9%	451,678	150,269	25.0%
2010	1,777,184	299,997	14.4%	491,598	148,100	23.2%
2011	1,923,812	296,021	13.3%	523,001	173,320	24.9%
2012	2,030,149	333,809	14.1%	539,381	154,288	22.2%
2013	2,019,065	338,350	14.4%	537,789	160,740	23.0%
2014	2,055,198	343,383	14.3%	617,250	130,029	17.4%
2015	2,178,851	359,017	14.1%	709,778	130,123	18.3%
2016추정	2,327,390	365,077	13.6%	-	-	-
2017추정	2,418,439	370,386	13.3%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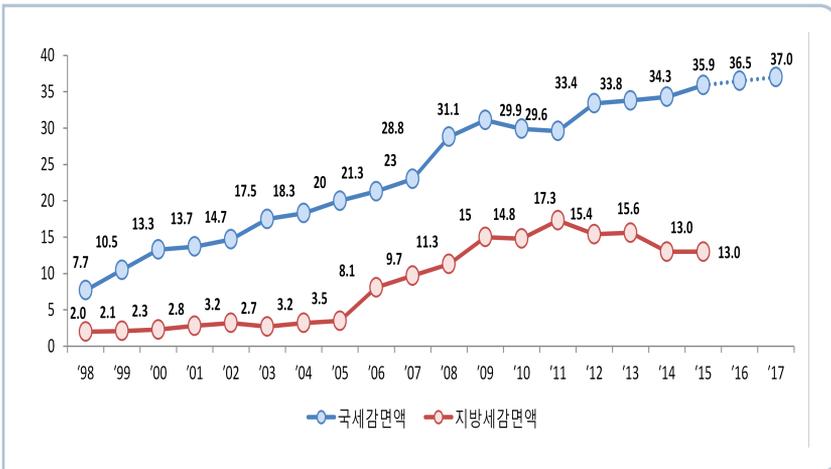
주: 1) 국세의 경우, 1981~1991년 국세감면액은 김명숙(1994)·임주영(1997)을, 1998~2017년 국세감면액은 조세지출보고서와 조세지출예산서를 각각 참고하여 작성

2) 지방세의 경우, 지방세통계연보(舊 지방세정연감)를 참고하여 작성

자료: 조세지출예산서(舊 조세지출보고서), 김명숙(1994), 임주영(1997), 지방세통계연감(지방세정연감), 국가 통계포털 자료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2) 그림

(단위: 조원)



주: 국세감면액의 경우, 2012년 이후 기준에는 집계되지 않던 조세지출 4개항목이 추가됨에 따라 크게 증가하였으며, 2016~2017년은 전망치임

자료: 조세지출예산서(조세지출보고서), 지방세통계연감(지방세정연감); 국회예산정책처 분석

(2) 총 재정지출 대비 조세지출 비중(최근 기준): 2010~2017년

(단위: 조원)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전망	2017 전망	연평균 증가율 ²⁾
조세지출액 ¹⁾ (A)	30,0	29,6	33,4	33,8	34,3	35,9	36,5	37,0	3,0%
재정지출액 ²⁾ (B)	292,8	309,1	325,4	349,0	355,8	384,7	398,5	400,5	4,6%
합 계 (C = B+C)	322,8	338,7	358,8	382,8	390,1	420,6	435,0	437,5	4,4%
총 재정지출 대비 조세지출액 비중 (A/C)	9,3%	8,7%	9,3%	8,8%	8,8%	8,5%	8,4%	8,5%	

주: 1) 2008~2011년 조세지출액(국세감면액은 기존 조세지출예산서에 발표된 수치에 2012년부터 새롭게 추가된 조세지출 4개 항목의 조세지출액(NABO 추계치)을 반영하여 계산

2) 연평균증가율은 2010~2017년 기준으로 계산

자료: 연도별 「조세지출예산서(조세지출보고서)」 자료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3) 예산분류기준별 조세지출액 및 재정지출액: 2017년

(단위: 조원 %)

	조세지출액		재정지출액		합계		합계 대비 조세지출액 비중 (A/C)
	(A)	전체 대비	(B)	전체 대비	(C= A+B)	전체 대비	
일반공공행정	2,3	6,3	63,3	15,8	65,6	15,0	3,6
공공질서 및 안전	—	0,0	18,1	4,5	18,1	4,1	0,0
외교·통일	0,0	0,0	4,6	1,1	4,6	1,1	0,0
국방	0,7	2,0	40,3	10,1	41,0	9,4	1,8
교육	1,3	3,4	57,4	14,3	58,7	13,4	2,2
문화 및 관광	0,0	0,0	6,9	1,7	6,9	1,6	0,0
환경	0,6	1,7	6,9	1,7	7,5	1,7	8,5
사회복지·보건 ①	14,6	39,5	129,5	32,3	144,1	32,9	10,1
농림수산 ②	4,9	13,4	19,6	4,9	24,5	5,6	20,2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③	10,6	28,8	16,0	4,0	26,6	6,1	40,0
교통·물류 및 SOC	1,8	4,9	22,1	5,5	23,9	5,5	7,5
과학기술	0	0,0	19,5	4,9	19,5	4,5	0,0
합 계	37,0	100,0	400,5	100,0	437,5	100,0	8,5
주요항목 ①~③	30,2	81,6	165,1	41,2	195,3	44,6	15,5

주: 재정지출액의 경우, R&D 분야는 '과학기술'로, SOC 분야는 '교통 및 물류', '통신', '국토 및 지역개발'로, 보건·복지·고용 분야는 '사회복지', '보건'으로 분류

자료: 기획재정부 자료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4) 조세지출 주요항목 현황: 2017년도 조세지출예산서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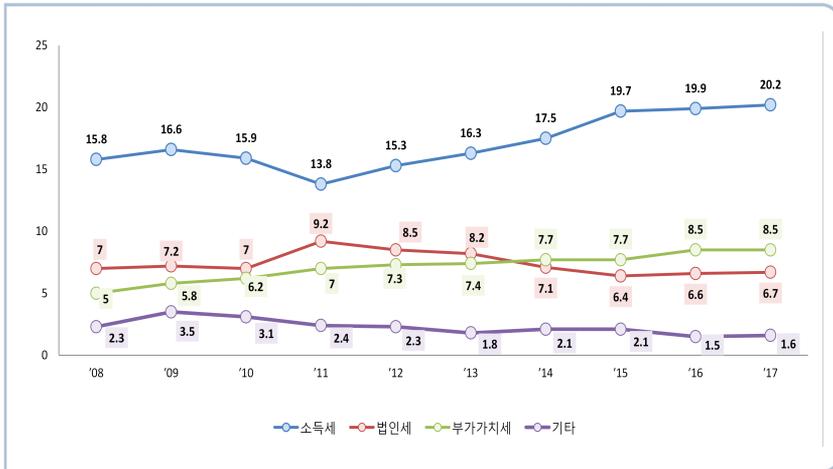
예산분류	세부 항목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10.6조원)	농·수산물 등 의제매입세액공제(2조 5,172억원)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2조 1,404억원)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1조 9,190억원) 신용카드 등 사용에 따른 부가가치세 세액공제(1조 6,273억원)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8,721억원) 등
사회복지·보건 (14.6조원)	국민연금보험료 공제(2조 4,752억원) 연금보험료 소득공제(1조 8,041억원) 자녀세액공제(1조 3,598억원) 근로장려금 지급(1조 2,452억원) 연금계좌세액공제(1조 859억원) 의료비 특별공제(9,171억원) 국민건강보험료 사용자부담금에 대한 비과세(9,023억원) 등 개인기부금 세액공제(7,347억원) 법인기부금 손금산입(6,215억원) 등
농림수산 (4.9조원)	농업·축산업·임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1조 5,762억원) 농·임·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9,022억원) 자경농지·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8,329억원) 조합 등 출자금 및 예탁금에 대한 과세특례(7,467억원) 등

주: 괄호 안의 숫자는 2017년 조세지출액 전망치임

자료: 2017년도 조세지출예산서 자료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5) 세목별 조세지출 규모: 2008~2017년

1) 그림



주: 2012년부터 조세지출 항목으로 추가된 4개 항목의 경우, 2008~2011년 자료는 행정부에서 최근 기준(항목 추가 등)을 반영한 조세지출액 규모를 발표하지 않아, 국세통계연보를 이용하여 NABO에서 추계 자료: 연도별 「조세지출예산서」, 국세통계연보; 국회예산정책처 분석



2) 표

(단위: 억원)

	'09	'10	'11	'12	'13	'14	'15	'16추정	'17추정
합계	329,881	322,806	323,095	333,809	338,350	343,383	359,017	365,077	370,336
직접세	237,945	229,808	230,657	238,800	246,599	246,976	261,981	265,754	270,210
소득세	165,843	159,040	137,844	152,943	163,345	174,904	196,896	198,973	202,442
법인세	71,767	70,491	92,043	84,862	82,237	70,902	63,790	66,010	66,830
상속·증여세	335	277	770	995	1,017	1,170	1,294	772	938
간접세	88,935	90,207	89,933	92,786	89,985	94,694	95,098	97,986	98,906
부가가치세	57,751	62,477	69,546	72,981	74,402	76,909	77,266	85,095	85,261
교통세	10,816	10,591	9,995	9,825	7,523	9,577	9,053	5,987	5,572
개별소비세	11,061	11,890	6,615	4,762	4,959	4,500	4,683	4,099	4,882
주세	425	450	483	570	636	588	790	593	691
인지세	98	37	45	53	54	77	76	61	65
증권거래세	4,670	472	56	1,655	87	200	391	97	102
교육세	4,114	4,290	3,193	2,940	2,324	2,843	2,838	2,054	2,333
관세	3,001	2,791	2,509	2,222	1,767	1,713	1,939	1,337	1,270

주: 2012년부터 조세지출 항목으로 추가된 4개 항목의 경우, 2008~2011년 자료는 행정부에서 최근 기준(항목 추가 등)을 반영한 조세지출액 규모를 발표하지 않아, 국세통계연보를 이용하여 추계
 자료: 연도별 「조세지출예산서」, 국세통계연보; 국회예산정책처 분석

(6) 조세지출 주요항목 현황

(단위: 억원)

	주요 항목	세목	규정	일몰	감면액
1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소득세(3%), 법인세(97%)	조특법§10	일부내역 2018년	28,158
2	보험료 특별소득공제 및 특별세액공제	소득세	소득법§59의4①	-	24,112
3	농수산물 등 의제매입세액공제	부가가치세	부가가치법§84①	-	21,980
4	신용카드 소득공제	소득세	조특법§126의2	2016년	17,889
5	국민연금보험료 소득공제	소득세	소득법§51의3	-	16,150
6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소득세(59%), 법인(45%)	조특법§7	2017년	16,000
7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에 부가가치세 영세율	부가가치세	조특법§105①5	2017년	14,514
8	신용카드 등 사용에 따른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부가가치세	부가가치법§46	2018년	14,188
10	8년이상 자경·축사용지 양도소득세 감면	소득세	조특법§69, 조특법§69의2	2018년 (축사 7년)	13,183
10	농임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면세유)	교통세(59%), 부가세(29%) 등	조특법§106의2①	2018년	13,152
11	자녀세액공제	소득세	소득법§59의2	-	12,784
12	교육비 특별공제	소득세	소득법§59의4③	-	11,531
13	근로장려금	소득세	조특법§100의2-26	-	10,625
14	연금저축 소득공제(연금계좌세액공제)	소득세	소득법§59의3	-	9,580
15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소득세(2%), 법인세(98%)	조특법§26	2017년	8,954
16	의료비 특별공제	소득세	소득법§59의4②	-	8,852
17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용자 부담금 비과세	소득세	소득법 23호 너목	-	8,154
18	조합 등 예탁금, 출자금 과세특례	소득세	조특법§85의 8②B	2018년	7,666
19	개인 기부금 특별공제	소득세	소득법§59의4④	-	7,031
20	자녀장려세제	소득세	조특법§100의27-31	-	6,555



(단위: 억원)

주요 항목		세목	규정	일몰	감면액
21	방위산업물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부가가치세	조특법§105①1	-	6,158
22	재활용폐자원 등 부가가치세 의제매입공제 특례	부가가치세	조특법§108	2018년	6,135
23	법인 기부금의 손금산입	법인세	법인법§25	-	4,917
24	경로우대자 추가 공제	소득세	소득법§51	-	3,869
25	비과세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	소득세	조특법§88의2	2019년	3,647
26	도시철도 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부가가치세	조특법§105	2018년	2,734
27	장애인 추가공제	소득세	소득법§51①2	-	2,699
28	무주택근로자에 대한 주택자금 특별공제	소득세	소득법§52④⑤	-	2,498
29	장애인 환자수송, 영업용 승용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개별소비세	개소법§18①3	2018년	2,315
30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부가가치세	조특법§106의7	2018년	1,875
전체 조세지출액		소득세 (17개)	법인세 (4개)	부가가치세 (7개)	기타 (2개)
359,017 (100.0%)		166,769 (54.2%)	58,119 (18.9%)	67,594 (21.9%)	15,467 (5.0%)
상위 30개 항목					
307,949 (85.8%)					

주: 1) 감면액은 「2017년도 조세지출예산서」의 2015년도 실적액

2) 괄호() 안은 전체 조세지출액 대비 비중(%)임

자료: 「2017년도 조세지출예산서」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7) 조세지출 상위 30개 항목의 감면액 규모 추이: 2002~2017년

(단위: 억원)

주요 항목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1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6,867	11,597	9,444	9,782	9,478	14,080
2 보험료 특별소득공제 및 특별세액공제	7,889	8,443	11,554	13,492	13,791	15,771
3 농수산물 등 의제매입세액공제	n/a	n/a	n/a	n/a	n/a	n/a
4 신용카드 소득공제	6,223	8,308	8,966	9,812	10,465	12,506
5 국민연금보험료 소득공제	n/a	n/a	n/a	n/a	n/a	n/a
6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7,234	9,094	9,356	4,914	9,003	10,215
7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에 부가가치세 영세율	7,882	7,475	8,763	10,292	11,606	13,627
8 신용카드 등 사용에 따른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7,546	7,748	5,435	4,991	5,893	6,992
10 8년이상 자경농지, 축사용지 양도소득세 감면	1,630	3,840	4,677	4,448	7,737	9,915
10 농임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면세유)	12,083	13,200	14,488	14,487	17,779	18,976
11 자녀세액공제	141	141	146	2,444	2,445	3,335
12 교육비 특별공제	5,357	5,100	6,577	7,804	8,036	8,812
13 근로장려금	n/a	n/a	n/a	n/a	n/a	n/a
14 연금저축 소득공제(연금저축세액공제)						
15 임시/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6,528	13,019	18,134	25,439	20,681	18,247
16 의료비 특별공제	2,524	2,768	3,315	3,799	3,974	3,972
17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용자 부담금 부과세	5,324	6,604	4,833	6,012	6,742	4,020
18 조합 등 예탁금, 출자금 과세특례	3,323	3,242	2,622	2,154	2,769	n/a
19 개인 기부금 특별공제	4,022	4,702	4,448	5,067	5,045	6,054
20 자녀장려세제						
21 방위산업물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2,938	2,175	2,697	2,266	1,956	2,111
22 재활용폐자원 등 부가가치세 의제매입공제 특례	3,045	3,497	4,464	5,018	5,846	5,243
23 법인 기부금의 손금산입	3,551	4,083	4,530	5,295	5,390	6,670
24 경로우대자 추가 공제	1,706	3,533	3,880	4,113	4,318	7,567
25 부과세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	776	595	770	940	1,175	n/a
26 도시철도 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1,607	3,309	2,784	2,010	1,504	2,531
27 장애인 추가공제	343	587	717	665	1,563	2,678
28 무주택근로자에 대한 주택자금 특별공제	1,208	1,134	1,538	2,225	2,687	3,487
29 장애인, 환자수송, 영업용 승용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402	336	489	427	1,582	544
30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도입	759	767	782
30개 항목 감면액 합계	100,149	124,530	134,627	148,655	162,232	178,135

자료: 연도별 「조세지출예산서(조세지출보고서)」 자료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단위: 억원)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추정)	2017 (추정)	연평균 증가율
1	16,460	15,535	18,571	23,341	25,567	28,850	27,860	28,158	20,802	21,404	7.9%
2	20,285	21,269	20,268	18,259	19,087	21,569	24,139	24,112	25,210	24,752	7.9%
3	n/a	n/a	n/a	n/a	20,691	22,490	20,550	21,990	24,409	25,172	4.0%
4	15,171	18,934	18,405	11,729	11,697	13,720	15,708	17,889	19,383	18,891	7.7%
5	n/a	n/a	n/a	n/a	11,890	13,632	14,913	16,150	17,094	18,041	8.7%
6	12,239	12,793	11,978	10,953	12,829	12,640	13,812	16,090	18,205	19,190	6.7%
7	15,198	15,814	14,117	14,117	14,136	13,155	15,717	14,514	14,933	15,762	4.7%
8	8,451	10,036	12,325	13,831	14,405	13,667	13,888	14,188	15,883	16,273	5.3%
9	9,992	18,779	16,542	13,107	12,569	12,757	13,618	13,183	8,262	8,375	11.5%
10	14,801	15,287	15,406	15,349	15,237	15,065	14,523	13,152	9,734	9,022	-1.9%
11	6,481	7,072	6,335	5,329	5,467	5,723	5,868	12,784	13,365	13,598	35.6%
12	11,001	12,299	12,749	11,773	10,736	10,393	10,803	11,531	11,289	11,312	5.1%
13	n/a	4,537	4,344	4,020	6,140	5,618	7,765	10,625	11,000	12,452	13.5%
14				도입	7,838	8,998	9,184	9,580	10,939	10,859	6.7%
15	21,148	20,032	17,700	27,371	21,243	17,727	11,349	8,954	8,580	8,721	1.9%
16	5,966	6,881	7,340	5,989	5,945	6,567	7,113	8,852	9,129	9,171	9.0%
17	4,929	5,708	5,563	6,224	7,593	8,648	8,459	8,154	8,858	9,023	3.6%
18	n/a	n/a	n/a	5,665	7,943	8,934	8,943	7,666	7,205	7,467	5.5%
19	8,516	7,818	7,958	8,758	8,774	9,447	9,865	7,031	7,703	7,347	4.1%
20							도입	6,555	6,250	6,033	-4.1%
21	2,354	2,769	2,322	2,055	2,192	2,131	6,297	6,158	6,523	6,910	5.9%
22	5,496	5,188	6,090	6,732	6,653	6,494	6,547	6,135	5,730	5,737	4.3%
23	6,540	6,398	6,080	8,421	8,512	9,861	6,944	4,917	5,930	6,215	3.8%
24	8,327	8,400	3,830	2,989	3,284	3,497	3,857	3,869	4,124	4,103	6.0%
25	n/a	n/a	n/a	3,992	4,290	4,434	4,100	3,647	3,367	3,484	10.5%
26	1,742	1,511	2,446	2,752	2,358	2,148	2,616	2,734	5,967	3,948	6.2%
27	3,196	3,412	3,227	2,814	2,390	2,461	2,557	2,699	2,814	2,881	15.2%
28	4,686	3,256	2,732	2,362	2,392	2,251	2,320	2,498	2,946	3,152	6.6%
29	691	291	2,720	2,251	2,684	2,257	2,578	2,315	1,565	2,279	12.3%
30	694	478	1,411	1,524	1,513	1,551	1,657	1,875	1,905	1,897	7.9%
합계	204,364	224,497	220,459	231,707	276,055	286,685	293,550	307,949	309,061	313,425	6.4%

자료: 연도별 「조세지출예산서(조세지출보고서)」 자료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8) 조세지출 일몰연도별 운용 현황

(단위: 개, 억원)

	누계 (A)	일몰 예정 항목				일몰 없는 항목(B)	합계 (A+B)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이후		
항목수	164	52	94	17	1	79	243
(추정곤란·실적無)	(67%)	(21%)	(39%)	(7%)	(-)	(33%)	(100%)
총 조세감면액	171,325	46,726	118,992	5,606	-	182,713	354,038
평균 감면액	1,045	899	1,266	330	-	2,313	1,457

주: 1) 동 자료는 「2016년도 조세지출예산서」를 기준으로 2015년 세법개정에 따른 조세지출제도 신설 및 폐지를 반영하였으며, 경과규정 항목(51개, 6,099억원은 집계에서 제외

2) 2014년 감면액 실적을 기준으로 집계

3) 추정이 곤란하거나 실적이 없는 항목들은 감면액을 0으로 처리

4) 세부항목에 일몰규정이 있는 조세지출의 경우에도 일몰항목으로 분류(기획재정부는 일몰 없는 항목으로 분류), 2016년의 경우 신용카드 부가가치세 세액공제(1.4조원)가, 2018년의 경우 R&D비용 세액공제(2.8조원),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1.4조원) 각각 포함, 이로 인해 기획재정부 집계자료와 차이가 발생

자료: 기획재정부 자료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9) 일몰연도별 조세지출 항목
1) 2017년 일몰도래 항목

(단위: 억원)

항목명	시행 연도	'15 실적	'16 전망	'17 전망
1.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	1977	98	94	99
2. 공장의 대도시 밖 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1977	1,58	1,28	0,34
3. 안전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1982	116	174	133
4.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1982	8,954	8,580	8,721
5.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1983	16,090	18,205	19,190
6. 법인 본사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데 따른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1986	0,16	1,14	1,56
7.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1987	56	43	46
8. 농·축산 임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1989	14,514	14,933	16,273
9. 조합법인(농협·수협·신협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1990	1,616	2,360	2,496
10. 수도권과밀억제권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1990	467	476	500
11.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주식 양도 차이 등에 대한 비과세	1996	16	28	29
12. 생산성향상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1997	1,787	4,675	2,437
13.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1997	66	134	125
14.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증권거래세 면제	1997	43	52	55
15. 농·어민이 직수입하는 농·축산·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1997	53	46	48
16. 창업자 등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1997	-	-	-
17. 문화접대비 손금산입 한도 확대	1998	추정근관	추정근관	추정근관
18. 신재생에너지 생산용기자재에 대한 관세 경감	1999	2,27	1,26	1,29
19. 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등 감면	2000	1,436	4,134	6,545
20. 환경오염방지물품 등에 대한 관세 감면	2001	0,24	-	-
21. 공동주택 관리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2001	추정근관	추정근관	추정근관
22.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골프장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 과세특례	2002	300	83	157
23. 농어촌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2004	-	-	-
24. 중소기업 최대주주 등의 주식 할증평가 적용특례	2005	추정근관	추정근관	추정근관
25.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	2007	274	249	273
26.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매수대상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2009	41	45	48

(단위: 억원)

항목명	시행 연도	'15 실적	'16 전망	'17 전망
27. 영유아용 기저귀와 분유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2009	-	-	18
28. 중소기업의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2009	1,00	1,00	1,00
29. 국가에 양도하는 산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2010	1,50	0,99	1,05
30. 임산물 중 목재펠릿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2011	추정공란	추정공란	추정공란
31. 전기시내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2012	-	-	-
32.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분할에 대한 과세특례	2012	760	891	934
33. 전기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2012	28	13	14
34. 특성화고 등 졸업자를 병역 이행 후 복직시킨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 공제	2013	0,01	0,01	0,01
35. 개인택시용 차량 구입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2013	-	-	-
36. 준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액감면	2014	-	-	-
37. 임대주택 부동산 투자회사의 현물 출자사에 대한 과세특례	2014	-	-	-
38.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과세특례	2014	0	0	0
39. 정비사업조합 취소에 따른 시공사 채권의 손급산입 신설	2014	-	-	-
40. 고배당기업 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배당소득증대세제)	2014	-	-	-
41. 경력단절 여성 재고용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2014	-	-	-
42. 금 현물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지급에 대한 과세특례	2014	0,73	-	0,24
43. 근로소득을 중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2014	-	183	192
44. 정규직근로자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2014	4	14	15
45. 청년고용증대세제	2015	신설	541	877
46. 해외주식 투자전문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과세특례	2015	신설	-	-
47. 온실가스 배축권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2015	신설	-	-
48. 기업 간 주식등의 교환에 대한 과세특례(재무구조개선계획)	2015	신설	추정공란	추정공란
49. 외국인 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사후환급	2016	-	신설	-
50.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2016	-	신설	-
51.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분할 등에 대한 과세특례	2016	-	신설	-
52. 중소·중견기업 설비투자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급산입 특례	2016	-	신설	-
2017년 일몰도래 52개 항목 감면액 합계		46,727	55,959	58,719

주: 1) 행정부의 조세지출예산서 개별 항목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으며, 2016년 세법개정 결과 반영
 2) 국회예산정책처는 세부항목에 일몰규정이 있는 조세지출은 이를 일몰 항목으로 분류하였으며, 이와 같은 항목별 집계방식에 따라 항목수와 감면액 규모는 기관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자료: 조세지출예산서 자료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2) 2018년 일몰도래 항목

(단위: 억원)

항목명	시행 연도	'15 실적	'16 전망	'17 전망
1. 산림개발소득에 대한 세액감면	1966	0,23	0,50	0,52
2. 농·어민 지원을 위한 인지세 면제	1970	60	47	50
3. 농·임·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	1972	13,152	9,734	9,022
4. 조합 등 출자금에 대한 과세특례, 조합 등 예탁금에 대한 과세특례	1976	7,666	7,205	7,467
5. 도·시·지방 자가발전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	1977	17	9	9
6.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1979	1,278	717	679
7. 도시철도 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1980	2,734	5,967	33,948
8. 주주 등의 자신양도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	1982	10,58	0,06	0,01
9.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1982	1,430	1,527	1,002
10.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면제	1982	188	139	146
11. 공장·학교 등의 급식용역제공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1983	추정근란	추정근란	추정근란
12.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1987	13,127	8,219	8,329
13.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1987	28	56	59
14.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면제 등	1990	317	264	275
15.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 면제 등	1990	123	227	237
16. 농·어업 경영 및 농·어업 작업의 대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1990	-	-	7
17. 중소기업 등 투자세액 공제	1991	383	478	396
18. 재활용폐자원 등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특례	1993	6,135	5,730	5,737
19. 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1994	247	343	359
20.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1994	1,670	1,697	2,013
21. 신용카드 등 사용에 따른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1994	14,188	15,883	16,273
22.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조특§10조①)	1994	28,158	20,802	21,404
23. 기술이전 및 취득액에 대한 과세특례	1994	14	2	9
24.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1994	1,509	1,464	1,120
25. 중소기업지원을 위한 증권거래세 면제(조특§117조①2호의 가목, 3,5,16,23,24)	1997	예산서 없음	예산서 없음	예산서 없음
26. 창업중소기업의 용자서류에 대한 인지세 면제	1997	16	14	15
27. 영어조합법인의 법인세 면제 등	1998	29	23	24
28. 금융기관의 자산·부채 인수에 따른 법인세 과세특례	1998	-	-	-
29. 재무구조개선계획 등에 따른 기업의 채무면제익에 대한 과세특례	1998	-	-	-
30. 주식 현물출자 또는 교환·이전에 의한 지주회사 설립 등에 과세특례	1999	107	95	81
31.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1999	17,889	19,383	18,891

(단위: 억원)

항목명	시행 연도	'15 실적	'16 전망	'17 전망
32. 천연가스(CNG) 시내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1999	282	192	201
33. 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2001	1,193	2,208	1,851
34.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한 과세특례	2001	-	-	-
35. 공장자동화 물품에 대한 관세 감면	2001	38	31	32
36. 연안운항여객 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	2001	512	494	517
37.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제주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 면제	2002	-	-	-
38.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제주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 면제	2002	-	-	-
39. 내국법인의 외국자회사 주식 등의 현물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2002	-	-	-
40. 제주투자진흥지구·자유무역지역 입주 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2002	59	22	24
41.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2002	46	15	16
42.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2005	1,875	1,905	1,897
43. 기업도시개발구역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2005	58	43	54
44. 합병에 따른 중복자산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제약업, 의료기기)	2006	-	-	-
45. 사업전환 중소기업 및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대한 세액감면(33의2)	2006	0.27	12	12
46. 사업전환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2006	-	-	-
47.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사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2007	41	34	22
48. 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의 과세특례	2007	8	9	9
49. 택시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 면제	2008	566	558	592
50. 경형자동차 연료에 대한 유류세 환급	2008	173	243	254
51. 제3자 물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2008	147	64	67
52. 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 등 공제	2008	305	329	354
53. 환경보전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2008	680	444	448
54.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 등에 따른 공장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2008	0.54	0.31	0.16
55. 부동산집합투자기구 등으로부터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2008	추장단	추장단	추장단
56.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2008	53	23	22
57.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2009	346	235	259
58. 내국법인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	2009	-	-	-
59. 고용유지 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2009	1.45	1.69	1.82
60.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2009	-	-	-
61. 신용회복목적회사에 대한 과세특례	2010	6	9	8
62. 금융기관의 신용회복목적회사 출자·출연 시 손금산입 특례	2010	-	-	-
63.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 등에 따른 물류 시설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2010	0.05	0.05	0.08
64. 금융중심지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세액 감면	2010	-	-	-



(단위: 억원)

항목명	시행 연도	'15 실적	'16전망	'17전망
65.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2010	426	513	539
66.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2011	4	6	6
67. 전세보증금 간주임대료 과세시 주택수 계산 특례	2012	-	-	-
68.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2012	1,667	1,534	1,579
69. 공공기관이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2012	1.58	1.67	2.24
70. 재기중소기업인의 체납액 등 과세특례	2013	-	-	-
71. 2018 평창동계올림픽대회 개최를 위한 세제지원	2013	3.36	0.28	0.90
72. 금,구리 스크랩사업자 수입액 증가 세액공제	2014	0.69	3.48	3.62
73. 주식매각 후 벤처기업등 재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2014	-	-	-
74. 전략적 제휴를 위한 비상장 주식교환 등에 대한 과세특례	2014	0.02	0.02	0.03
75.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납부·과세특례	2014	-	2.51	2.68
76. 기술혁신형 합병/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2014	23	5	5
77. 소규모 주택 임대소득 비과세 적용기한 연장-예산서 없음	2014	-	-	-
78.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관세 감면	2014	0.25	-	-
79. 영구임대주택 난방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2014	추정값판	추정값판	추정값판
80. 2018 평창동계올림픽 및 패럴림픽 과세특례	2015	신설	-	79
81. 내국법인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 과세특례	2015	신설	추정값판	추정값판
82. 재기중소기업인에 대한 징수유예 특례	2015	-	-	-
83.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과세특례	2015	신설	-	1,100
84.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 소득세 감면	2015	신설	-	-
85. 신성장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설투자 세액공제(16 신설)	2016	-	신설	-
86. 기업형입대사업자에게 양도한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	2016	신설	추정값판	추정값판
87. 채무의 인수·변제에 대한 과세특례	2016	-	-	-
88.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특례	2016	예산서 없음	예산서 없음	예산서 없음
89. 합병에 따른 중복자산의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	2016	신설	추정값판	추정값판
90. 기업간 주식 등의 교환에 대한 과세특례	2016	신설	추정값판	추정값판
91. 사업재현계획에 따른 기업의 채무면제에 대한 과세특례	2016	신설	추정값판	추정값판
92. 주주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	2016	신설	추정값판	추정값판
93. 채무의 인수·변제에 대한 과세특례	2016	신설	추정값판	추정값판
94. 외국사업자 등에 대한 간접세의 특례	2016	예산서 없음	예산서 없음	예산서 없음
2018년 일몰도래 94개 항목 감면액 합계		118,992	108,964	107,511

주: 1) 행정부의 조세지출예산서 개별 항목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으며, 2015년 세법개정 결과 반영

2) 항목의 집계방식에 따라 항목수와 감면액 규모는 기관마다 다를 수 있음

자료: 조세지출예산서 자료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3) 2019년 일몰도래 항목

(단위: 억원)

항목명	시행 연도	'15 실적	'16 전망	'17 전망
1. 해저광물자원개발을 위한 과세특례	1970	965	41	43
2. 학교법인·국립대학병원 등 비영리법인에 대한 고유목적사업	1983	732	717	766
3. 비과세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	2000	3,647	4,221	3,484
4. 의약품 품질관리개선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2008	136	159	161
5. 사회적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2008	43	69	73
6. 대학맞춤형 교육비용 세액공제	2009	0.36	0.61	0.64
7. 지방 시·군 소재 비영리 의료법인에 대한 고유목적사업준비	2011	2.81	3.19	2.14
8.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출연시 세액공제	2011	39	80	84
9.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2012	0.05	0.17	0.08
10. 석유제품 전자상거래 세액공제	2012	34	113	119
11. 소형주택임대사업자 세액감면	2014	7	12	12
12. 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특례	2014	예산서 없음	예산서 없음	예산서 없음
13.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16신설)	2016		신설	-
14. 박물관 등 이전에 대한 양도세 과세특례	2016		신설	-
15. 공모부동산투자회사 현물출자자 과세특례	2016		신설	-
16. 연료전지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2016		신설	-
17. 내국법인 벤처기업 출자 세액공제	2016		신설	-
2019년 일몰도래 17개 항목 감면액 합계		5,606	4,562	4,745

주: 1) 행정부의 조세지출예산서 개별 항목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으며, 2015년 세법개정 결과 반영

2) 항목의 집계방식에 따라 항목수와 감면액 규모는 기관마다 다를 수 있음

자료: 조세지출예산서 자료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4) 일몰규정 없는 항목

(단위: 억원)

항목명	시행 연도	'15 실적	'16 전망	'17 전망
1. 주한외국군인 및 외국인선원 전용 유흥음식점 제공 주류에 대한 주세 등 면제	1966	2.6	3.2	3.3
2. 전담 임대소득 비과세	1968	276	294	306
3.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 비과세	1968	1,629	1,620	1,709
4. 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 등에 대한 법인세 등 면제	1970	60	46	48
5. 대학교원, 연구기관 종사자가 받는 연구보조비, 활동비 비과세	1971	638	762	659
6. 공공차관 도입에 따른 세액감면	1973	-	-	-
7. 군인 등에게 판매하는 물품의 개별소비세·주세 면제	1975	532	502	493
8. 장애인 추가공제	1975	2,699	2,814	2,881
9. 보험료 특별소득공제 및 특별세액공제	1977	24,112	25,210	24,752
10. 농가부업소득 비과세 등	1977	추정근관	추정근관	추정근관
11. 교육·과학, 문화관련 수입물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1977	593	376	394
12.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1977	21,990	24,409	25,172
13. 장애인, 환자수송, 영업용 승용차 등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1977	2,315	1,565	2,279
14. 의료비에 대한 근로소득 특별공제	1978	8,852	9,129	9,171
15. 교육비에 대한 근로소득 특별공제	1978	11,531	11,289	11,312
16. 방위산업물자 공급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1978	6,158	6,523	6,910
17. 방송 및 교육용 등 고급사진기 등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1975	-	-	-
18. 국민주택 및 동 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1980	추정근관	추정근관	추정근관
19. 정치자금의 손금산입특례 등	1981	262	184	197
20. 외국인대상 유흥음식행위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1982	예산서 없음	예산서 없음	예산서 없음
21. 개인기부금에 대한 특별공제	1982	7,031	7,703	7,347
22. 경로우대자에 대한 추가 소득공제	1989	3,869	4,124	4,103
23. 생산직 근로자의 연장근로 인한 급여 비과세	1990	268	244	261
24. 중소기업 통합·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1990	109	92	52
25. 장기저축성보험의 이자소득 비과세	1991	941	745	771
26. 부녀자에 대한 추가 소득공제	1991	453	438	470
27. 장애인용 보장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1992	811	573	599
28. 법인기부금의 손금산입	1994	4,917	5,930	6,215
29. 무주택근로자 등에 대한 근로소득 특별공제	1995	2,498	2,946	3,152
30.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용자 부담금에 대한 비과세	1995	8,154	8,858	9,023
31. 외교관용 등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면제	1997	2	1	1
32. 가업상속공제	1997	344	106	230

(단위: 억원)

항목명	시행 연도	'15 실적	'16 전망	'17 전망
33. 영농상속공제	1997	69	43	46
34. 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	1998	198	261	279
35.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	1999	5	0	2.7
36. 구조조정 지원을 위한 증권거래세 면제	1999	348	45	47
37.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1999	1,865	1,369	1,161
38. 외국인투자기업 자본재도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등 면제	1999	416	257	266
39. 기장세액공제	1999	540	631	553
40. 소액담배·독주제조용담배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1999	10	5	5
41. 희귀병 치료제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2000	추정근관	추정근관	추정근관
42. 골프선수의 골프장이용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2000	34	46	41
43. 폐광카지노에 대한 개별소비세 저율과세 및 면제	2000	1,802	1,553	1,634
44. 항공기, 반도체 제조/수리용 물품에 대한 관세감면	2001	1,017	859	778
45. 산업기술 연구개발용 물품에 대한 관세 감면	2001	204	140	144
46. 장애인용품 관세감면	2001	220	163	168
47. 국민연금보험료 소득공제	2001	16,150	17,094	18,041
48. 연금계좌세액공제	2001	9,850	10,939	10,859
49. 우리사주조합 출연금에 대한 과세특례	2001	598	509	539
50. 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사후환급	2002	1,588	3,530	3,714
51. 제주도 여행객 면세점에 대한 간접세 등 특례	2002	1,384	1,115	1,214
52.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	2003	958	974	983
53. 현금영수증사업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과세특례	2004	672	736	651
54.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2006	523	422	448
55.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2006	8	26	25
56. 주택담보 노후연금 이자비용 공제	2007	0.38	0.47	0.50
57.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2007	1,135	1,653	1,712
58. 근로장려금(EITC)	2007	10,625	11,000	12,452
59.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2008	499	208	222
60. 대학 재정 건전화를 위한 과세특례	2008	-	-	-
61. 동거주택상속공제	2009	95	139	139
62. 비거주자들의 보세구역 물류시설의 재고자산 판매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2009	-	-	-
63. 주택건설사업자가 취득한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	2009	추정근관	추정근관	추정근관
64. 대한주택공사 및 한국토지공사의 합병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2010	-	-	-
65. 주식의 포괄적 교환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2010	0.04	0.04	-
66. 자산의 포괄적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	2010	-	-	-
67.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2011	1,012	1,052	1,111



(단위: 억원)

항목명	시행 연도	'15 실적	'16 전망	'17 전망
68. 기업의 운동경기부 설치운영에 대한 과세특례	2011	12	9	10
69. 노인복지주택 관리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2011	추정근단	추정근단	추정근단
70. 외교관용 등 자동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의 환급	2013	8	8	8
71. 한부모 추가공제	2013	67	69	74
72. 준공공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2014	-	-	-
73.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2014	0,12	0,44	0,47
74. 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농지 매매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2014	0,04	-	-
75. 월세 세액공제	2015	415	544	544
76. 자녀장려금(CTC)	2015	6,555	6,250	6,033
77. 자녀세액공제(구 다자녀/출생입양자/자녀양육비 소득공제)	2015	12,784	13,365	13,598
78. 산업재산권 현물출자이익 과세특례(조세특례예산서 없음)	2016	예산서 없음	예산서 없음	예산서 없음
79. 기부장려금	2016	-	-	-
일몰조항 없는 79개 항목 감면액 합계		163,318	191,501	196,013

주: 1) 세부항목에 일몰규정이 있는 조세지출의 경우에도 일몰항목으로 분류(기획재정부는 일몰 없는 항목으로 분류). 이로 인해 기획재정부 집계자료와 차이가 발생
 2) 행정부의 조세지출예산서 개별 항목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으며, 2015년 세법개정 결과 반영
 3) 항목의 집계방식에 따라 항목수와 감면액 규모는 기관마다 다를 수 있음
 자료: 조세지출예산서 자료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2017 조세의 이해와 쟁점

⑨ 통계편

발간일	2017년 6월 1일
발행인	김춘순 국회예산정책처장
편 집	경제분석실 세제분석과
발행처	국회예산정책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tel 02 · 2070 · 3114)
인쇄처	원양산업(주) (tel 02 · 2263 · 9262)

내용에 관한 문의는 국회예산정책처 세제분석과로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tel 02 · 788 · 3778)

ISBN 978-89-6073-002-1 93350

© 국회예산정책처, 2017